

32-1

2005
Census 인구주택총조사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종 합 시 행 계 획

2005. 3.

통 계 청

목 차

I . 인구주택총조사 의의	3
II . 2005 인구주택총조사 환경	5
III . 추진목표 및 전략	7
IV . 조사개요	8
V . 조직구성	11
VI . 분야별 세부시행 계획	23
1. 조사구 설정	23
2. 조사항목 및 조사표 설계	26
3. 인력동원 및 운영	29
4. 조사표 및 용품류 제작·배부	41
5. 교육·훈련	44
6. 대국민 홍보	51
7. 현장조사 및 실사지도	57
8. e-census	62
9. 080 콜센터 운영	65
10. 조사표류 정리 및 제출	67
11. 자료입력 및 내용검토	69
12. 결과 집계·공표	73
13. 사후조사	75
14. 평가 및 포상	77
VII . 추진일정	80
VIII . 행정사항	81

I. 인구주택총조사 의의

정의

□ 인구주택총조사

특정한 시점에 한 국가 또는 일정한 지역의 모든 사람과 거처 및 거처의 점유자에 관련된 인구·경제·사회학적 자료를 수집, 편집, 평가, 분석, 공표, 제공하는 전 과정

의의

□ 역사적·범세계적 통계조사

- 우리나라의 인구조사는 삼한시대부터 호구조사라는 명칭으로 실시
 - 근대적 인구조사는 1925년부터 5년 마다 16차례에 걸쳐 실시
- 세계적으로는 고대 바빌로니아(B.C. 3600년경) 시대부터 실시하였으며, 1790년 미국에서 근대적 인구조사를 최초로 실시
 - 2000년 라운드 센서스에는 217개 국가(독립지역) 중 204개 국가에서 실시

□ 국가기본통계 조사

- 국가 영토내의 사람과 거처를 전부(완전성), 일시에(동시성), 각각 개별적(개별성)으로, 일정한 주기(주기성)를 갖고 실시되는 국가의 기본이 되는 통계조사
- 조사결과는 국가기관, 기업, 학술단체 및 일반대중의 정책입안, 계획수립, 연구 및 평가, 학습 등을 포함한 각종 분야의 기초 자료로 유용
- 인구, 가구 및 주택통계의 기준통계로서 각종 표본통계조사의 모집단 제공

□ 소지역 단위 통계조사

- 읍·면·동 통계자료가 작성·제공되는 통계조사
- 지역에 대한 비교 가능한 기초 자료는 국가 전체적으로는 물론, 지역정책의 수립 및 개발을 위해 유용한 자료로 활용
-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연계하여 통계지도 작성 가능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의의

□ 21세기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총조사

- 국가의 기본현상을 지난 20세기와 연결해 주며, 21세기의 비전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는 통계조사
- 21세기 풍요로운 복지·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시의성 있는 기초자료 제공

□ 급변하는 사회현상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적기에 제공

- 최근 급변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복지 등과 같은 사회현상에 대한 체계적 파악
- 최저주거기준의 도입으로 주택 정책이 양보다는 질 위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통계 수요에 부응

□ IT 인프라의 적극 활용을 통한 e-census 추진

- 1인 및 맞벌이 가구, 젊은 층 등과 같이 조사원의 면접조사가 어려운 취약계층의 누락 방지를 위한 인터넷 조사방법 도입
- 인터넷을 활용한 실시간 질의·답변을 통하여 일관성 있는 현장조사 추진
- 사이버 교육을 활용한 조사원 사전 e-learning 추진
- 웹(Web)에 의한 분산입력 방식을 도입하여 최종결과를 조기에 공표
- 인터넷 기반으로 인적·물적 자원관리
- 인터넷과 각종자료 DB를 연계하여 현장조사 지원

II. 2005 인구주택총조사 환경

1. 가구구조 변화

- 맞벌이 부부 및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로 주간 부재가구나 응답 곤란 가구 증가
- 고령 부부 및 혼자 사는 노인 가구의 증가로 응답능력이 부족한 가구 증가

2. 가치관 변화

- 근대화 과정에서 집단주의적 가치가 이완되고 개인주의의 팽배
⇒ 사생활 중시 경향, 각종 사회조사에 보수적·폐쇄적 자세 고조
- 남녀평등 사상과 함께 여성의 경제 및 사회생활 참가 증대
⇒ 주간에 가구의 공동화 현상 가속화
- 정보화는 일상생활에서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개인이나 가족의 정보를 누출하는 통로로도 인식
⇒ 각종 통계조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응답거부 현상으로까지 발전

3. 사회적·경제적 비용 증가

- 인구주택총조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실시하며, 아무런 대가없이 암묵적으로 국민의 응답을 강요하는 사회적 비용 발생
- 인구주택총조사 당해연도와 사전 및 사후기간에 소요된 총비용은 1980년 43억원에서 2000년에는 969억원으로 20배 이상 증가
 - 총비용 중 조사비용의 비중은 1995년 93.4%, 2000년 90% 수준
 - 조사원 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59.5%에서 1995년 78.3%로 아주 높았으나, 2000년에는 72.4%로 다소 낮아짐
 - 가구당 평균비용은 1980년 541원에서 1990년 2,146원, 2000년 6,770원으로 지속적 증가

4. 통계적 환경(자료 대체성)

- 행정자료 등 각종 자료의 발달은 인구주택총조사의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보완적 기능이 가능
 - 선진국을 중심으로 행정자료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비용 및 가구의 희생을 최소화하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진행
 - 우리나라도 각종 제도나 시스템의 개선, 전산기술 등의 발달로 행정등록 통계의 질적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총조사에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모색

5. 행정적 환경(조사실시 체계)

-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면서 읍면동의 통계기능이 시군구로 이관되어 조사인력의 동원 및 관리기능 등이 매우 취약
 - 인구주택총조사 실시체계는 조사원 동원 및 운영뿐만 아니라 조사표 배부 및 수집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단체, 특히 읍면동의 역할이 매우 중요

6. 기술적 환경

- IT산업의 발달은 자료수집 및 처리, 자원관리 등에 영향을 미침
 - 자료의 수집이나 처리는 물론 자원관리의 효율성 증대
 - 기술 환경의 변화는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며, 총조사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

7. 국제적 환경

- 전통적 센서스에서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 센서스, e-census등으로의 전환 추세이며, 조사기법도 다양화
- 저출산·고령화, 인구이동, 빈곤층, GIS 등에 대한 관심 고조
- 자료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추세

Ⅲ. 추진목표 및 전략

인구주택총조사의 성공적 수행

원활한 조사추진
<대규모 통계조사>

- ▶ 철저한 사전 준비 및 체계적·합리적 업무추진
- ▶ 업무단계별 추진 일정을 차질 없이 준수
- ▶ 조사원 안전사고 및 각종 불편민원 최소화

환경 변화에 대응
<5년 주기로 실시>

- ▶ 환경변화에 적합한 조사기법의 개발·적용
- ▶ 조사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대응
- ▶ 현장조사 추진체계 및 기능 강화
- ▶ 대국민 홍보의 강화

정확·유용한 자료
신속 제공
<국가기본통계조사>

- ▶ 정책부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조사항목 선정
- ▶ 다양한 소지역통계의 제공
- ▶ 모든 조사결과를 2006년 이내에 공표

중점 추진방향

- ◆ 종합시행계획의 조기 수립으로 각종 업무를 체계적·합리적으로 추진
- ◆ 현장 조사체계를 확립하여 원활한 조사 추진
- ◆ 총조사 환경변화에 대응한 조사기법 개발·적용
- ◆ 조사대상의 중복·누락 최소화를 위한 현장 관리
- ◆ 정책부처의 통계수요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사항목 선정
- ◆ IT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 e-census 추진
- ◆ 조사환경 극복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 ◆ 전문 상담요원에 의한 080 콜센터 운영으로 일관된 현장조사 추진
- ◆ Web기반 현지 입력 및 내검 실시로 자료 처리기간 단축
- ◆ 최종결과 조기 공표를 통한 고객 만족도 제고

IV. 조사개요

1. 연혁

- 인구총조사는 1925년, 주택총조사는 1960년 이후 매 5년마다 실시
- 대한민국 정부 최초의 총조사는 1949년에 실시
- 2005년도에 실시하는 인구총조사는 제17차, 주택총조사는 제9차에 해당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4조 제1항 및 제8조에 의한 지정통계
 - 인구총조사 : 지정통계 제10101호
 - 주택총조사 : 지정통계 제10102호
- 인구주택총조사 규칙(재정경제부령 제143호, 2000. 7.1.제정)

3. 조사기준 시점 : 2005. 11. 1. 0시 현재

4. 조사대상

- 조사 기준시점 현재 대한민국 영토 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
- 다만, 다음과 같은 인구와 거처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제외되는 인구	제외되는 거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취업·취학중인 사람○ 외교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등에서 공무로 체류 중인 국내거주 외국인 및 그 가족○ 국내주둔 외국군인·군속 및 그 가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군, 전투경찰대(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병영 막사○ 교도소, 소년원, 구치소, 경찰서 보호소 등 시설○ 외국군대의 병영 막사○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이 살고 있는 거처 등

5. 조사 실시기간

○ 준비조사

- 전수조사구 : 2005. 10. 29 ~ 10. 31(3일간)
- 표본조사구 : 2005. 10. 30 ~ 10. 31(2일간)

○ 본조사 : 2005. 11. 1. ~ 11. 15.(15일간)

6. 조사체계

○ 주관기관 : 통계청

○ 실시기관 : 지방자치단체 및 6개 중앙행정기관

- 일반조사구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총관리자) ⇔ 조사관리자 ⇔ 조사원
- 특별조사구 : 해외주재공관(외교통상부), 교도소·소년원(법무부), 군부대(국방부), 전투경찰대(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의무소방대(소방방재청)

7. 조사방법

- 조사원 면접방식, 응답자 기입방식, 인터넷 조사방식 병행

8. 조사항목 : 44개(전수 21개, 표본 23개 항목)

9. 동원 인력 : 총 110천명

- 공무원 : 5천명(통계청 : 1,062명, 지자체 : 4,383명)
- 총관리자 : 3,567명(읍면동별 1명)
- 조사관리자 : 약 8천명(조사원 10명당 1명)
- 조사원 : 약 90천명(예비조사원 8천명 포함)
- 업무보조원 : 약 5천명

10. 소요예산(2005년) : 1,290억원

11. 결과공표

- 잠정 집계결과 : 2005.12월
- 전수 집계결과(2회) : 2006. 5월, 7월
 - 인구부문 : 2006. 5월
 - 가구·주택부문 : 2006. 7월
- 표본 집계결과(3회) : 2006. 9월, 11월, 12월
 - 인구이동, 통근·통학 부문 : 2006. 9월
 - 산업·직업, 주거·복지부문 : 2006.11월
 - 여성·아동, 고령자, 1인가구 부문 : 2006.12월
- 특성별 분석 : 2006. 9월~2007.12월

V. 조직구성

핵심사항

- ◆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차질 없는 준비와 원활한 조사추진을 위한 조사 체계 구축
- ◆ 전반적 환경 변화에 부응한 조직 및 인력의 운용
- ◆ 효율적·체계적 업무추진을 위한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1. 추진방향

- 주관기관과 실시기관의 업무 특성과 성격에 따라 조직을 편성·운용
- 주관 및 실시기관 간, 또는 실시본부 내 분야별 명확한 사무구분으로 업무 중복 및 누락을 방지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체계 마련
- 통계청의 실시본부는 현실성을 감안하여 실시본부장(통계청장) 밑에 2부 본부장, 4부 및 11팀으로 정예화

2. 법적근거

2.1 통계법

□ 개정법률 제5691호(1999년 1월 29일 공포)

-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그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구청장·기타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2. 2 인구주택총조사규칙

□ 재정경제부령 제143호(2000. 7. 1).

- 제9조(특별조사구의 설정 및 유지관리) 통계청장은 부대·교도소·소년원·경찰서 및 재외공관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조사구역을 특별조사구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1조(조사에 관한 지도·감독 등) ①조사 실시기관 및 특별조사구 기관은 통계청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조사 실시기관 및 특별조사구 조사기관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조사업무를 지도·감독하는 자를 조사 지도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구주택총조사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하부행정기관의 협조를 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3 읍면동 기능전환 지침

□ 1,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보완지침 시달(행자부, 2002. 3. 7)

- 일부 이관사무의 공동수행에 따른 책임소재 - 1·2단계 기능전환 시군구
- 선거, 통계, 재해·재난관리 등 일정기간 대규모 인력이 소요되는 경우 시군구와 읍면동이 공동 수행가능토록 하였으나
- 이때에도 시군구가 최종책임과 주체적 지위에서 수행 하여야 하며, 읍면동은 지원역할 수행

□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시군구 이관사무 처리 편람(행자부, 2004. 6.)

-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원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각 동 담당 공무원 지정·운영 및 지역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작업 공간 마련

3. 조사 실시체계 및 실시본부 구성

3.1 조사 실시체계

- 주관기관 : 통계청
- 실시기관 : 16개 시·도 및 6개 중앙행정기관
 - 일반조사구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총관리자) ⇔ 조사관리자 ⇔ 조사원
 - 특별조사구 : 해외주재공관 ⇔ 외교통상부, 교도소·소년원 ⇔ 법무부, 군부대 ⇔ 국방부, 전투경찰대 ⇔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의무소방대 ⇔ 소방방재청

3.2 실시본부 구성 및 운영

□ 통계청 실시본부

- 기능
 - 통계청은 총조사의 기획, 실사 및 자료처리 등 사업주관부서로서 종합 시행계획, 분야별 세부시행지침의 작성 및 시행 등 기능을 수행
- 조직
 - 기획·조사, 자료처리의 주요기능과 기획, 수도권 관리, 사후평가, 자료처리 등 4개의 핵심 분야로 분장하고, 조사기획, 조사항목, 홍보 등 11개 세부기능을 나누어 수행할 수 있도록 1본부장, 2부분부장, 4부, 11팀으로 구성하며, 인터넷 조사 및 080 무료전화를 위한 상황실 별도 운영
 - 조직편성
 - 실시본부장 : 통계청장
 - 부분부장 : 기획·조사 부분부장, 자료처리 부분부장
 - 4 부 : 기획·조사부, 수도권관리부, 사후평가부, 자료처리부

- 11 팀 : 조사기획팀, 조사항목팀, 홍보팀, 조사구팀, 조사개선팀, 행정지원팀, 사후조사팀, 자료처리팀, 전산운영팀, 취약 지구관리팀(수도권), 홍보지원팀(수도권)

- 인터넷 조사 상황실, 080 무료전화 상황실

○ 운영

- 설치기간 : 2005. 3월 ~ 2006. 3월(기능에 따라 기간 조정)

- 수도권 관리부 : 2005. 7월 ~ 2005. 12월

- 관계관 회의 개최

- 통계청과 시도간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를 위해 시도 통계담당과장회의와 기획관리실장회의를 구분하여 운영
- 특별조사구 관련 관계기관 회의 운영

○ 주요 담당사무

- 종합시행계획의 작성 및 시행

- 분야별 세부시행계획의 작성 및 시행

- 조사항목의 선정과 조사표의 설계

- 조사표·용품류 발주 및 배부

- 조사구 설정 및 관리

- 유관부처와의 협조체제 구축

-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도공무원의 동원 및 교육

- 각종 교육계획 수립

- 교육용 기자재의 제작

- 각종 홍보물 제작 및 대국민 홍보실시

- 사후조사의 기획 및 실시

- 조사 자료의 전산처리 및 집계

- 조사결과 분석·공표

- 기타 인구주택총조사의 세부 실시 사항 등

□ 지방자치단체 실시본부

○ 기능

-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조사와 웹기반 자료입력 및 내검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

○ 조직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실시본부 설치, 읍면동에는 상황실 설치 등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의 행정계층별 편성
- 조직편성
 - 시 도 실시본부 : 본부장(부시장·부지사), 부분부장(통계담당부서장), 실시부장(통계담당과장)
 - 시군구 실시본부 : 본부장(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실시부장(담당과장)
 - 읍면동 상황실 : 상황실장(읍면동의 장)

○ 운영

- 설치기간 : 2005. 7월 ~ 2005. 12월
- 관계관 회의 :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회의, 읍면동장 회의 등
- 운영체계
 - 시 도 실시본부 : 통계청과 협조 하에 조사업무 지휘·감독
 - 시군구 실시본부 : 관내 읍면동의 조사 관련업무 지휘·감독
 - 읍면동 상황실 : 관내 조사요원의 조사 관련업무 지휘·감독

○ 담당사무

[사전준비 단계]

- 관계관 회의 참석 및 후속조치
- 사무 공간, 장소 및 장비 확보 계획 수립
- 자체 세부시행계획 수립
-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회의 개최
- 조사요원 선발 임명 및 교육
- 조사표류 인쇄 및 배부·관리·수집·제출 등

[조사 실시 및 처리 단계]

- 소관 조사업무 지휘감독
- 현지 실사지도 및 감독
- 조사 진행사항 보고 등
- 현지 실사지도 및 감독
- 조사요원 관리 및 조사 진행사항 보고
- 조사표 입력
- 현지 내용검토 및 부호기입 등

□ 특별조사구 실시본부

○ 기능

- 출입이 제한된 특별조사구의 체계적인 인구주택총조사 업무 수행

○ 조직

- 특별조사구 실시본부는 외교통상부, 국방부,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및 소방방재청 등에 중앙행정기관 단위로 조직편성

○ 운영

- 설치기간 : 2005. 7월 ~ 2005. 12월

- 운영방법

- 군병영 등 특별지역은 시설의 특수성으로 일반조사원이 조사하기 곤란하여 특별조사구를 설정 운영(군병영, 경찰서, 해양경찰서, 교도소, 소년원, 재외공관, 외국인 임시보호소, 시도 소방본부 등)
- 특별조사구를 관장하는 6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 실정에 맞는 실시조직을 편성 운영

- 운영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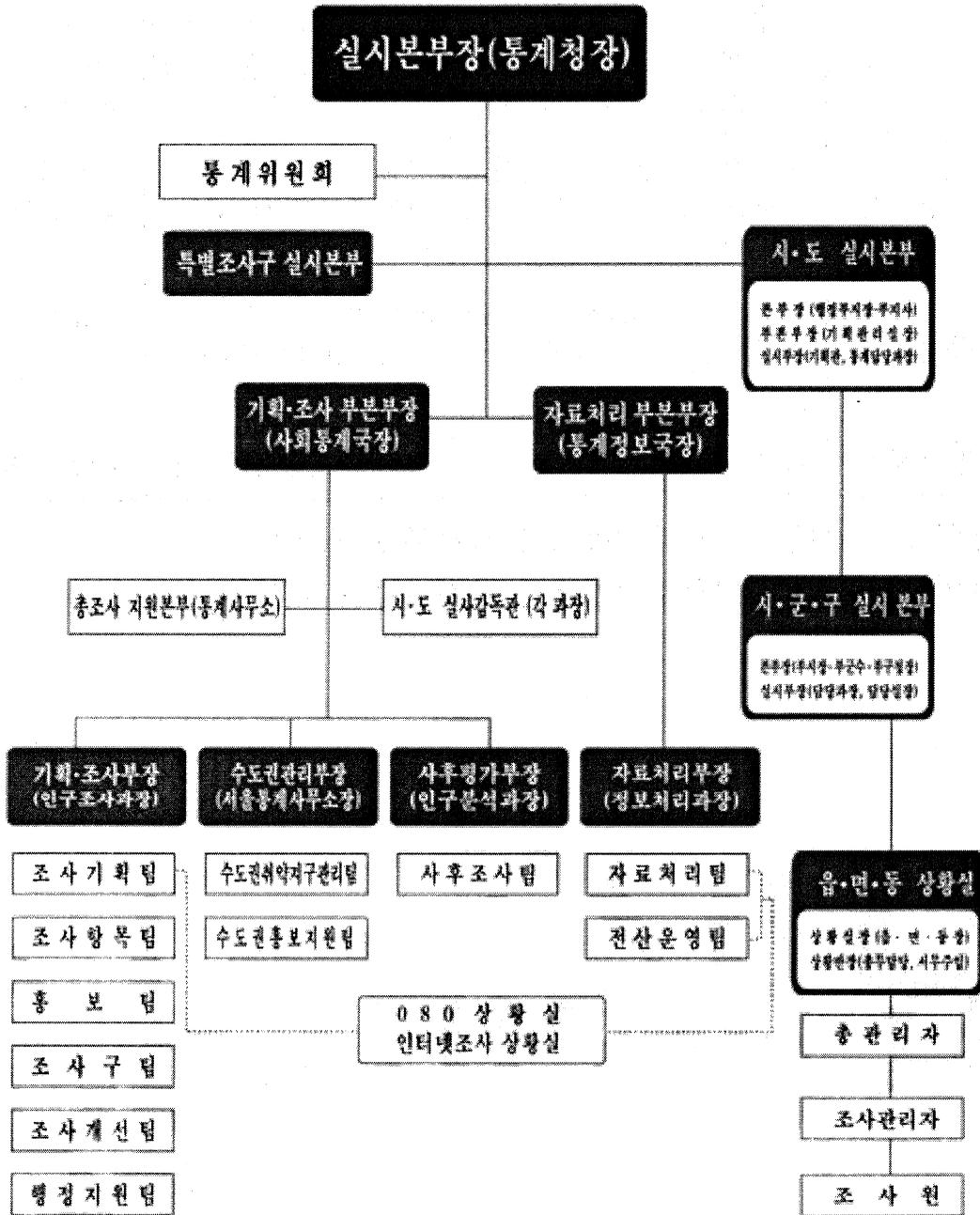
- 통계청 실시본부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조사업무 지휘·감독

[조사대상 및 조사단위]

	조사대상	조사구(조사단위)	비 고
· 외교통상부	해외주재 공관원 및 그 가족	주재국단위로 설정	대사관, (총)영사관, 대표부 등
· 국 방 부	모든 정규군인 (영내외 거주 불문)	부대(중대·대대), 학교, 병원, 함정단위	부대, 사관학교, 통합병원 등
· 법 무 부	교도소 및 소년원 재소자 교도대, 보호시설내 외국인, 구치소내 주거부정자	교도소, 구치소, 소년 원, 교도대, 출입국관 리사무소 단위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교도대, 출입국관리 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등
· 경 찰 청	전투경찰순경,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경찰서 내 유치인	전투경찰은 중대 단위, 경찰서보호실은 시도 단위	경찰서, 경찰대학, 경찰종합학교 등
· 해양경찰청	전투경찰순경(해경요원), 해양경찰서 내 유치인	전투경찰은 중대 단위, 경찰서보호실은 시도 단위	해양경찰서 등
· 소방방재청	의무소방대원	시도 소방본부 단위	소방서 등

※ 붙임 1 :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실시본부 체계도

※ 붙임 2 :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실시본부 주요임무



2005 인구주택총조사 실시본부 주요 임무

1. 통계청 실시본부

구 분	주요임무 및 수행사항	비고
<p>실시본부장 (통계청장)</p>	<p><input type="checkbox"/> 실시본부 ○ 실시본부의 사무 총괄</p>	
<p>기획조사부분부장 (사회통계국장)</p> <p>기획조사부장 (인구조사과장)</p>	<p><input type="checkbox"/> 기획조사부분부 ○ 기획조사부, 수도권관리부, 사후평가부 소관 사무총괄</p> <p><input type="checkbox"/> 기획조사부 ○ 조사기획팀, 조사항목팀, 홍보팀, 조사구팀, 조사개선팀, 행정지원팀 등 사무총괄</p> <p>○ 조사기획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및 종합시행계획 수립 - 조사체계 구축 및 운용 - 인력동원 및 교육훈련 - 조사표 및 조사 용품류 제작 및 배부 - e-census 추진 - 080 콜센터 운영 - 현장조사 추진 및 지도감독 총괄 - 자료처리 - 결과 집계 및 분석·공표 - 평가 및 포상 등 <p>○ 조사항목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항목 선정, 결과표(안) 작성 - 조사표 설계, 지침서(전수, 표본) 작성 - 주택DB작성, 산업직업 자동코딩 - 입력자료 내검 규칙 작성 등 <p>○ 홍보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 기획 및 각종 홍보물품 제작, 홍보실시 - 언론기관의 홍보 및 보도 섭외, 보도정정, 수도권 홍보 지원 강화 -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등 	

구 분	주요임무 및 수행사항	비고
<p>수도권 관리부장 (서울사무소장)</p> <p>사후평가부장 (인구분석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도 및 조사구요도 전산제작 및 출력 - 조사구설정, 조사구 관리 및 표본조사구 추출 등 ○ 조사개선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교육 교재개발 및 관리, 조사 취약지역 자료 관리, 각종 조사개선 사항 관리 등 ○ 행정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조사 예산관리, 업무추진비 집행관리, 상황실 운영 지원 등 □ 수도권관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지구 집중관리 및 홍보지원 사무총괄 ○ 수도권취약지구관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지구 집중관리방안 모색 및 계획수립 - 취약지구 현장조사 집중지도 및 지원 - 수도권 현장조사 추진 총괄 등 ○ 수도권홍보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 언론기관 홍보 관련 모니터링, 언론기관 섭외 등 □ 사후평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평가부 사무총괄 ○ 사후조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조사 방법 기획, 조사항목 선정, 사후조사표 및 조사서식 설계, 사후조사 실시, 조사결과 분석 등 	
<p>자료처리부분부장 (통계정보국장)</p> <p>자료처리부장 (정보처리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처리부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처리부 소관 사무총괄 □ 자료처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처리팀 및 전산운영팀 사무총괄 ○ 자료처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처리 기획, 내용검토, 인력운용, 조사표 접수 및 관리, 조사표 인출·회수, 조사표 폐기 등 ○ 전산운영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산장비 설치, 운용 및 관리 등 	

2. 지방자치단체 실시본부

구 분	주요업무 및 수행사항	비고
<p>[시·도] 실시본부장 (부시장/부지사) 부본부장 (기획관리실장) 실시부장 (통계담당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실시본부장 : 실시본부 사무 총괄 <input type="checkbox"/> 부본부장 : 실시본부장 보좌 및 조사업무 지휘감독 <input type="checkbox"/> 실시부장 : 부본부장 보조 및 업무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준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관 회의 참석 및 후속조치 - 사무 공간, 장소 및 장비 확보 계획 수립 - 자체 세부시행계획 수립 - 조사표 인쇄 및 배부·관리 -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회의 개최 등 ○ 조사 실시 및 처리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 조사업무 지휘감독 - 현지 실사지도 및 감독 	
<p>[시·군·구] 실시본부장 (부시장/부군수/ 부구청장) 실시부장 (통계담당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실시본부장 : 실시본부 사무 총괄 <input type="checkbox"/> 실시부장 : 본부장 보조 및 업무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준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관 회의 참석 및 후속조치 - 사무 공간, 장소 및 장비 확보 - 자체 세부시행계획 수립 - 조사요원 선발 임명 및 교육 - 조사표류 배부, 관리, 수집 및 제출 등 - 읍면동장 회의 개최 등 ○ 조사 실시 및 처리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실사지도 및 감독 - 조사요원 관리 - 조사표 입력 - 현지 내용검토 및 부호기입 	
<p>[읍·면·동] 상황실장 (읍면동장) 상황반장 (주무, 서무주임, 총무담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준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관 회의 참석 및 후속조치 - 사무 공간, 장소 및 장비 확보 - 자체 세부시행계획 수립 - 조사표류 배부, 관리, 수집 및 제출 등 ○ 조사 실시 및 정리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요원 관리 및 조사 진행사항 보고 - 현지 조사추진 및 실사지도 - 조사표류 정리 및 제출 	

3. 특별조사구 실시본부

구 분	주요임무 및 수행사항	비고
외교통상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통상부 소관 조사대상에 대한 실사, 실사지도 및 조사표 수집 등 제반 관련업무 - 조사대상 : 해외주재 공관원 및 그 가족 - 소관 조사업무 지휘감독 - 관계관 회의 참석 및 후속조치 	
국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부 소관 조사대상에 대한 실사, 실사지도 및 조사표 수집 등 제반 관련업무 - 조사대상 : 정규군인(영내외 거주 불문) - 소관 조사업무 지휘감독 - 관계관 회의 참석 및 후속조치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 소관 조사대상에 대한 실사, 실사지도 및 조사표 수집 등 제반 관련업무 - 조사대상 : 교도소 및 소년원 재소자, 교도대, 보호시설내 외국인, 구치소내 주거부정자 - 소관 조사업무 지휘감독 - 관계관 회의 참석 및 후속조치 	
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청 소관 조사대상에 대한 실사, 실사지도 및 조사표 수집 등 제반 관련업무 - 조사대상 : 전투경찰 순경, 경찰대학생, 경찰간부 후보생, 경찰서내 유치인 - 소관 조사업무 지휘감독 - 관계관 회의 참석 및 후속조치 	
해양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경찰청 소관 조사대상에 대한 실사, 실사지도 및 조사표 수집 등 제반 관련업무 - 조사대상 : 전투경찰순경(해경요원), 해양경찰서내 유치인 - 소관 조사업무 지휘감독 - 관계관 회의 참석 및 후속조치 	
소방방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방재청 소관 조사대상에 대한 실사, 실사지도 및 조사표 수집 등 제반 관련업무 - 조사대상 : 의무소방대원 - 소관 조사업무 지휘감독 - 관계관 회의 참석 및 후속조치 	

VI. 분야별 세부시행 계획

1. 조사구 설정

핵심사항

- ◆ 찾기 쉽고 상세한 지도를 제공함으로써 조사의 정도 제고
- ◆ 조사구 설정 방법 변경을 통한 업무량 경감 및 고효율화 추진
- ◆ 변동이 심한 지역의 특별 관리를 통해 누락·중복 사전 방지

1. 1 의의 및 목적

- 전국의 모든 지역(읍면동별)을 대상으로 도로, 하천 등 명확한 지형지물을 이용, 지도상에 일정가구수가 포함되도록 조사구역을 구획
 - 조사담당구역을 명확히 함으로써 인구·가구 및 주택의 누락 또는 중복을 방지
 - 조사원의 업무량을 균등하게 배분
 - 총조사 실시 후 각종 표본조사의 표본틀 및 소지역통계 작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

1. 2 기본 방향

- 찾기 쉽고 정확한 지도 작성으로 조사 정도 제고
 - 2000년 총조사시 처음 도입한 수치지도(Digital Map)와 위치 식별이 용이한 새주소 지도를 총조사에 적합하도록 재제작
- 일관성 유지와 체계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토록 조사구 설정 방법 변경
 - 조사구 설정 횟수 단일화 : 군부, 시부로 구분(2회) → 통합 실시
 - 업무추진방법 변경으로 악화된 조사 환경 극복 및 정확성 확보
 - 가구수 파악·경계 적합성 확인(지자체)/경계 가설정 심사·확정(통계청)
- 변화가 심한 지역은 특별 관리를 통하여 누락·중복 예방
 - 대단위 개발지구, 아파트 신축 지역 등 변화가 심한 지역의 지속적 관리

1. 3 조사구 설정 기준

- 출입이 자유로운 일반조사구와 출입이 제한된 특별조사구로 구분
 - 특별조사구는 해당부처에서 특성에 맞도록 조사단위(군부대, 재외공관, 전투경찰대, 교도소 등) 구분
- 일반조사구는 아파트, 보통, 섬,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관광호텔 및 외국인 조사구 등 6가지로 분류
 - 아파트·보통·섬 조사구는 가구수를 기준으로 평균 60가구 범위(60 ± 20 가구)내에서 명확한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경계설정
 - 기숙시설조사구, 특수사회시설조사구, 관광호텔조사구는 시설단위로 설정
 - 외국인조사구는 외국인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 설정

1. 4 업무추진 경과

- 조사구 설정을 위한 기초조사 : 2004. 9. 6 ~ 10.16
 - 읍면동별 지도상에 지형지물, 행정구역경계 수정·보완 및 거처별 가구수 파악(아파트, 연립주택은 1가구로 간주)
- 조사구 경계 가설정 : 2004. 11. 1 ~ 05. 3. 5
 - 조사구 설정 기초조사 결과 자료를 이용 통계청에서 조사구 설정 기준에 의해 경계구획 및 번호부여

1. 5 추진 일정

- 조사구 적합성 현지 확인 : 2005. 4.14 ~ 5.13
 - 통계청에서 가설정된 조사구 경계의 적합성 여부
 - 지형지물, 가구수 변동 및 기초 조사 시 가구수 편차 심한 지역 경계조정 등
 - 실시방법 및 인력동원
 - 지자체를 통하여 읍면동별 조사원을 채용, 현장 확인
 - 읍면동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책임성 및 정확성 확보

□ 표본조사구 추출(1차 : 2005. 6월, 2차 : 2005. 10월)

○ 조사구 설정 결과를 이용하여 보통·섬·아파트조사구의 10% 추출

□ 조사구 요도 작성 : 2005. 5 ~ 9월 초

○ 조사구 적합성 현장 확인결과를 전산 수정·입력 후 조사구별 작성(2부)

□ 변동조사구 관리 : 2005. 5 ~ 10월

○ 조사구 설정 이후부터 2005년 총조사 직전까지 수정을 요하는 사항 발생시 조사구 수정 신청(월1회, 지자체) 및 보완

- 행정구역 경계 변동, 시설조사구 변동, 가구수 변동이 심한 지역 등
- 대단위 개발지구(공동주택 신축·철거 지역 등)의 특별 관리

2. 조사항목 및 조사표 설계

핵심사항

- ◆ 정책수요 변화 및 지역통계 수요에 부응하는 조사항목 개발
- ◆ 응답자 친화적인 조사표 설계
- ◆ 전문가 및 이용자 의견 최대한 반영

2. 1 조사항목 선정 기준

- 정책수요 변화에 부응하는 조사항목의 개발
 - 저출산, 고령화, 주거의 질 및 복지관련 항목 강화
- 총조사 조사항목으로서의 가치와 적합성이 있는 항목 선정
 - 대규모 전수조사인 총조사의 특성을 감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거나 응답거부 등으로 신뢰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은 배제

2. 2 추진경과

- 기본계획 수립 : 2003. 4월
- 자료이용기관 의견수집 조사 : 2003. 4월 ~ 5월
- 조사항목 학술용역(한국 인구학회, 주택학회) : 2003. 5월 ~ 10월
- 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방향 설정 및 검토) : 2003. 7월 ~ 12월
- 시·도 특성 항목(안) 수집 : 2004. 3월 ~ 4월
- 조사항목(안) 현장 적용(시험 및 시범예행조사) : 2004. 7월 ~ 11월
- 조사항목 추가과약(중앙행정기관) : 2004. 8월
- 통계위원회 인구분과위원회 : 2005. 1월
- 조사항목 최종 확정 : 2005. 4월

○ 연도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 수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 계	31	28	40	28	45	28	50	44(3)
· 전수	14	11	22	28	33	17	20	21
· 표본	17	17	18		12	11	30	23(3)

※ ()내는 시·도 특성항목 수이며, 2005년 자료는 이를 포함한 수치임

2.3 조사항목 선정 결과

○ 전국항목(41개 항목)

구 분	항목 수	조 사 항 목
기본항목	13	성명, 나이, 성별, 가구주와의 관계, 교육정도, 5년 전 거주지, 혼인상태, 가구구분, 거주기간, 거처의 종류 및 건물층수, 연건평, 대지면적, 건축년도
저출산	4	아동보육실태, 혼인년월, 총출생아수, 추가계획자녀수
고령화	1	고령자 생활비 원천
사회·복지	3	남북이산가족, 종교, 활동제약
노동력	5	경제활동상태, 종사상의 지위, 산업, 직업, 근로장소
교통	5	통근·통학여부, 통근·통학장소, 이용교통수단, 통근·통학 소요시간, 자동차 보유대수
주거의 질	10	사용방수, 주거시설형태, 거주층, 난방시설, 주택점유 형태, 임차료, 총방수, 편의시설수, 주차시설, 주인가 구 및 주택소유여부

※ 밑줄은 표본조사 항목(20개)임

○ 시·도 특성항목 : 시도별 3개

- 지역 통계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시·도별로 3개 항목을 표본항목으로 자체 선정하여 전국항목과 병행하여 조사
- 자원봉사활동, 자녀 출산시기, 노후 준비방법, 간호·수발자, 치매·중풍 시설 입소여부, 현 시·도 거주사유, 다른 시·도 이동사유, 지역생활여건 만족도, 식수사용형태, 컴퓨터 보유대수 및 인터넷 사용여부, 가구 생활비 원천, 최초 주택마련 시기 및 방법

2. 4 시·도 특성항목에 대한 통계청 및 시·도 업무분장

- 조사 기획에서부터 결과표 작성까지 최대한 협조
 - 조사표 설계, 현장점검, 조사표 기입요령 및 조사지침서 작성, 전산입력, 내용검토, 에디팅, 무응답처리 등
 - 결과표 작성은 기본표 및 시·도에서 금년 중으로 요청하는 통계표에 한해 1차 지원
 - 시·도 특성항목 보고서(의견수렴 결과 반영)
- 결과보고 및 보도자료 작성, 기본표 이외의 통계간행물 발간 등은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실시
- 원시자료는 통계청 자료제공 규정에 의거 제공

2. 5 응답자 친화적인 조사표 설계

- 응답자 편의를 최우선 반영하되 조사, 입력 및 내검 측면도 함께 고려
 - 고령화 진행에 따라 글자 크기 확대: 8p(2000) → 10p(2005)
 - 시각적인 효과 제고를 위해 색상 추가 : 1도(2000) → 2도(2005)
 - 취급하기 편리한 크기 및 방법으로 제작 : A4, 표본-책자형, 전수-날장형
 - 항목마다 기입예시를 배치하여 응답편의 도모
- 시·도 항목은 표본조사표 마지막 페이지에 배치
- 지방분산 발주로 조사표 인쇄 및 배부의 효율성 제고

2. 6 특별조사구 조사표 설계

- 특별조사구에 사용하는 조사표는 특성별로 구분하여 제작 배부
 - 외교통상부는 재외공관용 조사표
 - 국방부는 군·전경용 조사표
 - 법무부는 교도소용, 군·전경용, 외국인 조사표(3종)
 - 경찰청은 교도소용, 군·전경용 조사표(2종)
 - 해양경찰청은 교도소용, 군·전경용 조사표(2종)
 - 소방방재청은 군·전경용 조사표

3. 인력동원 및 운영

핵심사항

- ◆ 우수인력 확보 및 효율적 운영
- ◆ 읍면동별 업무보조원 및 총관리자 채용
- ◆ 온라인 시스템에 의한 인력채용 및 관리
- ◆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요원 채용 및 관리

3. 1 기관별 동원규모 및 기간

기관별	인력 동원분야	동원규모(명)	동원기간	비고
통계청	○ 조사준비 및 추진	41	연중	인구조사과 전직원
	○ 중앙교관 및 지도공무원	1,005	2005. 9~10	각 국·과(280) 지방사무소(725)
	○ 자료처리	6	연중	통계정보국
시·도	○ 업무추진 및 지도감독	48	연중	통계담당
	○ 업무보조원	16	60일	시도별 1명
시·군·구	○ 업무추진 및 지도감독	768	연중	통계담당
	○ 업무보조원	256	60일	시군구별 1명
	○ 집단시설 담당 조사원	500	19일	10조사구당 1명
	○ 입력·내검원	11,841	24일	1,333가구당 1명
	○ 입력·내검관리자	592	24일	입력·내검원/20
읍·면·동	○ 업무추진 및 지도감독	3,567	연중	총조사 담당
	○ 업무보조원	5,170	26일	읍면동별 1~2명
	○ 총관리자	3,567	29일	읍면동별 1명
	○ 조사관리자	7,706	24일	조사원/10
	○ 조사원	77,056	19일	2~5개조사구 담당
	- 예비조사원	7,706	2일	조사원/10
	○ 조사표 정리요원	11,008	7일	조사원/7

※ 조사구 최종확정시 인원 변동가능

3. 2 인력동원

3. 2. 1 공무원

통 계 청

- 인구주택총조사 교관, 현장조사 지도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인력
 - 본청
 - 표본조사원 교육(120명), 시·도 및 시·군·구별 실사지도(160명)
 - 지방통계사무소
 - 표본 및 전수조사원 교육(105명 : 표본 39, 전수 66), 실사지도(725명 : 5개 읍면동당 1명)
- ※ 각 지방사무소는 『인력동원 세부시행 지침 : 2005. 7월 시행 예정』에 의거 인력동원 계획수립

시·도 및 시·군·구

- 지자체별 통계담당 공무원 동원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 동원 불가피(예상)
 - 시군구 공무원은 관할지역 전수조사원 교육을 담당
 - ※ 『인력동원 세부시행 지침』에 의거, 각 지자체별 인력동원 계획 수립
 - ※ 인력동원 관련 소요예산은 지자체별 인력동원 계획을 감안하여 재배정
- 조사기간 중 지자체별로 관할지역에 대한 업무추진상황 파악 및 지도를 체계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우수인력 확보

읍·면·동

- 읍면동별 인구주택총조사 업무수행을 위한 담당자 1인 이상 지정
- 읍면동의 인구주택총조사 업무는 담당공무원과 총관리자를 중심으로 추진하되, 담당 공무원은 관내지역의 전반적 사항을 총괄

3. 2. 2 조사요원 채용 및 관리

기본방향

- 조사요원은 「총관리자」, 「조사관리자」, 「조사원」, 「조사표 정리요원」, 「업무보조원」으로 구분
- 온라인 시스템에 의한 조사요원 채용 및 관리를 통한 업무 간소화
-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관광호텔 및 외국인 집단 거주지역 조사구 담당 조사원은 시군구에서 별도 채용·관리
- 조사원의 1인당 업무량은 기본원칙 하에서 읍면동 및 시군구의 재량권 부여 및 책임 강화
- 조사요원의 복수 취업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원 등록시 조회 시스템 개발·운영

총관리자

□ 자격요건

- 읍면동 및 시군구와의 유기적 협조 체계 유지 가능자
- 읍면동 공무원의 업무 보조, 기본적 행정업무의 대행 가능자
- 관내(읍면동)의 조사관리자 및 조사원을 통솔할 수 있는 자
- 인구주택총조사 등 통계조사 참여 경험이 있으며, 통계조사의 전반적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는 자
- 근무지 인근에 거주하며, 관내의 전반적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자

□ 채용

- 시기 : 2005. 9. 5 ~ 9.10
- 방법 : 조사요원 모집공고를 통해 총 관리자로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시군구가 읍면동 공무원의 협의를 거쳐 채용
- 채용기간 : 29일간
 - 읍면동 공무원 교육 참석 : 9.20 ~ 9.27 기간 중 2일간

- 조사원 업무량 배정 : 9.26 ~ 9.30기간 중 2일간
 - 조사원 교육 준비 및 참석(포스터 부착 등) : 10. 1 ~ 10.22 기간 중 3일간
 - 각종 조사준비 : 10.25 ~ 10.28(4일간)
 - 준비 및 본조사 : 10. 29 ~ 11.15(18일간)
- ※ 채용일정은 추후 시행되는 인력동원 및 교육·훈련 세부시행 지침과 해당지역의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 가능

□ 수행업무

- 읍면동 공무원 업무 보조
- 현장조사 준비 및 진행 총괄
- e- census 관련 업무
- 조사관리자 및 조사원 업무량 배정 및 관리
- 조사용품 배부 및 관리
- 인구주택총조사 관련 업무지시사항 전달 및 보고
- 조사 진행 상황 보고
- 기타 인구주택총조사 관련 정리 및 취합 업무 등

조사 관리자 및 조사원

□ 자격요건

조사관리자	조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지역 관내 또는 그 주변에 거주하는 자 ○ 담당 조사원(10명)의 현장 조사를 지도 하고 지원 할 수 있는 자 ○ 인구주택총조사 등 통계조사 경험자 ○ 조사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조사원이 작성한 조사표를 검토·보완 할 수 있는 자 ○ 담당지역의 전반적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8세 이상으로 고졸 이상의 소양을 갖춘 자 ○ 조사지역 관내 또는 그 주변에 거주하는 자 ○ 조사 대상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표 작성을 위한 질의 및 설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자 ○ 조사 기간 중 중도 포기하지 않고 끝 까지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자 ○ 담당지역의 전반적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자

□ 채용

○ 모집공고 : 2005. 8.20 ~ 9. 5

- 통계청 : 홈페이지, 주요 일간지, TV 및 라디오 등을 통해 공고
- 지방자치단체 : 각 지자체 홈페이지, 지역신문 및 방송을 통해 공고

○ 등록 및 접수 : 2005. 9. 1 ~ 9.10

- 조사요원 희망자가 인터넷을 통해 직접 등록
- 인터넷에 직접 등록하는 것이 불가능한 지역 및 희망자는 시군구나 읍면동에서 신청서를 교부받아 시군구에 접수
- 시군구의 업무보조원은 접수된 신청서를 인터넷에 입력

○ 채용인원

- 조사관리자는 조사원 10명 당 1명을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원 10명 미만 읍면동은 미채용하고, 조사원 10명 이상지역은 사사오입하여 인원 결정

○ 심사 및 채용 : 2005. 9.12 ~ 9.16

- 시군구에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조사관리자와 조사원 및 예비조사원으로 구분하여 채용
- 읍면동별 조사요원의 규모는 인력동원 세부시행 지침에 통보
- 시군구에서는 읍면동별로 조사요원 과부족이 발생할 경우 신청자의 지원 지역 우선순위에 따라 읍면동 간 조정
- 인터넷상에서 신청자 개인별로 합격여부를 표시하면, 조사요원 명단에 자동 등록되도록 시스템을 설계
- 읍면동별 조사요원 명단이 생성되면 해당지역(읍면동)에서 열람 가능

○ 업무량 배정 : 2005. 9.26 ~ 9.30

- 읍면동 공무원과 총관리자는 조사관리자별 담당 조사원(10명)을 결정하고, 조사원은 표본 및 전수조사원으로 구분하여 조사구를 배정
- 시군구에서는 읍면동의 조사원별 업무량 배정 결과를 열람하고, 적합성을

검토하며, 채용 확정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게시

○ 채용 확정자 서류 제출 및 접수 : 2005. 10. 4 ~ 10. 7

- 각 읍면동은 채용확정자의 제출 서류를 접수하여 시군구에 제출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사진(반명합판 2매)

○ 임명장 교부 : 2005. 10. 4 ~ 10.21

- 조사요원은 시군구의 장이 임명하며, 임명장은 조사원 교육 시 교부
- 임명장은 조사요원 등록 시스템을 통하여 자동 출력

□ 채용기간

○ 조사관리자 : 24일간

- 조사요원 교육(표본) : 2일
- 각종 조사준비 : 4일(10.25 ~ 10.28)
- 준비조사 : 3일(10.29 ~ 10.31)
- 본조사 : 15일(11. 1 ~ 11.15)

○ 조사원 : 19일간(예비조사원 2일간 : 표본조사원 교육)

- 조사요원 교육 : 전수 1일, 표본 2일
- 준비조사 : 전수 3일, 표본 2일
- 본조사 : 각각 15일

□ 수행업무

조사관리자	조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원의 현장조사 지도 및 지원 ○ 조사표 작성내용 검토 및 보완지도 ○ 조사 불응가구 및 곤란지역 설득 ○ 장기 부재가구 확인 및 처리 ○ 총관리자 업무보조 ○ 공동주택 기본정보 수집표 작성 ○ 기타 현장조사와 관련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 조사구 경계 확인, 거처변동사항 수정 등 준비조사 관련 업무 ○ 가구방문 및 조사표 작성 ○ 조사표 내용검토 및 정리

□ 조사관리자 및 조사원의 관리

○ 총관리자는 조사관리자 및 조사원의 근무 및 조사 업무 수행상황을 매일

점검하여 읍면동 담당공무원에게 보고

- 조사원은 매일 1회 이상 출근하며, 출근 시간은 읍면동 여건에 맞게 총관리자 및 조사관리자가 협의하여 결정
- 조사원과의 연락이 가능하도록 조사원 연락망을 구축
- 조사기간 중 중도 포기자가 발생한 경우는 예비조사원으로 교체하되, 조사관리자가 2일 이상 현장을 동행
- 조사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대체조사원은 현장 방문 전 담당 조사관리자가 책임교육을 실시한 후 현장 동행
- 조사원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을 의무 가입토록 하였으나, 읍면동 공무원 및 총관리자는 조사원의 안전사고 예방에 항상 유의

□ 조사원 업무량 배정

- 기본원칙

	표본조사원	전수조사원	
		보통조사구	아파트조사구
조사구 수	2개 조사구	3개 조사구	5개 조사구
기준 가구수	120가구 내외	180가구 내외	300가구 내외

- 업무량 차등 배정 근거
 - 표본조사는 조사항목이 많고, 내용이 어려워 조사 시간이 많이 소요
 - 전수조사의 보통조사구는 단독주택으로 구성된 조사구이므로 이동거리가 멀고, 부재가구가 많음
 - 전수조사의 아파트조사구는 이동거리가 짧고, 응답자 직접 기입방식 위주로 조사하므로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적음
- 배정방법
 - 조사경험이 충분한 자를 표본조사구나 취약지역을 담당하는 조사원으로 우선 선정
 - 최대한 인근 조사구를 묶어 조사원별 배정하되, 지역의 특성이나 조사

구의 면적, 읍면동사무소에서 거리 등을 감안하여 공평하게 배정

- 읍면동별로 배정원칙에 따라 조사구를 배정하면 잔여조사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체 조사구수를 감안하여 조사원간 업무량이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고려
- 표본조사원은 표본조사구만 담당하여야 하며, 아파트와 보통조사구의 혼합 배정은 가능
- 전수조사원은 아파트조사구와 보통조사구를 혼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할 경우 타 조사원과의 업무형평성에 맞도록 배정

※ 업무량의 불공평한 배정은 조사원의 불만과 조사내용에도 영향을 줌

외국인 및 집단시설 담당조사원

□ 자격요건

- 기숙시설 및 특수사회 시설 등을 방문하여 조사가 가능 하거나,
- 관광호텔, 외국인 집단거주 지역을 방문하여 조사가 가능한 자

□ 채용인원 및 기간

- 시군구별 채용인원은 (시군구별 집단시설 수/10)이며, 기간은 일반조사구를 담당하는 조사요원과 동일(19일간)

□ 채용 : 조사요원 채용과 동일

□ 업무량 배정

- 조사원 1인당 업무량은 집단시설조사구 10개 내외를 원칙으로 하되, 시군구 관내의 조사구별 특성(위치, 규모, 접근 용이성 등)을 감안하여 조사원별 공평성이 확보 되도록 배정

□ 수행업무

- 집단시설 또는 관광호텔 소재지 파악 및 조사준비
- 조사표 작성 및 정리·제출

업무보조원

□ 자격요건

-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의 인구주택총조사 관련 업무보조 가능 자
- 컴퓨터 사용이 가능한 자
- 중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자

□ 채용

- 업무보조원은 각 기관에서 자체 채용
- 시도 및 시군구의 업무보조원은 채용기간(60일)을 감안하여 업무여건에 맞게 채용 시기를 결정
- 읍면동 업무보조원은 시군구에서 읍면동별 인구 규모가 12,000명 이상인 지역은 2명, 기타지역은 1명을 채용
 - 채용기간은 총 관리자의 채용일정을 고려하여 26일 범위 내에서 채용

□ 수행업무

- 인구주택총조사 관련 업무 보조
- e-census 관련 업무
- 각종 행정지원 및 상황정리
- 기타 인구주택총조사 상황실 업무보조 등

읍면동 조사표 정리요원

□ 자격요건

- 각 읍면동에서 2005 인구주택총조사에 참여한 자
- 조사표의 전반적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갖춘 자
- 조사표의 오류를 검토하여 보완하고, 체계적으로 정리 할 수 있는 자

□ 채용

- 각 읍면동에서는 2005.11.10일까지 조사원 7명당 1명의 조사표 정리요원을 시군구에 추천
- 각 시군구에서는 읍면동 추천자를 심사하여 2005.11.16 ~ 11.22(7일간)까지 조사표 정리요원으로 채용
 - 교육 : 2005.11.10 ~ 11.15기간 중 1일(시군구별 자체계획 수립 시행)

□ 수행업무

- 조사표 내용 검토 및 수정
- 조사표 최종 정리 및 제출(읍면동 → 시군구)

시군구 입력·내검 요원

□ 자격요건

- 2005 인구주택총조사에 참여한 자
- 컴퓨터 사용 가능(조사표 내용 입력) 자
- 조사표의 전반적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갖춘 자
- 조사표의 오류를 검토하여 보완하고, 체계적으로 정리 할 수 있는 자

□ 채용인원 및 기간

- 시군구별 채용인원은 (시군구별 가구 수/1,333)이며, 기간은 11.23 ~ 12.20 (기간 중 24일 내외)까지 임
- 입력 및 내검을 총괄하고 입력요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별 입력 및 내검원 20명당 1명의 관리자를 별도 채용

□ 채용 시기 및 방법

- 채용 시기 : 11.18 ~ 11.22
- 채용방법 : 시군구 공무원은 읍면동 공무원과 협의하여 입력요원 희망자 중 적격자를 채용(조사원 관리시스템 활용)

- 교육일정 수립 : 각 시군구에서는 입력·내검 요원을 위한 교육이 11.23 ~ 11.30기간 중 1일간 실시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을 수립

□ 수행업무

- 조사표 전산입력 및 내용 검토·보완
- 조사표 최종 정리 및 제출(시군구 → 지방통계사무소)

3. 2. 3 수당지급

□ 지급원칙

		채용일수	1일 단가(원)	지급액(세전)
총관리자		29	40,420	1,172,180
조사관리자		24	36,750	882,000
조사원		19	36,750	698,250
예비조사원		2	36,750	73,500
읍면동 조사표정리요원		7	28,850	201,950
업무 보조원	시도, 시군구	60	28,850	1,731,000
	읍면동	26	28,850	750,100
시군구 입력·내검원		24일 내외	28,850	692,400

- 조사를 정상적으로 완료한 조사원의 수당은 담당 조사구의 대상가구 수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조사원이 조사기간 중 조사를 포기하는 경우는 별도의 기준에 의함
 - 준비조사 기간 중(교육 이수 직후 포함) 포기한 경우는 수당 미지급
 - 준비조사까지만 완료한 경우는 교육 및 준비조사기간의 70%만 인정하여 수당을 지급 ⇒ 4일 × 36,750원 × 0.7 = 102,900원
 - 본조사 진행 중 포기한 경우의 수당 지급은 준비조사 기간까지는 기간(4일)의 70%와 조사대상 가구 중 완료한 가구의 70%만 인정
⇒ (4일×36,750원×0.7) + {(조사완료가구/조사 대상가구)×15일×36,750원×0.7}

- 중도포기자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예비조사원의 수당은 조사원 1인의 총액 중 중도 포기자가 수령한 잔액을 지급
 - 일부 예비조사원의 경우 업무수행기간이 교육기간(2일)을 포함할 경우 19일을 초과 할 수 있으나, 수당 지급은 19일에 한함

□ 지급시기 및 방법

- 수당은 채용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본인의 예금통장에 입금 완료
 - ※ 수당 지급시기의 지연으로 인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므로 각 시군구에서는 철저한 사전준비 및 신속한 업무처리 필요

3. 3 추진일정

- 총관리자 채용 : 2005. 9. 5 ~ 9.10
- 조사관리자 및 조사원 모집공고 : 2005. 8.20 ~ 9. 5
- 조사관리자 및 조사원 등록 및 접수 : 2005. 9. 1 ~ 9.10
- 조사관리자 및 조사원 심사 및 채용 : 2005. 9.12 ~ 9.16
- 조사관리자 및 조사원 업무량 배정 : 2005. 9.26 ~ 9.30
- 조사관리자 및 조사원 서류제출 및 접수 : 2005.10. 4 ~ 10. 7
- 조사관리자 및 조사원 임명장 교부 : 2005.10. 4 ~ 10.28
- 읍면동 조사표 정리요원 채용 및 교육 : 2005.11. 6 ~ 11.15
- 시군구 입력·내검원 채용 : 2005.11.18 ~ 11.22

4. 조사표 및 용품류 제작·배부

핵심사항

- ◆ 사용자 취향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제작
- ◆ 효율적인 배부체계 확립
- ◆ 조사 용품류 조기 확정 및 적정 시기 제작·배부
- ◆ 적정 물량 제작으로 경제적 총조사 실현
- ◆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조사용품 관리

4.1 기본방향

- 시험 및 시범예행조사에서 나타난 개선의견 최대한 반영
 - 조사표 나이별 배색처리, 조사원 가방, 포스트잇, 가구스티커 디자인 등에 대한 개선의견 반영
 - 각종 용품의 디자인을 인구주택총조사 CI와 연계하여 제작
- 조사표류 중 일부 품목은 시도 분산제작
 - 일괄제작 배부 시 물량 과다, 창고 확보 등의 애로점 발생
 - 지역경제 활성화, 물품 배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분산 제작 실시
 - 분산제작 품목 : 조사표 및 기입요령(전수, 표본), 가구홍보전단
 - 시도 업무부담 완화를 위하여 우리 청에서 조달청으로 일괄 발주 후 해당지역조합과 계약
- 시군구 단위 포장·배부
 - 조사용품 배부계획은 읍면동별 단위까지 수립하되, 포장 및 배부는 시군구 단위로 실시
 - 택배 전문 업체에 의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배부 실시

□ 간단한 서식류는 홈페이지를 통해 출력하여 사용

○ 조사원 명부 등 간단한 서식류는 홈페이지에서 출력·사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배부관리의 편의성 도모

- 조사요원 등록명부, 추천명부

- 조사원 임명장, 서약서, 출근부, 조사요원증

□ 2005년 8월말까지 모든 조사 용품류의 배부 완료

※ 우기에 조사표 배부 및 보관 철저

4. 2 조사 용품류 내역

□ 분야별 계획

① 종합시행계획 ② 인력동원 세부시행지침 ③ 교육훈련 세부시행지침

④ e-census 실시지침 ⑤ 홍보계획 ⑥ 조사구설정계획 ⑦ 조사용품배부계획

⑧ 표본조사구 일람표 ⑨ 특별조사구 실시계획

□ 홍 보

① 담화문 ② 포스터 ③ 영상홍보물 ④ 홍보용리플렛 ⑤ 홍보자료집 ⑥ 차량용

스티커 ⑦ CI 매뉴얼 ⑧ 가구홍보전단 ⑨ 지역전단 ⑩ 조사원모집공고문 등

□ 조사원 채용 서류 : 홈페이지에서 출력 사용

① 조사원등록명부 ② 채용명부 ③ 임명장 ④ 서약서 ⑤ 출근부 ⑥ 조사원증 양식(케이스, 끈, 마크 별도 지급)

□ 조사원 지급 품목

① 조사원증 케이스(끈, 마크 포함) ② 조사원가방 ③ 받침대 ④ 문구용품

□ 준비조사

① 가구명부(간지, 표지 포함) ② 조사구요도(간지, 표지 포함) ③ 가구스티커

④ 조사지침서(전수, 표본) ⑤ 조사지도 수첩 ⑥ 공동주택정보수집표(간지, 표지 포함) ⑦ 조사원 연락전 ⑧ 조사사례집

□ 본조사

- ① 일반조사표(전수) ② 일반조사표(표본) ③ 외국인조사표 ④ 빈집조사표
- ⑤ 조사표기입요령(전수) ⑥ 조사표기입요령(표본) ⑦ 비밀보호용봉투 ⑧ 일반조사표표지(전수, 표본) ⑨ 외국인, 빈집조사표(표지, 간지) ⑩ 산업및직업 등분류부호집 ⑪ 외국인인사말

□ 내검 및 제출

- ① 입력 및 내용검토 지침서 ② 조사표 회수용상자(전수, 표본 등) ③ 접수 대장

□ 특별조사구

- ① 조사표(군,전경대용) ② 조사표(교도소용) ③ 조사표(재외공관용) ④ 조사표(외국인용) ⑤ 특별조사구조사지침서 ⑥ 조사표표지 ⑦ 조사표회수용상자 ⑧ 조사표접수대장 ⑨ 문구용품

□ 기타

- ① 표준교안(전수, 표본) ② 참여답례품(공동시설, 특별조사구, 조사원 등)

4. 3 조사 용품류의 제작 및 배부일정

- 제작사양 확정 : 2005. 3월 ~ 6월
- 조사용품별 발주 : 2005. 5월 ~ 7월
- 납품 : 2005. 7.30까지
- 분류 및 배부 : 2005. 8.31까지

5. 교육 · 훈련

핵심사항

- ◆ 집중 훈련을 통한 우수 교관 확보
- ◆ 사례집 및 사이버 교재를 활용한 현장감 있는 교육 실시
- ◆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확대

5. 1 교육 훈련(총괄)

	교육대상(명)	교육기간	일수(회)	비고
합 계	133,006	8.29~11.30	2,362회	
교관단	○ 통계청(225) ○ 지자체(185)	8.29~9.10	3일(4회)	4개 권역별 합 숙훈련
담당공무원 및 총관리자	○ 지자체 공무원(4,383) ○ 총관리자(3,567)	9.20~9.30	2일(256회)	시군구별 실시
전수조사원	○ 전수조사원(63,898)	10.4~10.21	1일(1,173회)	시군구별 실시
표본조사원	○ 표본조사원(13,158) ○ 예비조사원(7,706) ○ 조사관리자(7,706) ○ 총관리자(3,567) ○ 업무보조원(5,170)	10.4~10.21	2일(417회)	시군구별 실시
조사표정리 요원	○ 읍면동 조사표 정리 요원(11,008)	11.10~11.15	1일(256회)	시군구별 실시
입력 및 내검	○ 시군구 입력·내검원 (11,841) ○ 시군구 입력·내검 관리자(592)	11.23~11.30	1일(256회)	시군구별 실시

※ 인원 및 횟수 변동 가능(교육훈련 세부시행지침에서 확정)

5. 2 교육훈련

5. 2. 1 기본 방향

□ 우수 교관 확보 및 훈련 강화

- 체계적이고 통일된 교육을 위하여 교관단 집중(합숙) 훈련 실시
- 현장 실습 및 분임토의 등을 통한 조사 지침 숙지도 심화
- 전수와 표본 담당 교관을 분리하고 강의 및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화

□ 사례집 및 사이버 교재를 활용한 현장감 있는 교육 실시

- 조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례를 정리한 사례집 발간
- 사이버 교재에 다양한 표현기법을 담아 현장감 있는 교육 실시
 - 조사요원 교육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이버 교재의 사전 학습 의무화

□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확대 및 교육 강화

- 인구 30만명 미만 지역에 대하여 지자체 책임 교육 실시
- 시도, 시군구, 읍면동 공무원 및 총관리자 등 조사 현장 관리 인력에 대한 통합 교육 실시

5. 2. 2 추진 방향

□ 교육 단계 구분

- 교육은 교육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구분 실시
 - 교관단 훈련, 지자체 공무원 교육, 사이버 사전교육, 전수조사원 교육, 표본조사원 교육, 조사표 정리요원 교육, 시군구 입력 및 내검 교육

□ 교관단 구성

- 교관단은 통계청 및 지자체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기관 구분 없이 통합 합숙 훈련 실시
- 지자체의 참여 확대 및 책임감 부여를 위하여 인구 30만명 미만 지역의 전수조사원 교육은 지자체에서 직접 실시

□ 교육 일정 수립

- 읍면동별 조사원수를 확정 통보 받은 후 시·군·구에서 자체 교육 일정수립
 - 매 회당 교육 대상이 100명 이내가 되도록 조치
- 교육 단계별 일정을 참고하여 해당 교육기간 내에 교육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 ※ 통계청은 지자체별 교육일정을 취합 및 조정 후 전체 일정 확정 통보 (2005. 7월)
- 시도에서는 가급적 시군구별 일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
- 교육단계별 교육 기간 내에서 전반기는 9개도를, 후반기는 7개 특광역시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조정 예정임

5. 3 교육 단계별 세부 사항

5. 3. 1 교관단 훈련

□ 교육 대상

- 교관으로 선발된 통계청 및 지자체 공무원
 - 시군구별 인구수가 30만명 미만인 시군구는 자체 교관을 선발하여 교관단 훈련에 참석(2004. 12.31 현재 주민등록 인구 기준)

구 분		선발인원	전수교관	표본교관	비 고
계		410	271	139	
통계청 교관단	본청	120	20	100	
	지방사무소	105	66	39	
지자체 교관단		185	185	-	인구 30만명 미만 시군구

- 지자체 교관단은 시군구별 전수 교육 대상에 따라 1~4회 실시

- 교육 기간 : 2005. 8.29 ~ 9.10(기간 중 3일)
- 교육 운영 : 권역별 합숙 교육 실시
 -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합숙 교육 실시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중부권(강원, 충북, 충남, 대전), 호남권(전북, 전남, 제주, 광주), 영남권(경북, 경남, 부산, 대구, 울산)
 - 전수와 표본을 분리하여 심도 있는 교육 실시
- 교육 담당 : 통계청 인구조사과 업무별 담당 사무관
- 교육 내용
 - 인구주택총조사 이해 도모
 - 종합시행계획 수립 배경 및 내용 설명
 - 조사 지침(전수, 표본, 표준교안 등) 설명
 - e-census 운영지침
 - 각종 교육 요령, 지도 요령
 - 과거 총조사 비판기사 검토
 -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사례발취 및 대응방안(토의 및 발표)
 - 강의 경연대회 및 현장 지도 시 주의사항 등

5. 3. 2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 교육 대상 :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공무원과 각 읍면동별 총관리자
- 교육 기간 : 2005. 9.20 ~ 9.30(기간 중 2일)
- 교육 장소 : 시군구청
- 교육 운영 : 시군구 단위 실시(시도 공무원은 시군구별 교육시 배석)
- 교육 담당 : 통계청 교관단

□ 교육 내용

- 인구주택총조사 이해 도모
- 각종 세부시행지침 설명
- 조사 지침(전수, 표본, 교안 등) 설명
- e-census 운영지침
- 각종 교육 요령, 지도 요령
- 현장조사 추진 요령
- 각종 보고 및 상황판단 방법 등

5. 3. 3 사전 e-learning

□ 목적 : 사이버 교육을 활용한 조사원 사전학습을 의무화하여 조사원 교육 효과 제고

□ 대상 : 총관리자, 조사관리자 및 조사원

□ 학습기간 : 2005. 9. 16 ~ 10. 3(18일간)

□ 실시 방법

-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이버 교육을 클릭한 후 ID 및 PASSWORD 입력으로 로그인
 - ID 및 PASSWORD는 조사원 신청시 생성
- 조사요원은 교관단 교육 전에 사전학습을 통해 기본사항 습득
- 학습을 이수하지 않은 조사요원에 대해 SMS 발송으로 독려
- 인터넷 접근이 곤란한 지역의 조사원은 읍면동에서 공무원의 협조 하에 학습

□ 시군구 및 읍면동의 역할

- 시군구는 사이버 교육 이수현황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각 읍면동 관리 감독
 - 각 읍면동별로 진행상황을 파악하여 부진한 읍면동에 대해 사전교육 독려 및 미이수자 명단 전달

5. 3. 4 전수조사원 교육

- 교육 대상 :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전수 조사구를 담당하는 조사원
- 교육 기간 : 2005.10.4 ~ 10.21(기간 중 1일)
- 교육 운영 : 시군구 단위 실시
 - 시군구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나, 교육 대상이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 100명 단위(읍면동)로 구분하여 실시
 - 해당 기간 중 교관단 운영을 위하여 지역별 구분 실시
 - 전반기 : 2005.10. 4 ~ 10.12 : 9개도 실시
 - 후반기 : 2005.10.13 ~ 10.21 : 7개 광역시
- 교육 담당
 - 인구 30만명 미만인 시군구 : 지자체 교관단
 -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군구 : 통계청 및 지자체 교관단
 - ※ 인구 30만명 미만 일부 시도별 주요 시군구 2~3개 포함
- 교육 내용 : 전수조사 지침서

5. 3. 5 표본조사원 교육

- 교육 대상 : 총관리자, 조사관리자, 표본조사구 담당 조사원 및 예비조사원
- 교육 기간 : 2005.10. 4 ~ 10.21(기간 중 2일)
- 교육 운영 : 시군구 단위 실시
 - 시군구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나, 교육 대상이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 100명 단위(읍면동 단위)로 구분하여 실시
 - 해당 기간 중 교관 운영을 위하여 지역별 구분 실시
 - 상반기 : 2005.10. 4 ~ 10.12 : 9개도 실시
 - 하반기 : 2005.10.13 ~ 10.21 : 7개 광역시
- 교육 담당 : 통계청 교관단
- 교육 내용 : 표본조사 지침서

5. 3. 6 읍면동 조사표 정리요원 교육

- 교육 대상 : 읍면동별 조사표 정리요원
- 교육 기간 : 2005.11.10 ~ 11.15(기간 중 1일)
- 교육 운영 : 시군구 단위로 조사 기간 중 1일간 실시
- 교육 담당 : 통계청 교관단
- 교육 내용 : 조사표류 정리·제출 및 기본 내용검토 요령

5. 3. 7 시군구 입력 및 내검 교육

- 교육 대상
 - 시군구 입력·내검원 및 입력·내검관리자
- 교육 기간 : 2005.11.23 ~ 11.30(기간 중 1일)
- 교육 운영 : 시군구 단위 실시
 - 교육 대상이 많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실시
- 교육 담당 : 통계청 교관단
- 교육 내용
 - 입력 및 내검 프로그램 사용 방법
 - 내검 요령 및 지침

5. 4 추진 일정

- 교육 장소 확보 : 2005. 3월 ~ 8월
- 교육 일정 수립 : 2005. 6월 ~ 8월
- 지자체별 자체교육 동원 인력 통보(통계청) : 2005. 6월
- 지자체별 자체교육 일정 수립 및 통계청 통보 : 2005. 6월
- 지자체별 일정 취합, 정리 및 조정 : 2005. 7월
- 지자체별 교육 일정 확정 및 통보 : 2005. 7월말

6. 대국민 홍보

핵심사항

- ◆ 맞벌이, 1인가구의 증가 및 사생활 보호의식 확산 등 사회구조와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악화된 조사환경의 극복
- ◆ 전략적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열악한 조사환경을 타개하고 궁극적으로는 총조사의 성공 토대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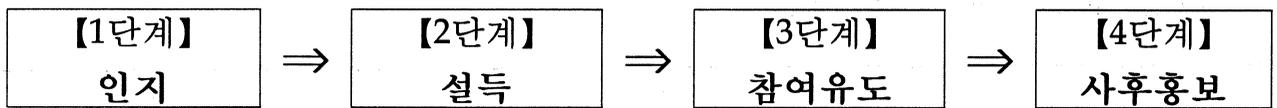
6. 1 기본 방향

- 효율성 제고를 위한 민간위탁과 자체추진의 이원화
 - 민간 홍보전문회사에 아웃소싱하여 일관적, 체계적 홍보활동 전개
 - 시·도 위임, 언론재단 대행 등 민간 위탁이 곤란한 분야는 자체 추진
- 새로운 홍보수단을 도입하여 홍보효과 제고
 - 심볼마크·캐릭터 등 새로운 CI(Census Identity) 개발·활용
 - 인터넷을 통한 홍보, 음성자동전화, 캠페인 방송 등
- 연령 및 계층 등 타겟별로 홍보수단을 특성화
 - 주간 부재가구, 외국인, 노숙자 등 취약 지역 및 계층에 대한 중점 홍보
 - 어린이, 젊은 층, 주부 등 연령대별 차별화 전략수립 및 홍보 전개
- 지방자치단체 홍보 여건 조성 및 적극 지원
 - 지역 언론인 대상 총조사 설명회 개최
 - 지역문화축제, 마라톤대회 등 지역행사에 캠페인 이벤트 홍보
 - 지역 실정에 맞는 자율적 홍보를 위한 예산 지원 확대

6. 2 추진 전략

- 5대 매체(TV, 신문, 라디오, 잡지, 인터넷)에 중점을 두되, 홍보효과가 가장 높은 언론매체(방송, 신문)에 집중 홍보
- 홍보 매체별로 '총조사 참여 캠페인' 방식의 전략적 홍보 전개
- 온/오프라인을 통해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PR 및 캠페인 활동 확대

6. 3 단계별 홍보 전략



- 1단계(인지) : 5 ~ 8월
 - 총조사 인지도 확보 및 제고에 주력
 - 총조사 컨셉 및 PR 메시지 정립
 - 홍보물 제작·배포, 원고작성 등 홍보활동 준비
- 2단계(설득) : 9 ~ 10월
 - 총조사 중요성·관련성 전달에 주력
 - 국민 참여 캠페인 컨셉 전달
 - 참여 중요성 및 개인 연관성 강조
 - 타겟과 1:1 접촉 등 현장 중심의 홍보
- 3단계(참여 유도) : 10 ~ 11월
 - 총조사 참여 유도에 주력(인지와 설득 활동 병행)
 - TV, 신문, 인터넷, 이벤트 등 모든 홍보수단 동원
- 4단계(사후 홍보) : 11월 ~ 2006년
 - 총조사 참여 대국민 감사 홍보
 - 홍보효과 조사 분석

6. 4 단계별 홍보활동

구 분	1단계 : 인지	2단계 : 설득	3단계 : 참여유도	사후홍보
중점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조사 인지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겟별 현장중심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홍보수단 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국민 감사 홍보
추진시기	2005. 5 ~ 8월	2005. 9 ~ 10월	2005. 10 ~ 11월	2005. 11 ~ 2006
언론매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고·문안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론인 설명회 캠페인 협찬 광고 신문 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캠페인 협찬 광고 자막 광고 대담방송·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국민 감사 광고 홍보효과 분석
온라인 매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홈페이지 리뉴얼 인터넷 포털 사이트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캠페인 배너 광고 온라인 현상 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캠페인 이동통신사 공동 캠페인 	
이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조사 홍보대사 및 통계홍보대사 위촉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행사 홍보 캠퍼스 부스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두 캠페인 홍보 지역문화축제 홍보 	
옥·내외 게시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치물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옥외 광고 포스터 	
교통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고물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버스 광고 지하철·열차 광고 	
홍보물 제작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 유인물, 책자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송 홍보물 제작 라디오 방송물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 유인물 배포 사보, 소식지 홍보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문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품·기념품 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성자동전화 홍보 문자전광판 홍보 	

주) 매체별 홍보수단은 홍보대행사 선정 이후 일부 달라질 수 있음

6. 5 홍보주체별 주요 홍보활동

통계청

□ 홍보 세부실시계획(안) 수립(5월)

- 홍보기본계획 및 홍보대행사 제안서를 토대로 세부실시계획(안) 수립
- 국정홍보처에 '종합홍보추진계획(안)' 수립 및 통보

□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용(5 ~ 11월)

- 종류 : 기획자문위원회, 언론인자문위원회, 홍보협의체
- 내용
 - 사계(언론계, 학계, 광고계 등) 전문가 위촉하여 홍보기획 및 전략 자문 및 각종 공모 심사 등에 활용
 - 언론사 간부급 대상으로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 국정홍보처와 홍보실무협의체 구성 운용

□ 언론인 설명회 개최(9 ~ 11월)

- 대상 : 중앙 및 지방 언론인 간부급(국·부장급 이상)
- 방법 : 통계청장(국장)이 직접 방문 및 설명

□ 국정홍보처 홍보수단 이용 홍보(9 ~ 11월)

- 총조사 홍보지원을 위한 TFT 구성으로 언론오보 대응
- 국정홍보처의 홍보수단을 최대 활용한 홍보 강화
 - 국정브리핑, KTV, LED전광판 홍보, 각 부처 홈페이지 활용(배너), 만화, 이메일 홍보(PCRM) 등

□ 음성자동전화(크로샷) 홍보(10 ~ 11월)

- 대상 : 전국 약 16백만 가구 대상(114 등록 DB자료)
- 방법 : 준비조사기간(10. 28) 중에 음성자동전화를 1회 송출하여 총조사 실시 안내 및 참여 협조 유도

□ 홍보 평가(12월)

- 대상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통계사무소
- 방법 : 지자체 및 사무소별 홍보추진실적 평가 및 포상에 반영

지방자치단체

□ 홍보활동 내용

- 옥외광고물 제작·설치
 - 홍보탑, 육교현판, 현수막, 플래카드, 가로기
- 지역단위로 언론기관을 통한 홍보
 - 뉴스보도, 대담, 인터뷰, 자막스크롤광고, 특집기사 등
 - ※ 지자체 홍보활동을 위한 예산 지원

□ 예산 배정

- 소요예산 : 약 25억원(옥외광고 20억원, 홍보활동 지원 5억원)
- 내역
 - 홍보탑 : 서울 10, 부산 7, 광역시 및 도 각 5조
 - 육교현판 : 시도당 2조
 - 현수막 : 시도 및 시군구당 1매
 - 플래카드 : 읍면동당 3매
 - 가로기 배너 : 40만 이상 시군구당 500조
- 방법 : 시·도별 예산 재배정(추후 통보)

민간홍보 대행사

□ 대행사 선정 및 운영 : 2005. 5~12월

□ 위탁 사항(약 60종)

- 민간전문기법에 의한 매체별 전략 및 홍보활동 전개
- 대언론 PR과 캠페인 협찬 방식의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
- 온/오프라인 프로모션 및 광고, 캠페인 이벤트 등 대행
 - ※ 홍보기본계획 및 민간대행사의 제안서를 토대로 세부실시계획 수립 (2005. 5월 예정)에 반영

6. 5 추진일정

홍보 내용	일 정	비 고
□ 홍보 대행 용역발주 및 업체선정		
○ 용역 제안서 작성 및 입찰 요청	2.17	조달청
○ 입찰 공고	2.28	"
○ 입찰제안서 접수 및 평가	4.12	평가위원회 구성
○ 가격협상 및 계약체결	4.26	조달청
□ 민간 대행사 위탁		
○ 홍보대사 위촉 및 운용	"	통계·홍보대사 병행 운용
○ 홍보물(방송물, 유인물, 설치물) 제작	"	
○ 인터넷 포탈사 제휴 및 프로모션	"	총조사 홈페이지 병행
○ 지역문화행사 및 마라톤대회 등 홍보	6~10월	홍보대사, 통계대사 활용
○ 캠페인 방송광고(TV, 케이블, 라디오)	10~11월	민간대행사 공동 추진
○ 언론사 PR 전반	"	"
○ 가두 및 톨게이트 캠페인	"	홍보대사, 통계대사 활용
○ 교통수단 광고	"	
○ 대국민 감사 광고	11월	
○ 홍보효과 조사·분석	11~12월	
□ 통계청 자체 추진		
○ CI(Census Identity) 매뉴얼 제작·배포	2~3월	심볼마크, 슬로건, 캐릭터
○ 홍보 세부실시계획 수립·보고	5월	
○ 홍보자문위원회, 협의체 구성 운용	5~11월	언론인, 전문가, 국정홍보처
○ 언론인 설명회 개최	8~10월	중앙 및 지방, 기자간담회
○ KT와 업무협정 조인	9~10월	한국통신(음성자동전화 등)
○ 홍보 모니터링 및 피드백	9~11월	홍보대행사 공동 추진
○ 국정홍보처 홍보수단 이용 홍보	"	LED전광판, KTV 등
○ 담화문 및 실시공고문 공고	10월	국무총리실, 국정홍보처
○ 신문·잡지·방송(KBS) 광고	10~11월	한국언론재단
○ 언론사 인터뷰 및 대담 홍보	"	중앙 및 지역 방송사, 신문사
○ 음성자동전화 홍보	"	한국통신
○ 홍보 평가	12월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 추진		
○ 시·도 홍보예산 재배정	7~8월	옥외설치물, 지자체 언론홍보
○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6~11월	현상공모, 총조사배너, 이벤트 등
○ 옥외광고물 제작 설치	9~11월	홍보탑, 현판, 현수막, 배너 등
○ 지역 언론기관을 통한 홍보	"	자막스크롤광고, 인터뷰, 대담 등

7. 현장조사 및 실사지도

핵심사항

- ◆ 정확한 현장조사를 위한 취약지역 집중관리
- ◆ 온라인 조사관리 시스템의 적극 활용을 통한 체계적 조사추진
- ◆ 담당공무원과 총관리자의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효율적 조사업무 추진
- ◆ 현장 지도요원을 통한 일관성 있는 지도업무 수행

7.1 준비조사

□ 실시기간

- 전수조사 : 2005.10.29 ~ 10.31(3일간), 표본조사 : 2005.10.30 ~ 10.31(2일간)

□ 목적 및 필요성

- 조사원이 담당 조사구의 위치 및 경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부여된 업무량을 확인하는 과정

- 담당 조사구내의 조사대상 가구를 확정하고, 본조사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준비

□ 수행업무

- 조사용품 수령 및 현장조사시 유의사항 재교육(총관리자)
- 조사구 경계확인
- 조사구 요도 수정·보완
- 거처 및 가구번호 부여 및 가구 스티커 부착
- 아파트 기본정보 수집(조사관리자)
- 가구명부 작성

□ 중점 추진사항

- 준비조사와 본조사 업무구분 철저

- 준비조사 기간 중에는 가구명부 작성 업무를 중심으로 수행하되 “거처 번호, 가구번호, 주소”까지만 파악

⇒ “가구주 성명, 가구원수, 가구 및 거처 종류 등”은 조사표 작성(본조사) 시 파악한 후 가구명부에 이기

○ 취약조사구 실태파악 보고

- 취약지역 : 다가구·원룸 밀집지역, 오피스텔, 주상 복합지역, 신축아파트, 도어 록 시스템 아파트, 집창촌 등으로 구성된 조사구

○ 조사원별 업무량 최종확정 및 조정

- 조사관리자는 담당 조사원의 준비조사 결과와 당초 업무 배정량의 변동을 파악하고, 필요시 총관리자와 협의하여 업무량 조정

<예시> 가구수 과다 조사구의 인근지역에 있는 과소 조사구와 교체

7. 2 본조사

□ 실시기간 : 2005.11.1 ~ 11.15(15일간)

□ 조사방법 유형

○ 조사원 면접조사 : 조사원이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하여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 사항을 질의하고 응답내용을 조사표에 기입

○ 응답자 기입조사 : 조사표를 배부받은 응답자가 응답내용을 조사표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조사원은 약속 일자에 조사표를 회수

○ 인터넷 조사 : 응답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조사내용을 작성하고 자료전송

□ 조사방법 선택

○ 면접 청취조사방법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아파트 조사구와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기를 희망하는 가구는 응답자 기입조사방법으로 조사

○ 인터넷조사는 원룸이나 젊은 층 밀집지역, 오피스텔 등과 같이 주간 부재 가구가 많은 지역을 주 대상으로 하며, 준비조사 기간 중에 별도 홍보자료를 배포하여 참여 유도

□ 중점 추진사항

○ 조사 진행상황 중간점검 및 추가 교육

- 조사 3일차, 7일차 및 11일차에 조사관리자 및 조사원이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 조사과정에서 판단하기 어려웠던 문제점 토의
- 문제점 해결이 어려운 부분은 080 콜센타를 통해 해결방안 모색
- 조사관리자는 중간 검토 시 작성한 조사표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철저한 추가교육 실시
- 조사관리자 수첩과 총관리자의 수시 전달사항을 참조하여 검토

○ 취약지역에 대한 조사표 작성현황 점검 및 지원

- 취약지역을 담당한 조사관리자는 조사표 작성현황을 수시 점검하고, 조사가 곤란한 지역에 대하여는 직접 현장 지원
- 조사원 및 조사관리자가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는 총관리자를 통해 읍면동 및 시군구 지정공무원에게 지원을 요청

○ 장기부재·불응가구의 조치

- 응답자의 장기부재나 응답거부(불응)로 인해 조사원의 수차례 방문에도 불구하고, 11월 10일까지 조사가 불가능한 가구는 조사관리자의 현장 확인을 거쳐 부재가구 또는 불응가구로 처리
- 담당 조사원 및 조사관리자는 해당 가구의 인근 가구나 통·반장을 통해 기초현황을 최대한 파악

<예시> 전화번호, 가구원수, 성별, 연령(대), 주택형태 등

- 조사원이 임의로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조사초기에 부재나 불응가구로 처리하지 않도록 특별히 강조

○ 총관리자 정기 소집 실시

- 시군구에서는 조사기간 중 최소 3회 이상 자체계획에 의거 총관리자 소집을 실시하여 전달 사항 및 특별 지시사항을 전달

- 통계청 전달사항(홈페이지 수록) 및 시군구에서의 지시사항을 조사관리자를 통하여 즉시 전달
- 통계청에서는 각종 전달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 전달
- 시군구 담당공무원 및 총관리자는 매일 2회 이상 홈페이지 내용 확인

○ 조사표 내용 검토 및 보완

- 조사관리자는 조사 기간이 완료되기 전까지 담당 조사원별 조사표 작성 내용을 검토
- 총관리자는 조사표의 기본적 작성상태 및 정리 상태를 가구명부 등과 대조하여 확인 후 접수

○ 야간조사

- 낮 시간대에 응답자의 면담이 어려워 저녁 시간대를 이용하는 조사원의 경우 특히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강조
- 조사관리자의 지도하에 가능하면 2명이상이 팀을 이루어 조사 실시
- 조사의 시간대가 너무 늦어 응답가구의 불만요인이 되지 않도록 유의
<민원 또는 비판기사 원인 제공 주요사례>
- 일부 조사원이 특정 가구를 방문하지 않는 경우
- 조사원이 응답자의 감정을 자극하는 경우
- 조사원의 불량 및 불손한 조사 태도

□ 현장조사 상황보고

- 총관리자는 매일 오후 5시까지 조사관리자를 통하여 조사원별 조사 진도를 파악하여, 오후 5시30분까지 홈페이지의 온라인 조사관리 시스템을 통해 입력·보고
- 각 읍면동에서 조사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이사항은 관할 시군구에 즉시 유선 보고한 후, 온라인 조사관리 시스템에 수시 입력·보고

7. 3 실사지도

□ 실시기간 : 2005.10.29 ~ 11.15(18일간)

□ 기본방향

○ 조사 추진 상황 파악 및 독려 중심으로 실시

- 조사내용에 관한 사항 질의응답은 080 콜센터 중심으로 관리

○ 실사 지도반은 통계청, 시도 및 시군구 인력을 구분하여 편성·운영

□ 인력 운용

○ 시도 단위의 책임관(부책임관), 시군구 단위의 책임관, 읍면동 단위의 실사지도 담당자 지정 운용

○ 실사지도 인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역 특성별 배치

- 통계청 실사 지도반은 대도시 중심으로 시부지역에 중점배치

- 통계청(지방사무소) 실사 지도반은 중소도시 중심으로 배치

○ 시도 담당자는 관할 구역 내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정보 확보를 통한 집중 배치

□ 실사지도반별 주요 수행업무

통계청 실사지도반	시도·시군구 실사지도반	읍면동 실사지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원, 조사관리자, 총관리자 및 시도와 소속기관 공무원의 직무수행 확인 및 협조 · 현지조사에서의 문제점 발굴 및 대안모색 · 각종 조사표류 수급량 파악, 부족분에 대한 조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지구 특별관리 · 조사부진 지역에 대한 독려 · 탁상조사 방지 및 예방대책 · 일정별 조사추진내용 확인 · 각종 조사표류 작성상태 확인 및 지도 · 관할 지도공무원의 업무 수행상태 확인 · 조사 진척상황 보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지구 특별 점검·조사원, 지도원 관리 · 중복·누락 및 착오조사 방지 · 조사 상 어려운 문제점 해결 · 비협조 가구 및 불응가구 설득 · 조사 진척상황 보고 · 대국민 홍보활동 등

8. e-census

핵심사항

◆ IT 인프라의 적극 활용을 통한 「e-census」 실시

- 인터넷조사 도입으로 1인 및 맞벌이 가구, 젊은 층 등과 같이 조사원 면접 조사가 어려운 취약계층의 누락방지
- 웹기반 현지입력 방식으로 자료처리 방법을 개선
- 온라인 조사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조사구, 인력, 물품, 실사·내검 등을 실시간으로 추진

8. 1 인터넷 조사

□ 목적

- 면접이 어려운 1인 및 맞벌이가구 등을 조사에 참여시켜 조사의 완전을 제고
-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 자기응답기입식 이외에 또 다른 응답방법 제공
- 차기 인터넷조사 확대 실시를 대비한 다양한 경험 축적

□ 실시 방법

- 인터넷조사 신청 : 2005.10.29 ~ 11. 7(10일간)
 - 준비 및 본조사 기간 중 총조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 신청가구 주소를 기준으로 주소DB와 연계하여 전수/표본을 자동 구분
- 인터넷 조사표 작성·제출 : 11. 1 ~ 11.10(10일간)
 - 신청가구가 인터넷상에서 신청 아이디를 이용하여 조사표 입력
- 읍면동에서 조사구, 거처, 가구번호 입력(응답 후 11.15까지)
- 미입력 가구 방문조사 : 2005.11.11 ~ 11.15
 - 신청 가구 중 기간 내 입력하지 않은 가구는 방문 면접조사 실시

□ 시군구 및 읍면동의 역할

- 시군구는 신청 및 입력가구 현황 등을 집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시 확인하여 관할 읍면동 관리 감독
 - 자동으로 관할 읍면동이 분류되지 않는 가구의 수동 분류
 - 웹 입력 및 내검 기간 중 인터넷 입력가구 자료 확인
- 읍면동 단위로 인터넷조사 신청 및 입력가구를 관리
 - 자동으로 조사구 번호 및 표본/전수가 분류되지 않는 가구의 수동분류
 - 인터넷 입력가구의 거쳐번호 및 가구번호 부여, 입력
 - 신청 가구 중 조사표 미입력 가구의 방문 면접조사 실시
 - 조사기간 및 조사표 정리 기간 중 가구명부를 통한 중복 및 누락 확인

8. 2 웹기반 현지 입력 및 내검

□ 목적

- 현지에서 분산 입력 및 내검으로 자료 검토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료처리 기간 단축

□ 실시 방법

- 시군구 단위에서 조사요원 중 입력·내검원을 선발하고 임무부여
- 소요 PC 및 입력 장소는 자체확보를 원칙으로 함
- ※ 웹입력 및 내검 일정 등 계획은 「11. 자료입력 및 내용검토」 참조

8. 3 온라인 조사관리

□ 목적

- 정확한 현장조사 지원, 실사 및 내검의 효율적 지도
- 각종 행정서류 전산 작성으로 신속한 행정처리 지원 등

□ 대상

- 조사요원, 물품, 조사구 관리, 조사관련 행정서류

□ 실시 방법

- 조사구, 조사요원 등 DB를 구축하여 조사구, 인력, 물품 등 총조사 준비 및 관리를 인터넷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실시

- 조사구 DB : 실시간 조사구 관리 및 집계, 적정 조사원수 산정, 조사구별 가구수 수준점검, 조사원 및 입력·내검원 업무량 배정 등

- 조사요원 DB : 조사요원 등록 및 채용, 조사요원 등록 및 채용명부, 조사요원증 발급, 보험가입 신청서 작성, 수당 계산, 사이버 교육관리, 자료처리 시스템 접근레벨 설정 등

- 공무원 DB : 교관 및 실사 지도단 편성, 자료처리 시스템 접근레벨 설정

- 교육 DB : 교관 및 실사 지도단 편성내역 조회

- 물품 DB : 물품 배송 관리, 수령증 작성, 주요물품 예비량 관리

- 주택 DB : 조사 및 내검 과정에 활용

- 기타 : 총조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사항 시달, Q&A 코너 운영

※ DB는 구축과정에서 통합·분리 될 수 있으며, 활용내용도 변경될 수 있음

□ 시군구 및 읍면동의 역할

- 각종 DB 구축에 필요한 자료의 적기 제출 및 수시보완

- 조사요원, 시군구 입력·내검원 등 채용확정자의 채용구분, 채용일수 등을 적기에 입력 및 변경 시 프로그램의 화면에서 수시 보완

- 관계 공무원 인적자료의 적기 제출 및 프로그램 상 수시보완

- 배부물품의 인수, 수령증 제출 등을 관련 프로그램 상에서 실시 등

9. 080 콜센터 운영

핵심사항

- ◆ 통일된 지침과 일관된 답변을 위하여 집중 운영 및 관리
- ◆ 시설 및 전문 상담 요원을 확보한 외부 전문 업체 활용
- ◆ 민원, 조사지침 문의, 행정사항 문의 등 이용자별 전용선 설치

9. 1 개요

9. 1. 1 목 적

- 인구주택총조사와 관련된 각종 질의 답변
- 대국민 민원 접수 및 처리

9. 1. 2 추진 방향

- 통일된 답변 및 일관된 운영을 위하여 한 장소에서 운영
 - 상담원에 대한 일관된 지침 시달
 - 특이 사항 및 조사 상 문제점 발생시 모든 상담원 공유 및 대처
- 시설 및 전문 상담 요원을 확보한 외부 전문 업체 활용
 - 이용자의 통화 대기 시간 최소화
 - 예절 및 친절 교육을 숙지한 상담원을 채용하여 각종 질의 및 민원에 대한 서비스 향상
- 민원, 조사 지침 문의, 행정사항 문의 등 이용자별 전용선 설치
 - 상담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위하여 상담 내용별로 구분하여 회선 확보
 - 상담원을 상담 내용별로 특화시켜 이용자의 문의에 대하여 적절하고 심도 있는 상담 실시

9. 2 운영방법

- 설치 장소 : 대전 소재 장소(전화번호는 추후 통보)
- 운영 기간 : 2005.10.22 ~ 12.20(60일간)
 - 교육, 실습 및 정리 기간(15일) 제외
- 운영 시간 : 08:00 ~ 22:00(14시간)
- 인력 동원
 - 동원 인원 : 총 110명(전문 상담원 100명, 통계청 직원 10명)
 - 인력 운영 : 1일 2교대(또는 3교대)
 - 1일 2교대 운영을 기본으로 하되, 수신 전화량을 감안하여 3교대 전환

9. 3 상담원 교육

- 교육 대상 : 080 콜센터 상담원(100명)
- 교육 기간 : 2005.10.10 ~ 10.21(12일)
- 교육 내용
 - 다양한 질의에 대비하여 인구주택총조사 전반에 대한 교육 실시
 - 상담원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교육 실시
 - 친절 교육, 현장 실습, 평가 및 분임토의 실시

9. 4 추진 일정

- 세부 계획 수립 : 2005. 3월
- 시설 준비 및 프로그램 개발 : 2005. 5월 ~ 8월
- 교육 및 실습 : 10.10 ~ 10.21
- 운영 : 10.22 ~ 12.20

10. 조사표류 정리 및 제출

핵심사항

- ◆ 현장 조사표 정리 체계화
- ◆ 조사표 정리 절차 및 내용 명확화
- ◆ 가구명부를 통한 잠정결과 신속집계

10. 1 목적

- 조사원별로 작성한 조사표의 기본 사항 검토
- 조사표 누락 여부 검토
- 잠정결과 집계를 위한 가구명부 집계표 입력
- 인터넷조사 가구의 가구명부 확인 등

10. 2 조사표 정리

- 조사표 정리 기간 : 2005.11.16 ~ 11.22(7일간)
 - 조사표 정리 요원 채용 및 교육
 - 조사표 정리요원은 총관리자를 포함한 조사요원 중에서 계획된 인력을 채용
 - 조사표 정리요원 중 1명을 관리자로 선발하여 운영
 - 관리자는 조사표 정리가 원활히 완료되도록 조사표 정리요원 관리, 문제점 발견 시 담당공무원에 보고 등을 수행
 - 관리자는 조사표 정리가 완료된 조사구는 관련 프로그램에 가구명부 집계표를 11. 22일까지 입력
 - 조사표 정리요원 교육 : 2005.11.11 ~ 11.15중 1일간
- ※ 인력 채용 및 교육 계획은 「3. 인력동원 및 운영」 과 「5. 교육·훈련」 참조

□ 가구명부 집계표 입력

○ 입력 기간 : 2005.11.16 ~ 11.22

- 읍면동에서 검토가 완료되는 조사구별로 관리자가 수시 입력
- 읍면동 조사표류 정리 및 제출 기간내 입력 완료

○ 입력 요령

- 조사표류 정리 및 제출 요원 교육시 입력 요령 교육
-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www.census.go.kr) 참조

10. 3 조사표류 제출

□ 조사표류 제출(읍면동 → 시군구)

- 제출 조사표류 : 조사표, 가구명부, 조사구요도, 공동주택기본정보수집표, 조사요원증 등
- 제출방법 : 조사표류 정리 및 제출지침에 따라 조사구별 또는 읍면동별로 편철하여 시군구에 제출
- 제출기간 : 2005.11.23 ~ 11.26중 1일간
 - 시군구 입력 및 내검 일정을 감안하여 읍면동별로 자체 지정

10. 4 추진일정

- 조사표 정리요원 교육 : 2005.11.11 ~ 11.15(기간 중 1일간)
- 조사표 정리 및 가구명부 집계표 입력 : 2005.11.16 ~ 11.22
- 조사표류 제출(읍면동 → 시군구) : 2005.11.23 ~ 11.26(기간 중 1일간)

11. 자료입력 및 내용검토

핵심사항

◆ 웹기반 현지입력을 주된 자료처리 방법으로, 인터넷조사 및 ICR 자료처리를 보조수단으로 활용

- 일반조사구 : 웹기반 현지입력 및 내검
 - 인터넷조사 신청가구 : 인터넷조사
- 특별조사구 : ICR 자료처리

11. 1 추진방향

- e-census를 활용한 자료처리 기간을 3개월 이상 단축
- IT 인프라 적극 활용
 - 일반조사구(빈집, 외국인 포함)에 대해서는 인터넷망을 활용한 현지입력방식으로 입력기간 및 내검기간의 최소화
 - 인터넷망을 통한 조사원, 시도 및 중앙간의 실시간 질의응답체계 구축
 - 입력현황 등 각종 현황자료의 실시간화
- 내검 및 코딩작업의 자동화로 자료처리의 효율성 제고
 - 산업/직업의 자동코딩 시스템 최대한 활용
 - 오류 및 무응답 항목에 대한 Imputation기법 적용

11. 2 2005년 총조사 내용검토 특징

- 읍면동, 시군구, 통계청 등 내용검토 단계별로 처리사항을 명확히 규정
- 자동 내검 시스템 및 Imputation 도입
- 내검원에게 오류코드에 대한 명확한 처리지침 제공

- 내용 검토과정에서 응답자에 대한 전화 등 질의는 최소화
- 부재, 불응가구에 대한 현장조사, 입력 및 내검 처리지침 마련
- 온라인 내검 관리로 문제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
- 수집된 자료는 최대한 활용하고, 최소의 자료를 수정하여 보완

11. 3 자료처리 체계

□ 현장조사 자료처리

- 현장조사 → 조사표 정리·제출(읍면동) → 웹입력 및 1차 내검(시군구) → 2차 내검(통계청 지방사무소) → 3차 내검(본청)
- 가구명부 집계표는 읍면동 조사표 정리 및 제출 기간 중 총관리자가 입력

□ 인터넷 조사 자료처리

- 인터넷 조사 신청 → 입력(가구) → 1차 내검(시군구) → 2차 내검(통계청 지방사무소) → 3차 내검(본청)
- 내검은 웹기반 현지입력 자료와 통합하여 실시

□ 특별 조사구 자료처리

- 현장조사 → 조사표 정리·제출(실시기관) → ICR 입력 및 1차 내검(본청) → 2차 내검(본청)

11. 4 자료 입력 및 내검 방법

11. 4. 1 현장조사 자료

□ 웹 입력 및 1차 내검(시군구) : 2005.11.23 ~ 12. 20중 24일간

- 입력 및 내검은 웹기반 프로그램에 의해 실시
- 내검은 내검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오류사항에 대하여 온라인으로 처리
- 범위 등 입력관련 오류와 1차원(변수×변수) 내검을 위주로 실시하며, 오류자료는 조사표 확인 및 전화 질의로 수정·보완

- 웹 기반 입력 및 내검 프로그램에 의한 先입력 後내검 실시
 - 입력·내검원은 배정받은 전체 조사구의 조사표를 모두 입력 후 자신이 입력한 조사표의 오류자료 내검 실시
- 인터넷조사로 입력된 자료와 통합하여 내검 실시
 - 인터넷조사로 입력된 자료도 시군구 웹 입력시 함께 제공
- 장비 및 장소 확보
 - 소요 PC 및 입력 장소는 자체확보(입력내검원당 1대의 PC 필요)
- 입력 및 내검 관리
 - 통계청에 080 콜센터를 운영
 - 전산장애 및 재해에 대처가 가능하도록 A/S반 운영
 - 입력 및 내검 관리 프로그램 운영
- 조사표 제출(시군구 → 통계청 지방사무소) : 2005.12.21 ~ 12.28중 1일간
 - 시군구별로 조사표를 정리하여 통계청 지방사무소로 제출
- 2차 내검(통계청 지방사무소) : 2006. 1 ~ 2월
 - 통계청 지방사무소에서 내검원을 채용하여 실시
 - 1차 내검 사항 시도단위 점검 및 미진사항 보완
 - 내검 미비사항 등 내검 프로그램에 보완하여 내검 등
 - 내검원 채용 및 교육
 - 채용인원 : 700여명(내검원, 내검원관리자, 조사표 운반원)
 - ※ 1차내검(시군구) 내검 결과에 따라 실시 방법, 채용 기간 등 확정
- 3차 내검(통계청) : 2006. 3월
 - 기본사항 및 주요항목 수준점검, Imputation, 산업·직업 분류 코딩 등
 - 통계청 심사 입력실에서 실시

11. 4. 2 인터넷 조사 자료

□ 내검은 시군구 웹입력 자료와 통합하여 실시

11. 4. 3 특별조사구 자료

□ 본청에서 조사표 입력 및 교정, 1차 내검까지 진행

○ 스캐너로 조사표를 이미지화, 이미지를 데이터로 인식, 불인식 자료 교정

○ 사전(시퀀스) 내검 및 1차 내검

- ICR용 내검 프로그램에 의해 이미지와 대조하여 내검(1차 내검)

□ 2차 내검(본청)

○ 내검프로그램에 의해 본청의 심사 입력실에서 최종적으로 실시

□ 처리일정

○ 조사표 접수 : 2005. 11월

○ 조사표 입력, 교정 및 1차내검(본청) : 2005. 12월

○ 2차 내검(본청) : 2006. 1월 ~ 2월

11. 5 추진일정(현장조사 자료)

○ 입력 및 1차 내검(시군구) : 2005.11.23 ~ 12.20(기간 중 24일간)

○ 조사표 제출(시군구 → 지방통계사무소) : 2005.12.21 ~ 12.28(기간 중 1일간)

○ 2차 내검(통계청 지방통계사무소) : 2006. 1월 ~ 2월

○ 3차 내검(통계청) : 2006. 3월

12. 결과 집계 · 공표

핵심사항

- ◆ 최종 결과 공표 전까지 자료의 조기 이용자를 위한 결과 제공
- ◆ 조사 현장에서의 자료 입력으로 정도 높은 자료 제공
- ◆ 모든 조사 결과를 2006년 이내 공표
- ◆ 소지역 통계 제공 확대 및 특성별 다양한 분석 결과 제공

12. 1 잠정결과

□ 집계 목적

- 방대한 양의 자료처리에 따라 상당기간 처리 기간이 필요하므로 잠정 결과를 집계하여 이용자에게 조기 제공

□ 집계 대상

- 읍면동 조사표류 정리 기간 중 입력한 가구명부 자료
- 시군구 입력 및 내검 기간 중 입력한 외국인 및 빈집 조사표 자료
- 특별조사구 자료

□ 추진 일정

- 가구명부 합계 입력 : 2005. 11. 16 ~ 11.22
- 외국인 및 빈집조사표 입력 : 2005. 11. 26 ~ 12. 5
- 특별조사구 입력 : 2005. 11. 26 ~ 12. 5
- 자료 취합 및 내용검토 : 2005. 11. 16 ~ 12.10
- 결과 집계 및 분석 : 2005. 12. 1 ~ 12.20
- 결과 공표 : 2005. 12. 27 ~ 12.30

12. 2 최종결과

□ 추진 방향

- 전수 결과와 표본 결과로 구분하여 공표
- 조사 항목의 특성별 구분 공표
 - 전수 결과 : 인구부문, 가구·주택부문
 - 표본 결과 : 경제관련 부문, 주거·복지관련 부문, 기타 부문 등
- 소지역 통계 제공 확대
 - 읍면동 단위의 통계 제공 확대
 - 표본 항목도 표본 오차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읍면동별 자료 제공
- 특성별 다양한 분석 결과 제공
 - 외부 전문가를 통한 각 특성별 분석 결과 제공

□ 추진일정

- 전수 결과 공표(2회) : 2006. 5월, 7월
 - 인구부문 : 2006. 5월
 - 가구·주택부문 : 2006. 7월
- 표본 결과 공표(3회) : 2006. 9월, 11월, 12월
 - 경제관련 부문 : 2006. 9월
 - 주거·복지부문 : 2006.11월
 - 기타부문 : 2006.12월
- 특성별 분석 : 2006. 9월 ~ 2007. 12월

13. 사후조사

핵심사항

- ◆ 2005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대한 완전성 및 정확성 평가
- ◆ 누락과 중복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항목으로 변경
- ◆ 사후조사 직원의 책임감 부여를 위해 품질평가 실시

13. 1 개요

□ 목적

- 2005 인구주택총조사의 완전성과 정확성 평가
- 조사 누락 및 중복의 근원을 분석, 차기 총조사 개선자료로 활용

□ 조사기준 시점 : 2005. 11. 1. 0시 현재

□ 조사 대상 : 약 600 조사구

□ 조사 방법

- 통계청 전문 조사관에 의한 면접 조사
- 총조사 결과를 활용하는 종속적인 조사방법

13. 2 추진 방향

□ 인구주택총조사의 평가를 위한 적정 규모 표본 추출

- 사후조사의 완전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정규모
-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감안한 표본 규모
- 기숙사시설 및 특수사회시설 조사구도 조사대상에 포함

□ 조사 항목 설계

- 사후조사의 취지에 부합하는 조사 항목으로 변경
 - 누락과 중복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항목 검토
- 이동가구원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도록 조사표 설계

□ 조사 직원 선발 및 관리

- 지방사무소 직원 중 우수조사 직원 선발
- 조사 결과에 대한 품질 평가를 통해 사후조사의 신뢰도 검증과 조사 직원에게 책임감 부여

□ 대조작업의 범위 확대

- 가구와 가구, 가구원과 가구원의 확인 대조이외에 준비단계에서 조사구 경계 및 조사구 지도 작성 상태 등까지 확대

13. 3 추진일정

- 사후조사 교육 : 2006. 11. 25 ~ 11. 28 중 1일간
- 사후조사 준비조사 : 2006. 11. 29 ~ 11. 30(2일간)
- 사후조사 실시 : 2006. 12. 1 ~ 12. 8(8일간)
- 사후조사 품질평가 : 2006. 12. 15 ~ 12. 29
- 사후조사 잠정집계 : 2006. 12. 30
- 사후조사 최종집계 : 2006.3월

14. 평가 및 포상

핵심사항

- ◆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및 포상 실시
- ◆ 평가기준 및 평가요소의 사전 공개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 실시
- ◆ 엄격한 공적심사로 신상필벌 원칙을 준수한 포상 실시

14. 1 개요

□ 기본방향

- 조사 실시기관 및 참여자의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의 마련
- 미담 및 수범사례의 발굴을 위한 인터넷 추천에 의한 접수
- 우수기관에 대하여 2005년도 말에 포상금 차등 지급

□ 평가기준

-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수행에 따른 주요 추진업무를 10개 평가요소로 구분하여 실시
- 1개의 평가요소를 10점으로 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

14. 2 평가요소 및 방법

□ 평가요소 : 10개 분야

- 기관 및 행정 분야(2개 분야)
 - 기관장 관심도 및 업무의 적극성, 지역별(시도) 조사의 난이도
- 조사 준비분야(3개 분야)
 - 사무 공간 및 장소·장비확보, 조사구 설정 및 관리, 인력동원 및 교육
- 조사 실시분야(5개 분야)

- 조사표류 배부 및 관리, 홍보, e- census 관리, 조사 실시 및 실사지도, 웹입력 및 내용검토

□ 평가방법

- 평가는 기관평가와 개인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 기관평가는 주관기관 및 실시기관으로 구분
 - 개인평가는 공무원 및 조사요원 등으로 구분
-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위하여 별도의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평가 자료 제출 : 2006. 1월

14. 3 포상금 지급

- 지급 목적 : 조사의 사전준비, 현장조사 우수자 등에게 인센티브 차원에서 포상금 지급
- 지급대상 및 시기
 - 지급 대상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및 조사요원 등
 - 지급 시기 : 2005. 12월

14. 4 포상범위 및 계획

- 포상의 범위 및 대상자는 2000년 수준으로 유지
 - 2000년 정부포상 : 훈포장 5, 대통령 19, 국무총리 21
 - 2000년 부총리 표창 : 1,184개(기관 143개, 공무원955명, 조사요원 86명)
 - 2000년 통계청장 : 975명(공무원 292명, 조사요원 683명)
-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결과에 대한 실시기관 및 조사 참여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포상수여식 개최(2006. 6월 예정)

14. 5 부실조사 및 부당 예산집행에 대한 엄중조치

□ 대상

- 탁상조사 적발지역이나 사실과 다르게 왜곡조사가 발생 또는 징후가 있는 실시기관
- 실시기관 자체 실사지도 미흡으로 부실조사가 예상되는 지역
- 부당한 예산집행기관

□ 시기 : 2005. 12 ~ 2006. 2월

□ 결과조치

- 조사의 누락 및 중복 : 관련기관 및 상급기관에 징계요구
- 탁상조사 등 허위조사 :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
- 예산 부당 집행 : 상급기관에 징계요구 및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

14. 6 추진 일정

- 포상금 지급 계획 수립 : 2005. 11월
- 포상금 지급 : 2005. 12월
- 평가 및 포상 계획수립 : 2006. 1월
- 포상 훈격(종류) 및 인원협의 : 2006. 2월
- 포상 대상자(기관) 추천 : 2006. 2월 ~ 4월
- 공적심사 등 평가 실시 : 2006. 2월 ~ 4월
- 평가 결과 처리 : 2006. 4월 ~ 5월
- 포상 수여식 거행 : 2006. 6월

Ⅶ. 추진일정

2005 Census 인구주택총조사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업무 추진 일정표

업 무 구 분	추진 일정	2005												200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12	
1. 종합시행계획 수립·시행 - 종합시행계획 설명회(권역별)	~3.31	■													
	6.15~7.10						■								
2. 조사항목 확정 및 조사표 설계	~4.30	■													
3. 조사구 설정 - 조사구 경계 적합성 현장 확인 - 조사구 요도 작성 - 표본조사구 추출(1,2차)	~10월	■													
	4.11~5.13				■										
	5~9월초					■									
4. 조사 용품류 제작·발주 및 배부	6~10월					■									
	4.1~9.10				■										
5. 인력동원 - 교관 및 지도공무원 - 조사요원 - 입력 및 내검요원	9~12월									■					
	9~12월									■					
	9~11월									■					
	11~12월											■			
6. 교육·훈련 - 교관단 훈련 - 공무원 및 총관리자 교육 - 조사요원 교육 - 입력 및 내검요원 교육	8.29~11.30														
	8.29~9.10									■					
	9.20~9.30														
	10.4~10.21														
	11.23~11.30														
7. 대국민 홍보 - 홍보세부 실시계획 수립 - 언론인 설명회 - 담화문 및 실시공고문 공고 - 각종 홍보수단 집중 동원	~12월	■													
	~5월	■													
	8~10월								■						
	10월														
8. 준비조사 및 본조사 실시	10.11~10.11														
	10.29~11.15														
9. 조사표 정리 및 제출	11.16~11.22														
	11.16~11.22														
10. 자료처리 - 시군구 입력 및 내검 - 지방사무소 내검 - 본청 내검 및 수준점검	11~'06. 3월														
	11.23~12.20														
	'06.1~2월														
	'06. 3월														
11. 사후조사	'05. 12월														
12. 결과 집계 및 공표 - 잠정결과 - 최종결과 · 인구부문(전수) · 가구·주택부문(전수) · 경제관련 부문(표본) · 주거·복지 부문(표본) · 기타부문(표본)	'05.12~'06.12월														
	'05. 12월														
	'06.5~12월														
	'06.5월														
	7월														
	9월														
	11월														
12월															
13. 평가 및 포상	'06. 6월														

Ⅷ. 행정사항

핵심사항

- ◆ 체계적인 자체계획 수립으로 실시기관과 긴밀한 연락 및 협조체제 구축
- ◆ 총조사의 차질없는 실시를 위하여 교육장소, 사무 공간, 웹입력 장소 및 장비의 사전확보
- ◆ 원활한 조사체제 구축 및 조사의 중복과 누락 방지 등을 위한 담당공무원의 지정 운영
- ◆ 실시기관의 관심도 제고, 조사 진행 상황 파악, 부진업무의 독려, 기한 내 조사 완료 등을 위한 종합상황실 운영

1. 자체 계획 수립 및 시행

- 종합시행 계획(통계청)을 기초로 실시기관별 실정에 맞는 자체계획을 2005. 6월까지 수립하여 시행하고, 통계청에 통보
- 자체 계획에 의한 관내지역의 조사준비 및 추진상황 관리

2. 실시본부 구성 및 설치·운영

- 설치기간 : 2005. 7. 1~12.30
- 설치기관 :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 수행사항
 - 관내 추진상황 및 진도 파악으로 원활한 조사추진
 - 부진 조사구 독려, 조사원 유고, 부재 및 불응가구 적극적 대처
 - 조사 진행과정상 예상치 못한 문제점 해결 등
 - ※ 상황실은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담당공무원과 업무보조요원으로 운영

3. 교육장소, 사무 공간, 웹 입력 장소 및 장비 확보

□ 산정기준 및 사용기간

구 분	장 소	산정기준	사용기간
교육훈련 장소	시군구	- 읍면동 및 총관리자 교육훈련 장소 - 조사요원 교육훈련 장소	9.20 ~ 9.30 10. 4 ~ 10.22
조사 실시 사무 공간	읍면동	- 조사요원 근무 및 읍면동 내검 사무 공간 - 조사요원당 1명 이외의 사무 공간	10.28 ~ 11.22
웹입력·내검장소	시군구	- 웹입력 및 내검을 위한 장소 - 1,333가구당 입력·내검원 1명 - 입력·내검원 20명당 관리자 1명	11.25 ~ 12.20
웹입력·내검 PC	시군구	- 입력·내검원 및 관리자 당 각 1대	11.25 ~ 12.20

□ 교육장소 및 읍면동별 사무 공간 확보

- 읍면동 공무원 및 총관리자 교육훈련 장소, 조사요원(전수/표본) 교육훈련 장소 확보(빔프로젝트 사용가능 장소, 주차 공간 확보 등)
- 조사요원(조사원, 조사관리자, 총관리자 및 업무보조원)의 사무 공간 확보
 - 읍면동별 사무 공간 미확보 지역은 읍면동 사무소 회의실, 주민자치센터 및 부대시설 등 활용방안 적극 강구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조정 등으로 읍면동사무소 활용
- 조사 기간 중 각종 지침, 공지사항, 읍면동 조사표 정리 기간 중에 가구 명부 입력을 위한 읍면동별 개인용 컴퓨터 1대 이상 확보(10.28 ~ 11.22)

□ 웹입력 및 내검 장소 확보

- 웹입력 및 내검은 원칙적으로 시군구에서 통합하여 실시
- 5만 가구이상(입력 및 내검원 38명 이상)의 대규모 지역이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2~4개 장소(지역)로 분산하여 입력 및 내검 실시
- 전산교육장 등을 활용해도 부족할 경우 기타 시설(여성회관, 학교시설, 복지 시설 등 관내시설) 확보도 가능

□ 최소 요구수준 이상 확보지역 인센티브 제공

- 분야별 장소 및 장비 확보율의 최소 요구수준(가이드라인) 이상 지역에 대하여 2005년도 예산으로 포상금 우선 지급
- 2005 인구주택총조사 종합평가 및 포상 수여 시 가감점부여

□ 추진일정

- 지방자치단체별 자체 해결 : 2005. 3. 1 ~ 3.31
- 현지 확인 및 독려(통계청 실무급) : 2005. 4. 1 ~ 4.30
- 특별관리지역 현장 투입(통계청 간부급) : 2005. 5. 2 ~ 5.30
- 특별관리지역 기관장 방문(통계청장) : 2005. 6. 1 ~ 6.30
- 장소 및 장비 확보율 최종확정 : 2005. 7. 1 ~ 7.15

4. 변동 조사구 관리 철저

□ 조사구 관리 및 수정

- 조사구 설정 이후부터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직전까지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조사구 수정 신청 및 보완
- 수정 대상 범위
 - 행정 읍면동 경계가 변경된 경우
 - 구획정리, 지역재개발, 도로 신설, 하천 개수, 재해 등에 의한 지형지물의 현저한 변화로 조사구 경계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
 -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관광호텔 등이 신설 또는 철거된 경우
 - 구획정리, 주택단지 조성, 건물 철거 등의 사유로 조사구내 가구수가 현저하게 증감하여 조사구의 분할 또는 통합이 불가피한 경우

□ 수정 보고

- 매월 1회(읍면동 ⇒ 시군구 ⇒ 시도 ⇒ 통계청) 보고
 - 단, 대규모 아파트 입주 및 대단위 공사 착수로 조사구 수정이 많을 경우에는 수시 보고

4. 담당공무원 지정 및 결과보고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별 담당공무원 지정 및 운영

○ 보고 방법

- 읍면동 : 2005. 8. 20까지 시군구 보고
- 시군구 : 2005. 8. 30까지 시도 보고(읍면동 포함)
- 시 도 : 2005. 9. 10까지 통계청 통보(시도, 시군구 및 시도)

※ 조사구 설정과 관련한 담당공무원은 별도 지정

서 식 : 읍면동별 인구주택총조사 담당공무원 지정 현황

시도 시군구 읍면동

읍 면 동 (행정구역코드)	담 당 공 무 원			전화번호 (Tel)	핸드폰 (MP)	이메일 (E-mail)	비 고
	소 속	직 급 (또는 직위)	성 명				
○○○○○○○○				042-			

※ 비고란에는 전수 또는 표본 조사구 등 조사구 특성을 기입(기숙시설 특수 사회시설 조사구 명칭도 기입)

5. 세부 시행지침(계획) 마련 및 시행

지침(계획) 종류

- 인력동원 세부시행지침
- 교육훈련 세부시행지침
- e-census 실시지침
- 조사용품 배부계획
- 특별조사구 실시계획 등

시행시기 : 2005. 7 ~ 8월

조치사항 : 세부시행 지침에 따라 자체계획 수립

2005
Census 인구주택총조사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조사용품 배부 계획



통 계 청

I. 목 적

- 본 계획은 2005 인구주택총조사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한 각종 조사용품을 실시기관인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읍면동)에 체계적이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배부하기 위함

II. 추진방향

- 조사용품의 배부시기를 업무단계에 따른 사용시기를 고려하여 2단계로 구분함으로써 보관기간을 최소화하고
- 또한, 조사용품의 배부 및 포장을 읍면동(일부용품 시군구)까지 지원함으로써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부담 최소화 추구

III. 배부대상 용품 및 배부

1. 배부대상 개요

- 배부대상 종류 및 물량 : 35종 약1,010톤
 - 특별조사구관련 용품 및 홍보물품 등 별도 배부예정 물품 제외
- 조사용품 보관창고(납품 및 조사용품 분류작업장)
 - 지방분산 제작 용품(전수/표본 조사표 및 기입요령, 홍보용전단)
: 각 시도 지방체신청
 - 지방분산 제작 용품을 제외한 모든 용품 : 대전우편집중국
 - ※ 창고 소재지 : 충남 계룡시 두마면 왕대리 80번지

2. 배부체계 및 일정

○ 본청 제작 용품

	1차(교육용) 용품	2차(잔여) 용품	
배부시기	[9. 1 ~ 9. 9] · 9. 1 : 광주, 전북, 전남 · 9. 2 : 부산, 인천, 제주 · 9. 5 : 대전, 강원, 충북, 충남 · 9. 6 : 대구, 울산, 경북, 경남 · 9. 7 : 경기 · 9. 8 : 서울 · 9. 9:지방통계청(사무소) 출장소	[10. 4 ~ 10.21] · 10. 4 : 물품 분류 및 배송 준비 · 10. 5 : 대전, 강원, 제주 · 10. 6 : 충북, 충남 · 10. 7 : 전북, 전남 · 10.10 : 경북, 경남 · 10.11 : 인천, 광주 · 10.12 : 대구, 울산 · 10.13 : 부산 · 10.14 : 서울 · 10.17 : 경기 · 10.18 : 지방통계청(사무소), 출장소 · 시군구 물품 도착시 ~ 10.21 : 읍면동 배송	
용품 출발지	통계청(대전우편집중국)	통계청(대전우편집중국)	통계청(대전우편집중국)
용품 도착지	시군구청	시군구관할우체국 도착 후 지정일 시군구 배송	시군구관할우체국 도착 후 지정일 시군구 및 읍면동 배송
대상 용품	· 조사관리수첩 · 조사지침서(전수/표본) · 부호집 · 외국인 조사표 · 임명장, 조사요원증 · 조사요원증 케이스 [총 8종]	· 일반조사표 표지 (외국인, 빈집) · 가구명부 표지 [총 2종]	· 빈집조사표, 가구명부 · 연령조건표(안전수칙) · 조사원연락전 · 비밀보호용봉투 · 가구일련번호표(스티커) · 조사참여자 답례품 · 조사요원증(끈, 케이스) · 문구용품, 포스트잇 · 조사원가방, 조사표 받침대 · 조사요원 안전수칙 · 일반조사표회수용상자(전/표) · 일반조사표표지(전수/표본) · 가구명부 간지, 철근 [총 20종]

※ 본청 제작 용품 배부 관련 유의사항

1차(교육용) 용품

- ① 1차(교육용) 용품 8종은 9월초에 시도별 일정에 따라 시군구청으로 발송되며,
- ② 시군구 담당자는 위 8개 용품을
 - 지자체 공무원 및 조사원 교육시 활용하고,
 - 나머지 물량은 지급되는 배부내역(총조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에 따라 읍면동에 배부하고, 자체 보관분(예비량 등) 관리
- ③ 1차(교육용) 용품은 교육에도 사용되지만, 본조사시까지 계속 사용되므로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함, 특히 외국인 조사표는 교육시 1부만 참고용으로 사용하고 본조사시 부족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2차(잔여) 용품

- ① 2차(잔여)용품 22종은 통계청에서 관할 시군구 우체국으로 10. 4 ~ 10. 17까지 발송되며, 시군구 우체국 도착 후 시군구 통계담당자와 배송일정을 협의하여 지정된 일자에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로 발송토록 조치
 - 읍면동 배송장소는 e-census 홈페이지 등록 또는 우체국 직접 전달
- ② 시군구담당자는 용품이 적절하게 시군구 또는 읍면동으로 배송되는지 철저히 감독하여 오발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
- ③ 모든 용품은 본조사시 사용되므로 배부기준에 따라 읍면동에 배송 및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시군구 등에 배정된 예비량을 철저히 관리

- 용품 수령 후 읍면동 담당자는 e-census 홈페이지에서 읍면동 수령분을 포함하여 수령확인을 함(자세한 방법은 e-census 매뉴얼 참조)

○ 시도 분산제작 용품

대상용품	전수/표본 조사표 및 기입요령, 가구홍보용전단
배부시기 및 용품 배부	<p>[8.29~30] : 각 시도별 체신청 납품 완료</p> <p>※ 각 시도별 조사표류 보관장소 및 담당자 현황 : 붙임</p> <p>[9. 6 ~ 9. 9] : 각 시군구 우체국 배송</p> <p>· 교육시 소요량은 각 시군구 담당자가 우체국 담당과 협의 후 사용</p> <p>[10. 4 ~ 10. 21] : 2차(잔여) 용품 배부 일정에 따라 시군구, 읍면동 배부</p>

※ 시도 분산제작 용품 배부 관련 유의사항

시도 분산제작 용품

- ① 시도 분산제작 용품은 통계청에서 발주하여 각 시도 인쇄조합에서 제작한 5종의 조사표류임
 - 위 5종은 시도별 체신청으로 납품되어 각 시군구 관할 우체국으로 발송 후 2차(잔여) 용품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군구 또는 읍면동으로 배송될 수 있도록 조치
- ② 시도, 시군구 담당자는 위 5개 용품을
 - 지자체 공무원 및 조사원 교육시 활용하고,
 - 나머지 물량은 배부내역(총조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에 따라 읍면동에 정확하게 배부되는지 확인하고, 자체 보관분(예비량 등) 관리
- ③ 모든 용품은 본조사시 부족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함
특히 조사표류(전수/표본/외국인/빈집)는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e-census 홈페이지에서 예비량 관리)

3. 용품 배부반 편성운영

- 인구조사과 직원을 현지에 배치하여 납품시부터 배부완료시까지 조사용품 관리 및 배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 출발일시 및 도착시간 등 조사용품 배부에 관한 추진 및 의문사항은 배부반에 수시로 연락을 취하여 업무에 원활을 기 할 것

배부반 연락처

☎ 통계청 인구조사과 : 042-481-2241

인구조사과 물품담당 : 019- 436-2252(조순기)

010-6663-0585(윤상수)

우정사업본부(충청체신청) 담당(이춘옥) : 016-274-3996

대전우편집중국 담당자(우동식) : 010-2302-8487

IV. 조사용품 배부 및 보관시 유의사항

- 조사용품의 예비량은 예산절감 및 물자낭비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물량만 제작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충분한 예비량을 보관관리하여 용품 과부족 시 원활히 조절할 수 있도록 조치
- 특히 상당량의 예비량을 각 시군구에 배정하였으므로, 시군구에서는 예비량 관리 및 부족시 대처 필요
- 중앙 예비량은 업무 참고용으로 최소한만 확보하였으므로 중앙에 추가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조사표 및 지침서 등은 가구수의 변동 및 조사원 교체를 감안하여 적정한 예비량 확보(시·군·구에서 확보) 필요
- 조사용품의 인수 후 안전한 장소를 확보하여 보관(화재, 도난 및 침수예방 등)
 - 시·도청, 시·군·구청, 읍면동 사무소 서류창고 등
- 조사표 보관시 가급적 저지대는 피하고 방수시설이 양호한 지역으로 선정
 - 9월~10월중에는 태풍 등의 영향으로 폭우가 예상되므로 보관 관리에 철저
 - 종전에는 태풍으로 인해 면(面)전체의 조사표류가 침수된 사례도 있었음
 - 조사표 적재시 아래에 깔목을 놓은 후 그 위에 적재하여 물에 젖지 않도록 유의
- 조사시 현저한 가구변동으로 조사표류가 부족할 경우에는 읍면동의 보유량에서 1차 조치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시·군·구, 시·도의 예비량으로 조절하여 사용
- 조사요원에게 조사용품 지급시 조사대상가구 등을 철저히 확인 후 지급
 - 조사표는 매일 조사대상가구를 확인하여 지급토록 하고, 조사표 1매라도 소홀히 취급하지 않도록 배부량에 각별히 유의
 - 조사지침서류 및 사무용품은 조사원 교육시에, 가구명부는 준비조사시에, 조사표는 본 조사시 등으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지급
- 조사원 교체 시에는 전임조사원의 조사용품을 후임자에게 인계하도록 하여 조사에 차질 없도록 조치
 - 불가피한 사유로 반납 또는 인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비량으로 지급

- 포장상자는 조사표류 제출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보관 관리
 - 조사표류 제출시 기 배부한 「회수용 상자」 이외에 추가로 상자가 필요하므로 시·도, 시·군·구, 읍면동에서 「배부용 상자」를 적정량 확보

V. 행정사항

- 시도, 시군구, 읍면동별 용품류의 배부기준 및 배부량은 동계획을 참고하고, 총조사 e-census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함
 - 전체 용품류 중 1차(교육용) 물품 8종은 전부 시군구청으로 배송하게 되므로 시군구 담당자 책임하에 관리 및 배부해야 함
 - 나머지 용품류는 지자체의 배부 및 보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우체국에서 직접 시군구, 읍면동으로 배부하게 됨. 따라서 시군구 담당자는 읍면동 배송전 관할 시군구 우체국 담당자와 용품의 수량 확인 및 배송일자 협의가 필요함
 - 읍면동 배송을 위한 주소(배달장소)는 9월말까지 e-census 홈페이지에 등록하거나 우체국 담당자에게 전달
 - 인수장소 통보 서식

시군구, 읍면동명	인수장소	담당자	전화번호	비고

- 용품류의 수령 확인은 시군구 담당자가 총조사 e-census 홈페이지에서 수령한 물량을 기록하고 등록
 - 시군구 담당자는 시군구 자체 수령분 뿐만 아니라 읍면동으로 배송된 물량까지 합하여 홈페이지에서 수령 물량 등록

Ⅵ. 조사용품류 배부 기준

일련 번호	물 품 명	총제작수량	배 부 기 준 (소 요 량)	(예비량)		비고
				시군구	읍면동	
1	조사표(전수)	21,646,700	- 전수 가구당 1 - 6인이상 가구당 1매 추가	15%	5%	예비 시도 5%
2	조사표(표본)	2,598,200	- 표본 가구당 1 - 6인이상 가구당 1매 추가 - 3,4번조사구 수용인원/5	10%	5%	예비 시도 5%
3	조사표기입요령 (전수)	11,025,300	- 전수 아파트가구 1 - 전수 아파트외가구 0.35	3%	5%	
4	조사표기입요령 (표본)	762,000	- 표본 가구 0.35	3%	5%	
5	가구홍보용전단	20,207,800	- 가구 1	5%	5%	
6	조사관리수첩	13,400	- 사무소 10, 출장소 5 - 시도 3, 시군구 5, 읍면동 2 - 총관리자 1			
7	조사지침서(전수)	98,600	- 사무소 10, 출장소 5 - 시도 3, 시군구 5, 읍면동 2 - 총관리자, 조사관리자 각 1 - 전수 조사원 1	7%		
8	조사지침서(표본)	48,010	- 사무소 10, 출장소 5 - 시도 3, 시군구 5, 읍면동 2 - 총관리자, 조사관리자 각 1 - 표본, 시설, 예비조사원 각 1			
9	부호집	68,400	- 사무소 10, 출장소 5 - 시도 3, 시군구 5, 읍면동 2 - 총관리자, 조사관리자 각 1 - 표본, 시설, 예비조사원 각 1 - 입력내검원 1	15%		

일련 번호	물품현황	제작수량	배부기준 소요량	(예비량)		비고
				시군구	읍면동	
10	외국인조사표	430,000	- 전수, 표본, 시설조사원 각 1 - 외국인 인구당 0.4	20%	5%	
11	빈집조사표	353,500	- 조사구 1	20%	5%	
12	가구명부	1,067,100	- 읍면동 3, 조사구 3	20%	5%	
13	연령조건표 (안전수칙요약)	112,600	- 시도 3, 시군구 5, 읍면동 2 - 총관리자, 조사관리자 각 1 - 전수, 표본, 시설조사원 각 1	3%	5%	조사표받침대 에 끼워 사용
14	조사원연락전	143,300	- 총관리자 1, 전수조사원 1.5 - 표본, 시설조사원 1	10%	5%	
15	비밀보호용봉투	7,622,000	- 전수 아파트가구 0.5 - 전수 아파트외가구 0.35 - 표본가구 0.35	3%	5%	
16	가구일련번호표 (스티커)	324,200	- 조사구 1매(70개)	10%	5%	3색 제작
17	조사참여자답례품	117,000	- 사무소 10, 출장소 5 - 시도 3, 시군구 5, 읍면동 2 - 총관리자, 조사관리자 각 1 - 전수, 표본, 시설조사원 각 1	7%		
18	임명장	122,100	- 시도 3, 시군구 5, 읍면동 2 - 관리자, 조사원 각 1	15%		서식 제공 내용 출력사용
19	조사요원증	71,800	- 시도 3, 시군구 5, 읍면동 2 - 관리자, 조사원 각 0.5	25%		
20	조사요원증케이스	122,100	- 시도 3, 시군구 5, 읍면동 2 - 관리자, 조사원 각 1	15%		
21	조사요원증끈	122,100	- 시도 3, 시군구 5, 읍면동 2 - 관리자, 조사원 각 1	15%		
22	조사요원휘장 (마크)	122,100	- 시도 3, 시군구 5, 읍면동 2 - 관리자, 조사원 각 1	15%		

일련 번호	물품현황	제작수량	배부기준 소요량	(예비량)		비고
				시군구	읍면동	
23	문구용품 (샤프, 심, 지우개, 볼펜, 자, 외피)	137,000	- 사무소 10, 출장소 5 - 시도 3, 시군구 5, 읍면동 2 - 관리자, 조사원 각 1 - 입력내검원 1	3%	5%	
24	포스트잇	135,100	- 사무소 10, 출장소 5 - 시도 3, 시군구 5, 읍면동 2 - 관리자, 조사원 각 1 - 입력내검원 1	3%	5%	
25	조사원 가방	110,000	- 시도 3, 시군구 5, 읍면동 2 - 관리자, 조사원 각 1	5%		
26	조사표받침대	112,600	- 시도 3, 시군구 5, 읍면동 2 - 관리자, 조사원 각 1	3%	5%	
27	조사요원안전수칙	111,700	- 시도 3, 시군구 5, 읍면동 2 - 관리자, 조사원 각 1	3%	5%	
28	일반조사표 회수용상자(전수)	19,100	- 읍면동 1, 전수조사구 0.05	10%	5%	
29	일반조사표 회수용상자(표본)	8,600	- 읍면동 1, 표본조사구 0.1	10%	5%	
30	일반조사표 표지(전수)	291,800	- 전수조사구 1	10%	5%	
31	일반조사표 표지(표본)	40,900	- 표본조사구 1	10%	5%	
32	일반조사표표지 (외국인, 빈집)	5,300	- 시군구 10 + 추가소요	15%		
33	가구명부 표지	1,200	- 시군구 3 + 추가소요	15%		
34	가구명부간지	13,100	- 읍면동 3	10%	5%	
35	철근	23,100	- 시군구 2, 읍면동 1 - 조사관리자 1	3%	5%	

- 붙임 : 1. 조사용품 배부내역(총괄)
2. 시도·시군구별 조사용품 배부내역
3. 조사표류 배부 산출근거

시트를 볼 때 유의사항

1. 시트에서 음영 표시된 품목(1차 교육용 용품, 8종)은 시도, 시군구로 배부되며, 시군구 수량은 읍면동 수량을 포함하고 있음
 - 그러므로 시군구에서는 배송받은 용품(8종)을 읍면동 배부 시트를 참고하여 배부함
2. 음영이 표시 되지 않은 품목은 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수량이 별도 계산되어 있음 (시군구에서 시군구총배송수량 확인시 시군구 수량 + 읍면동의 계를 해야 함)
 - 음영이 표시되지 않은 품목은 시군구 관할 우체국을 거쳐 바로 시군구 또는 읍면동으로 배송됨
3. 모든 수량 계산은 배부기준에 따른 수량과 예비량이 포함되어 있음
4. 경기 안산시와 경북 포항시의 용품은 소속 일반구에 통계담당이 없으므로 모두 시로 배송될 예정임
5. 동 배부계획의 수량은 총조사 홈페이지 '물품관리'에서 확인 가능함

1. 조사용품 배부내역(총괄)

일련번호	1	2	3	4	5
조사용품	조사표 (전수)	조사표 (표본)	조사표 기입요령 (전수)	조사표 기입요령 (표본)	가구 홍보용 전단
총 계	20,876,900	2,404,550	9,903,600	651,490	18,646,400
시도 계	20,874,900	2,401,350	9,903,400	651,290	18,646,200
서울특별시	4,355,100	456,600	1,937,700	124,310	3,863,700
부산광역시	1,566,600	164,430	744,700	45,160	1,390,300
대구광역시	1,076,300	111,510	519,400	30,970	955,900
인천광역시	1,087,000	115,830	532,300	32,450	967,200
광주광역시	591,600	64,690	328,300	17,310	525,300
대전광역시	623,300	66,970	318,700	17,870	553,000
울산광역시	447,300	45,860	226,300	12,360	395,500
경기도	4,374,700	463,380	2,225,400	125,260	3,875,300
강원도	689,800	92,060	322,200	24,770	624,600
충청북도	657,500	85,190	314,800	22,760	593,400
충청남도	866,400	114,830	386,900	29,860	780,300
전라북도	814,300	119,020	393,000	32,320	746,400
전라남도	881,400	130,840	378,200	36,250	810,200
경상북도	1,223,700	173,710	536,600	45,690	1,111,900
경상남도	1,381,300	169,850	652,200	46,690	1,240,700
제주도	238,600	26,580	86,700	7,260	212,500
통계청 계	2,000	3,200	200	200	200
본 청	2,000	3,200	200	200	200
지방통계청 (사무소)	0	0	0	0	0
출장소	0	0	0	0	0

일련번호	6	7	8	9	10	11	12
조사용품	관리자 수첩	조사 지침서 (전수)	조사 지침서 (표본)	부호집	외국 인조 사표	빈집 조사표	가구 명부
총 계	13,326	96,388	43,488	64,398	409,500	350,150	1,037,452
시도 계	12,031	94,093	41,193	62,103	347,500	348,150	1,037,252
서울특별시	1,688	18,903	7,653	11,703	75,200	70,580	212,578
부산광역시	761	6,993	2,933	4,403	16,600	25,840	77,346
대구광역시	472	4,603	1,913	2,933	12,700	17,350	51,851
인천광역시	470	4,733	1,973	2,993	20,500	17,940	53,821
광주광역시	298	2,433	1,083	1,653	6,000	9,860	29,499
대전광역시	268	2,633	1,103	1,693	7,200	10,190	30,722
울산광역시	202	1,893	793	1,223	5,600	7,160	21,375
경기도	1,788	18,173	7,533	11,653	98,000	70,740	211,968
강원도	657	3,443	1,693	2,473	11,400	12,030	35,422
충청북도	532	3,148	1,478	2,228	9,300	11,420	33,684
충청남도	710	4,263	1,953	2,953	17,600	15,100	44,446
전라북도	836	4,118	2,108	3,048	9,800	14,660	42,727
전라남도	1,010	4,693	2,383	3,453	13,200	15,650	45,640
경상북도	1,142	6,278	3,028	4,438	20,400	21,920	64,357
경상남도	1,045	6,593	3,053	4,513	21,300	23,760	70,024
제주도	152	1,193	513	743	2,700	3,950	11,792
통계청 계	1,295	2,295	2,295	2,295	62,000	2,000	200
본 청	1,000	2,000	2,000	2,000	62,000	2,000	200
지방통계청 (사무소)	120	120	120	120	0	0	0
출장소	175	175	175	175	0	0	0

일련번호	13	14	15	16	17	18
조사용품	연령 조건표 (안전수칙)	조사원 연락전	비밀 보호용 봉투	가구일련 번호표 (스티커)	조사 참여자 답례품	임명장
총 계	109,720	137,912	7,316,800	311,765	111,216	117,196
시도 계	109,520	137,712	7,316,600	311,565	108,921	116,996
서울특별시	21,968	28,333	1,494,000	64,391	21,793	23,383
부산광역시	8,082	10,283	547,170	23,322	8,014	8,624
대구광역시	5,339	6,826	378,300	15,632	5,311	5,691
인천광역시	5,510	7,066	384,890	16,270	5,463	5,873
광주광역시	2,867	3,599	217,660	8,868	2,846	3,056
대전광역시	3,071	3,923	223,310	9,287	3,039	3,269
울산광역시	2,178	2,775	159,080	6,469	2,163	2,333
경기도	21,125	27,064	1,561,860	64,140	21,010	22,585
강원도	3,987	4,831	241,550	10,483	4,005	4,295
충청북도	3,667	4,480	232,030	10,048	3,662	3,942
충청남도	4,965	6,088	298,810	13,219	4,932	5,302
전라북도	4,875	5,842	291,000	12,611	4,869	5,209
전라남도	5,504	6,542	303,730	13,392	5,506	5,936
경상북도	7,357	8,905	422,350	19,021	7,327	7,847
경상남도	7,664	9,448	483,770	20,881	7,620	8,200
제주도	1,361	1,707	77,090	3,531	1,361	1,451
통계청 계	200	200	200	200	2,295	200
본 청	200	200	200	200	2,000	200
지방통계청 (사무소)	0	0	0	0	120	0
출장소	0	0	0	0	175	0

일련번호	19	20	21	22	23	24
조사용품	조사 요원증	조사 요원증 케이스	조사 요원증 목걸이(끈)	조사요 원휘장 (마크)	문구용품	포스 트잇
총 계	70,577	117,566	117,561	117,561	132,429	132,429
시도 계	70,377	117,366	117,361	117,361	131,934	131,934
서울특별시	13,628	23,453	23,453	23,453	26,482	26,482
부산광역시	5,101	8,664	8,664	8,664	9,750	9,750
대구광역시	3,349	5,711	5,711	5,711	6,458	6,458
인천광역시	3,460	5,893	5,893	5,893	6,679	6,679
광주광역시	1,829	3,066	3,066	3,066	3,470	3,470
대전광역시	1,915	3,289	3,289	3,289	3,693	3,693
울산광역시	1,384	2,343	2,343	2,343	2,652	2,652
경기도	13,279	22,645	22,640	22,640	25,606	25,606
강원도	2,712	4,295	4,295	4,295	4,785	4,785
충청북도	2,459	3,952	3,952	3,952	4,413	4,413
충청남도	3,291	5,312	5,312	5,312	5,922	5,922
전라북도	3,293	5,219	5,219	5,219	5,838	5,838
전라남도	3,798	5,946	5,946	5,946	6,567	6,567
경상북도	4,943	7,877	7,877	7,877	8,786	8,786
경상남도	5,054	8,250	8,250	8,250	9,211	9,211
제주도	882	1,451	1,451	1,451	1,622	1,622
통계청 계	200	200	200	200	495	495
본 청	200	200	200	200	200	200
지방통계청 (사무소)	0	0	0	0	120	120
출장소	0	0	0	0	175	175

일련번호	25	26	27	28	29	30
조사용품	조사원 가방	조사표 받침대	조사요원 안전수칙	일반조사표 회수용상자 (전수)	일반조사표 회수용상자 (표본)	일반조사표 표지(전수)
총 계	106,577	109,720	109,720	18,007	8,070	272,990
시도 계	106,377	109,520	109,520	17,807	7,870	272,790
서울특별시	21,364	21,968	21,968	3,439	1,387	56,480
부산광역시	7,848	8,082	8,082	1,305	506	20,864
대구광역시	5,192	5,339	5,339	869	335	14,003
인천광역시	5,354	5,510	5,510	887	329	14,532
광주광역시	2,786	2,867	2,867	494	215	7,762
대전광역시	2,986	3,071	3,071	510	196	8,231
울산광역시	2,119	2,178	2,178	356	132	5,795
경기도	20,540	21,125	21,125	3,424	1,368	56,614
강원도	3,871	3,987	3,987	658	362	9,009
충청북도	3,566	3,667	3,667	622	310	8,641
충청남도	4,800	4,965	4,965	812	419	11,317
전라북도	4,726	4,875	4,875	823	472	10,682
전라남도	5,330	5,504	5,504	916	501	11,406
경상북도	7,126	7,357	7,357	1,208	647	16,135
경상남도	7,447	7,664	7,664	1,281	600	18,216
제주도	1,322	1,361	1,361	203	91	3,103
통계청 계	200	200	200	200	200	200
본 청	200	200	200	200	200	200
지방통계청 (사무소)	0	0	0	0	0	0
출장소	0	0	0	0	0	0

일련번호	31	32	33	34	35
조사용품	일반 조사표 표지(표본)	일반조사표 표지 (외국인,빈집)	가구 명부 표지	가구 명부 간지	철근
총 계	38,891	5,423	971	11,982	12,230
시도 계	38,691	5,223	771	11,782	12,030
서울특별시	7,939	1,087	75	1,718	2,349
부산광역시	2,467	212	48	747	896
대구광역시	1,641	165	24	472	585
인천광역시	1,762	307	30	458	586
광주광역시	1,106	77	15	298	321
대전광역시	1,057	87	15	264	328
울산광역시	689	68	15	191	244
경기도	7,571	1,465	144	1,703	2,269
강원도	1,469	202	54	623	465
충청북도	1,387	155	42	505	409
충청남도	1,876	262	48	691	557
전라북도	1,906	178	48	829	548
전라남도	1,972	238	66	987	636
경상북도	2,848	350	75	1,116	824
경상남도	2,580	328	60	1,037	861
제주도	421	42	12	143	152
통계청 계	200	200	200	200	200
본 청	200	200	200	200	200
지방통계청 (사무소)	0	0	0	0	0
출장소	0	0	0	0	0

2. 시도·시군구별 조사용품 배부내역

(시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시도	조사표 (전수)	조사표 (표본)	조사표 기입오령 (전수)	조사표 기입오령 (표본)	가구 홍보용 전단	관리자 수첩	조사 지침서 (전수)	조사 지침서 (표본)	부호집	외국 인조 시표	빈집 조사표	가구 명부	연령 조표 (안전수칙)	조사 원연 학전	비밀 보통용 봉투	가구일련 번호표 (스티커)	조사 참여자 답례품	인명장	조사 요령 카드	조사 요령중 목걸이 (끈)	조사요 원회장 워킹 (마크)	
서울특별시	174900	18100	0	0	0	3	3	3	3	0	0	0	3	0	0	0	3	3	3	3	3	3
부산광역시	62800	6500	0	0	0	3	3	3	3	0	0	0	3	0	0	0	3	3	3	3	3	3
대구광역시	43200	4500	0	0	0	3	3	3	3	0	0	0	3	0	0	0	3	3	3	3	3	3
인천광역시	43600	4700	0	0	0	3	3	3	3	0	0	0	3	0	0	0	3	3	3	3	3	3
광주광역시	23700	2500	0	0	0	3	3	3	3	0	0	0	3	0	0	0	3	3	3	3	3	3
대전광역시	25000	2600	0	0	0	3	3	3	3	0	0	0	3	0	0	0	3	3	3	3	3	3
울산광역시	17900	1800	0	0	0	3	3	3	3	0	0	0	3	0	0	0	3	3	3	3	3	3
경기도	175400	18200	0	0	0	3	3	3	3	0	0	0	3	0	0	0	3	3	3	3	3	3
강원도	27400	3500	0	0	0	3	3	3	3	0	0	0	3	0	0	0	3	3	3	3	3	3
충청북도	26200	3200	0	0	0	3	3	3	3	0	0	0	3	0	0	0	3	3	3	3	3	3
충청남도	34400	4300	0	0	0	3	3	3	3	0	0	0	3	0	0	0	3	3	3	3	3	3
전라북도	32300	4600	0	0	0	3	3	3	3	0	0	0	3	0	0	0	3	3	3	3	3	3
전라남도	34800	5100	0	0	0	3	3	3	3	0	0	0	3	0	0	0	3	3	3	3	3	3
경상북도	48600	6500	0	0	0	3	3	3	3	0	0	0	3	0	0	0	3	3	3	3	3	3
경상남도	54900	6600	0	0	0	3	3	3	3	0	0	0	3	0	0	0	3	3	3	3	3	3
제주도	9500	1000	0	0	0	3	3	3	3	0	0	0	3	0	0	0	3	3	3	3	3	3
	834600	93700	0	0	0	48	48	48	48	0	0	0	48	0	0	0	48	48	48	48	48	48

(시군구)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시군구	1
조사 참여자 답례률	가구일련 번호표 (스티커)	비밀 보호용 봉투	조사 원연 확진	연령 조건표 (인전수제)	가구 명부	비밀 조사표	외국 인조 시표	부호집	조사 지침서 (표본)	조사 지침서 (전수)	관리자 수첩	기부 홍보용 전단	조사표 기입요령 (표본)	조사표 기입요령 (전수)	조사표 (표본)	조사표 (전수)	시군구	1
40	110	680	60	25	647	210	2,400	250	170	400	62	3,100	60	800	1,700	9,400	종로구	9,400
30	80	570	50	21	490	160	2,500	210	140	310	50	2,500	60	700	2,100	7,400	종로구	7,400
50	140	1,010	70	26	870	290	4,800	320	220	510	65	4,400	90	1,200	1,700	13,200	용산구	13,200
60	190	1,400	90	30	1,154	380	3,000	410	270	650	65	5,900	110	1,900	1,900	17,700	성동구	17,700
70	220	1,480	110	38	1,328	440	2,800	460	300	760	53	6,700	140	1,700	2,700	19,900	광진구	19,900
70	220	1,600	110	36	1,333	440	3,000	480	320	790	53	6,900	140	2,000	2,000	20,800	동대문구	20,800
70	230	1,670	110	34	1,385	460	1,900	480	310	810	65	7,300	140	2,000	1,800	21,800	중랑구	21,800
80	260	1,820	130	42	1,555	510	2,800	570	380	920	95	7,900	160	2,200	2,800	23,700	성북구	23,700
60	180	1,310	90	28	1,105	370	1,500	380	250	660	56	5,800	110	1,500	1,400	17,400	강북구	17,400
50	190	1,510	90	26	1,145	380	1,500	380	250	660	56	6,100	120	2,200	1,600	18,100	도봉구	18,100
80	320	2,710	120	37	1,901	630	2,100	600	380	860	77	9,900	190	4,600	2,800	29,800	노원구	29,800
80	240	1,680	120	35	1,459	480	2,000	510	330	890	65	7,700	150	1,800	2,400	23,000	은평구	23,000
70	210	1,450	100	35	1,249	410	3,700	440	290	730	68	6,400	130	1,700	2,600	19,000	서대문구	19,000
70	220	1,650	110	34	1,348	450	3,100	440	320	720	77	7,200	140	2,000	2,000	21,600	마포구	21,600
70	250	1,900	110	34	1,483	490	2,100	500	320	800	65	7,800	150	2,700	1,800	23,300	양천구	23,300
80	300	2,240	130	41	1,789	590	2,500	600	390	960	71	9,200	190	3,100	2,600	27,600	강서구	27,600
60	220	1,700	100	32	1,348	450	4,600	470	310	750	62	7,100	150	2,300	1,800	21,200	구로구	21,200
50	150	1,100	70	24	911	300	3,700	310	200	530	41	4,800	90	1,300	1,200	14,400	금천구	14,400
70	230	1,720	110	35	1,396	460	5,400	490	320	770	71	7,200	140	2,300	2,200	21,600	영등포구	21,600
80	250	1,670	120	47	1,479	490	2,400	490	310	720	65	7,200	140	2,100	4,000	21,500	동작구	21,500
100	320	2,360	160	47	1,959	650	3,900	670	440	1,150	86	10,500	200	2,700	3,200	31,500	관악구	31,500
60	210	1,660	90	30	1,280	420	3,600	430	280	670	59	6,700	130	2,400	2,000	20,000	서초구	20,000
90	310	2,450	140	44	1,877	620	4,800	630	410	970	83	9,800	190	3,600	3,500	29,500	강남구	29,500
90	320	2,330	150	49	1,940	640	3,100	640	410	1,030	83	9,700	190	3,200	3,400	29,100	송파구	29,100
70	240	1,820	110	37	1,467	490	2,000	500	330	800	68	7,600	150	2,400	2,200	22,800	강동구	22,800
20	40	250	20	11	221	80	500	80	110	300	32	1,200	30	300	500	3,300	부산광역시 강동구	3,300
30	90	580	50	18	509	170	700	210	140	340	50	2,600	50	700	1,000	7,800	서구	7,800
30	70	460	40	16	407	140	700	190	130	290	56	2,100	50	500	800	6,100	부산광역시 동구	6,100
30	90	700	50	18	548	180	800	220	150	330	47	2,900	60	1,000	1,400	8,600	영도구	8,600
70	230	1,770	110	34	1,415	470	1,500	500	330	800	80	7,400	150	2,400	2,400	22,100	부산진구	22,100
40	150	1,120	70	22	895	300	900	320	210	510	47	4,700	90	1,500	1,100	14,100	동래구	14,100
50	170	1,440	80	27	1,018	340	1,200	370	240	590	62	5,400	100	1,700	1,600	16,100	남구	16,100
50	180	1,440	70	23	1,068	350	900	340	220	550	44	5,500	110	2,300	1,200	16,600	북구	16,600
60	220	1,640	90	30	1,357	450	1,700	450	280	680	56	6,400	120	2,500	1,800	19,200	해운대구	19,200
60	200	1,550	90	29	1,212	400	2,000	400	260	640	53	6,200	120	2,200	1,800	18,700	사하구	18,700
50	150	1,080	80	27	923	300	800	340	230	580	59	4,800	90	1,300	1,900	14,200	금정구	14,200
20	30	170	20	10	164	60	1,000	80	60	130	26	900	20	200	400	2,400	강서구	2,400
40	120	900	60	20	734	240	800	260	180	430	44	3,800	70	1,200	1,100	11,400	연제구	11,400
30	100	750	50	18	629	210	800	220	140	360	35	3,200	70	1,000	900	9,500	수영구	9,500
50	150	1,200	70	24	919	300	1,700	320	210	490	47	4,800	90	1,800	1,600	14,300	사상구	14,300
20	30	340	30	11	277	100	600	100	70	170	20	1,400	30	500	600	4,300	기장군	4,300
30	50	360	30	13	307	100	900	150	100	210	44	1,600	40	400	600	4,700	중구	4,700
60	190	1,410	90	29	1,146	380	1,200	410	270	650	65	6,000	120	1,800	1,700	17,900	동구	17,900
50	140	1,000	70	23	864	290	1,600	320	210	540	56	4,600	90	1,100	1,100	13,600	서구	13,600
40	110	780	60	21	694	230	700	260	170	440	44	3,600	70	900	1,100	10,600	남구	10,600
70	250	1,940	110	33	1,481	490	1,900	510	330	780	77	7,800	150	2,900	2,300	23,300	북구	23,300
60	230	1,800	100	31	1,384	460	1,400	480	310	750	74	7,300	150	2,600	1,800	21,700	수성구	21,700
80	310	2,570	130	39	1,878	620	3,600	620	400	950	77	10,100	200	3,900	2,700	30,300	달서구	30,300
30	80	640	40	15	487	170	1,400	180	120	270	32	2,600	60	1,000	900	7,600	대구광역시 달성군	7,600
30	60	400	30	13	340	120	1,400	140	90	210	35	1,700	40	600	900	5,000	대구광역시 중구	5,000
20	50	360	30	12	289	100	600	130	90	190	38	1,500	40	500	400	4,400	대구광역시 인천관역시	4,400
70	250	1,780	120	35	1,499	500	2,400	550	360	880	77	7,700	150	2,200	2,000	23,100	대구광역시 남구	23,100

시도	시군구	임명장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조사 요원중 케이스	조사 요원중 목표(인)	조사 요원중 목표(인)	조사요 원회장 (마크)	문구용품	포스 트잇	조사원 기방	조사표 발행대	조사요원 인건수척	일반조사표 회수용상자 (진수)	일반조사표 회수용상자 (표본)	일반조사표 표지(진수)	일반조사표 표지(표본)	일반조사표 표지 (외국인,비정)	가구 명부 표지	가구 명부 표지	가구 명부 표지	가구 명부 표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495	302	495	80	80	70	70	34	25	25	6	4	90	19	33	9	6	4	
서울특별시	중구	376	236	376	60	60	60	60	28	21	21	5	3	70	13	35	7	5	3	
서울특별시	용산구	630	374	640	100	100	90	90	37	26	26	8	4	120	20	73	11	6	4	
서울특별시	성동구	803	473	813	120	120	120	120	44	30	30	10	4	170	22	43	15	6	4	
서울특별시	광진구	948	544	948	140	140	140	140	54	38	38	11	5	190	32	40	17	5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969	566	969	140	140	140	140	52	36	36	12	6	190	28	43	17	8	5	
서울특별시	종로구	994	573	994	140	140	150	150	51	34	34	12	4	200	25	25	17	6	5	
서울특별시	성북구	1,129	663	1,129	160	160	160	160	61	42	42	14	6	220	34	40	19	9	5	
서울특별시	강북구	804	471	814	120	120	120	120	42	28	28	10	4	160	19	18	15	5	4	
서울특별시	도봉구	742	430	752	110	110	120	120	39	26	26	10	4	170	20	18	15	5	4	
서울특별시	노원구	1,097	642	1,097	150	150	190	190	56	37	37	16	6	280	34	28	23	7	5	
서울특별시	은평구	1,091	626	1,091	150	150	160	160	57	38	38	13	5	210	27	27	19	6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899	531	899	130	130	130	130	50	35	35	11	5	180	26	55	15	6	5	
서울특별시	마포구	965	566	975	140	140	150	150	51	34	34	12	5	200	25	45	17	7	5	
서울특별시	양천구	982	570	992	140	140	160	160	51	34	34	13	5	220	26	28	19	6	5	
서울특별시	강서구	1,189	693	1,189	160	160	190	190	61	41	41	15	6	260	35	35	21	7	5	
서울특별시	구로구	933	534	933	130	130	140	140	48	32	32	12	4	200	25	70	17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647	374	657	100	100	100	100	35	24	24	8	3	130	17	55	13	4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954	559	964	140	140	150	150	51	35	35	12	5	200	28	83	17	7	5	
서울특별시	동작구	981	569	981	150	150	150	150	64	47	47	18	6	290	35	58	23	8	6	
서울특별시	관악구	1,408	813	1,408	190	190	210	210	71	47	47	11	2	40	5	10	5	3	3	
서울특별시	서초구	844	483	844	120	120	140	140	44	30	30	11	5	200	23	53	17	5	4	
서울특별시	강남구	1,214	704	1,214	170	170	190	190	65	44	44	17	6	270	36	73	23	8	6	
서울특별시	송파구	1,282	745	1,282	180	180	200	200	71	49	49	17	7	280	44	45	23	8	6	
서울특별시	강동구	994	584	994	140	140	150	150	54	37	37	13	5	210	30	27	19	6	5	
부산광역시	중구	185	119	185	30	30	30	30	14	11	11	2	2	80	10	10	7	5	3	
부산광역시	서구	404	251	404	60	60	60	60	25	18	18	5	2	80	10	10	7	5	3	
부산광역시	동구	355	219	355	60	60	50	50	22	16	16	6	3	60	9	10	7	5	3	
부산광역시	영도구	403	248	403	60	60	70	70	25	18	18	5	2	80	10	10	7	4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987	573	987	140	140	150	150	51	34	34	13	5	210	25	18	17	8	5	
부산광역시	동래구	635	370	635	90	90	100	100	33	22	22	8	3	130	15	10	11	4	4	
부산광역시	남구	722	423	732	110	110	110	110	39	27	27	9	4	150	17	13	13	6	4	
부산광역시	북구	659	380	659	100	100	110	110	34	23	23	9	3	160	17	10	13	4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853	498	853	120	120	130	130	45	30	30	12	4	200	22	22	17	5	4	
부산광역시	사하구	796	462	806	120	120	130	130	42	29	29	11	4	180	20	27	15	5	4	
부산광역시	금정구	681	403	681	100	100	100	100	39	27	27	8	4	130	18	10	13	5	4	
부산광역시	강서구	154	101	154	30	30	30	30	12	10	10	2	1	30	4	10	3	2	2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519	309	529	80	80	80	80	29	20	20	7	3	110	12	10	11	4	4	
부산광역시	수영구	447	262	447	70	70	70	70	26	18	18	6	2	100	12	10	9	3	3	
부산광역시	사상구	614	361	614	90	90	100	100	34	24	24	8	3	140	16	22	13	4	4	
부산광역시	기장군	207	119	207	40	40	40	40	14	11	11	3	1	50	5	10	5	2	3	
대구광역시	중구	258	165	258	40	40	40	40	17	13	13	4	2	50	6	10	5	4	3	
대구광역시	동구	804	473	814	120	120	120	120	43	29	29	10	10	170	21	13	15	6	4	
대구광역시	서구	659	385	669	100	100	90	90	34	23	23	8	3	130	14	20	11	5	4	
대구광역시	남구	534	315	534	80	80	80	80	30	21	21	6	3	100	12	10	9	4	4	
대구광역시	북구	988	573	988	140	140	160	160	50	33	33	14	5	220	25	25	19	7	5	
대구광역시	수성구	929	539	929	130	130	140	140	47	31	31	13	5	210	23	17	17	7	5	
대구광역시	달서구	1,188	696	1,188	160	160	200	200	59	39	39	16	6	280	32	53	23	7	5	
대구광역시	달성군	328	200	328	50	50	60	60	21	15	15	4	2	70	10	17	7	3	3	
대구광역시	경산시	253	158	253	40	40	40	40	18	13	13	4	2	50	8	17	5	3	3	
대구광역시	경북	236	153	236	40	40	40	40	16	12	12	3	2	50	5	10	5	3	3	
대구광역시	경북	1,086	627	1,086	150	150	160	160	54	35	35	14	5	220	25	33	19	7	5	

시도	시군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조사표 (진수)	조사표 (표본)	조사표 기입요령 (진수)	조사표 기입요령 (표본)	가구 홍보용 전단	관리자 수첩	조사 지침서 (진수)	조사 지침서 (표본)	부호집	외국 인조 시표	빈집 조사표	가구 명부	연령 조건표 (안진수회)	조사 원인 라틴	비밀 보호용 봉투	가구일련 번호표 (스티커)	조사 참여자 답례품
인천광역시	연수구	12,800	1,200	1,800	90	4,300	35	400	170	270	1,000	280	832	20	60	1,120	140	40
인천광역시	남동구	19,000	1,500	2,100	130	6,400	56	680	280	420	5,600	410	1,235	29	90	1,530	200	60
인천광역시	부평구	28,000	2,200	3,200	180	9,300	68	970	390	590	3,000	610	1,826	39	130	2,290	300	80
인천광역시	계양구	16,100	1,400	2,100	100	5,400	38	530	210	330	1,500	350	1,052	25	70	1,360	170	50
인천광역시	서구	18,800	1,400	2,300	120	6,300	44	640	250	390	4,500	400	1,208	27	90	1,550	200	50
인천광역시	강화군	3,200	800	300	40	1,200	44	170	90	130	300	80	230	12	30	250	40	20
인천광역시	옹진군	700	200	100	20	300	26	60	40	60	200	20	60	8	10	60	10	10
광주광역시	동구	6,400	1,400	600	40	2,100	44	280	120	180	700	150	446	19	40	480	80	30
광주광역시	서구	15,700	1,300	2,200	100	5,300	53	500	220	340	900	330	996	23	70	1,370	160	50
광주광역시	남구	11,000	1,300	1,300	70	3,700	53	400	180	270	800	240	724	22	60	900	120	40
광주광역시	북구	23,100	3,100	3,000	150	7,700	83	770	340	520	1,500	500	1,521	38	110	1,970	250	70
광주광역시	광산구	14,900	2,100	2,100	110	5,100	62	480	220	340	2,100	330	992	26	70	1,320	160	50
대전광역시	동구	12,900	1,700	1,300	90	4,400	68	510	220	320	2,000	280	861	25	70	1,020	140	50
대전광역시	중구	13,000	1,100	1,400	90	4,400	56	480	200	310	1,100	280	846	22	60	1,050	140	40
대전광역시	서구	26,300	2,300	3,400	170	8,800	74	860	360	560	1,800	560	1,684	36	120	2,240	280	70
대전광역시	유성구	11,500	3,400	1,400	70	3,800	26	380	150	240	1,200	250	762	27	60	950	130	40
대전광역시	대덕구	11,400	1,200	1,300	80	3,800	41	400	170	260	1,100	240	739	21	60	940	120	40
울산광역시	중구	12,000	1,000	1,200	70	4,000	47	450	180	270	800	250	746	20	60	920	120	40
울산광역시	남구	17,800	1,600	2,100	110	5,900	47	600	240	370	1,600	370	1,113	26	80	1,470	180	50
울산광역시	동구	8,800	1,500	1,100	60	3,000	35	310	130	210	1,200	190	562	19	50	730	100	30
울산광역시	북구	6,600	900	1,000	50	2,200	29	220	100	160	700	140	422	14	30	580	70	30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8,700	1,200	1,100	60	2,900	41	310	140	210	1,300	190	562	18	50	730	100	30
경기도	수원시	-	-	-	-	-	5	5	5	5	-	-	-	5	-	-	-	5
경기도	장안구	14,100	1,800	1,600	100	4,800	35	480	190	300	1,300	300	913	24	70	1,150	150	50
경기도	관산구	14,500	1,100	1,600	90	4,900	38	500	200	310	1,300	300	911	22	70	1,180	150	40
경기도	팔당구	12,000	1,200	1,200	80	4,100	41	450	180	270	1,500	260	792	23	60	950	130	40
경기도	양봉구	12,300	2,300	1,800	80	4,100	32	370	160	250	1,800	260	787	23	60	1,080	130	40
경기도	성남시	-	-	-	-	-	5	5	5	5	-	-	-	5	-	-	-	5
경기도	수정구	14,400	1,200	1,100	100	4,900	53	580	220	340	1,700	300	914	25	80	1,050	150	50
경기도	중원구	13,700	1,200	1,100	90	4,600	35	520	200	300	1,400	290	865	24	70	1,010	140	50
경기도	분당구	19,600	1,500	2,900	130	6,600	62	600	270	410	2,500	410	1,238	27	80	1,760	200	50
경기도	외정부시	19,900	1,500	2,500	120	6,600	50	640	260	400	1,900	410	1,245	28	90	1,670	210	60
경기도	안양시	-	-	-	-	-	5	5	5	5	-	-	-	5	-	-	-	5
경기도	만안구	13,600	1,200	1,400	90	4,500	47	490	200	300	1,500	290	880	24	70	1,080	150	50
경기도	동안구	16,500	1,400	2,300	110	5,500	56	520	230	350	1,500	350	1,064	25	70	1,450	180	50
경기도	부천시	-	-	-	-	-	5	5	5	5	-	-	-	5	-	-	-	5
경기도	원미구	22,200	1,700	2,600	150	7,400	65	750	310	480	2,700	450	1,374	30	100	1,820	230	60
경기도	소사구	11,100	1,000	1,200	70	3,700	35	390	160	240	1,200	230	695	18	50	880	120	40
경기도	오정구	9,400	800	900	70	3,200	26	350	130	210	900	200	590	17	50	710	100	30
경기도	광명시	16,100	1,500	1,900	100	5,400	59	550	230	360	1,400	330	1,006	25	70	1,330	170	50
경기도	평택시	19,400	3,000	2,200	130	6,500	71	680	290	440	4,300	420	1,286	36	100	1,990	210	70
경기도	동두천시	4,700	500	600	30	1,600	26	180	80	120	1,200	100	300	12	30	380	50	20
경기도	안산시	-	-	-	-	-	5	5	5	5	-	-	-	5	-	-	-	5
경기도	상록구	18,700	1,700	1,800	120	6,200	41	670	240	380	1,700	390	1,174	29	90	1,440	190	60
경기도	단원구	17,900	2,000	2,000	110	6,000	41	600	230	370	9,300	380	1,156	31	90	1,440	190	60
경기도	고양시	-	-	-	-	-	5	5	5	5	-	-	-	5	-	-	-	5
경기도	덕양구	19,700	1,800	2,400	130	6,600	62	650	270	420	1,900	410	1,250	30	90	1,640	210	60
경기도	임산동구	10,900	1,000	1,300	70	3,700	35	370	150	240	1,900	230	690	19	50	910	110	40
경기도	일산서구	12,600	1,100	2,000	80	4,300	32	360	160	250	1,500	260	798	19	50	1,150	130	40
경기도	파천시	3,200	400	500	30	1,100	23	120	60	90	300	70	203	10	20	270	40	20
경기도	구리시	9,200	800	1,100	70	3,100	29	310	130	200	800	190	572	17	50	760	100	30
경기도	남양주시	19,500	1,700	2,600	120	6,500	50	630	250	400	2,900	410	1,246	27	90	1,660	210	50

시도	시군구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임명장	조사 요원중 출발(인)	조사 요원중 케이스	조사 요원중 목표(인)	조사 원회장 원회장 (마크)	문구용품	포스 트잇	조사원 가방	조사표 발점대	조사요원 안전수칙	일반조사표 회수용상자 (진수)	일반조사표 회수용상자 (표본)	일반조사표 표지(진수)	일반조사표 표지(표본)	일반조사표 표지(외국인·빈집)	기구 명부 표지	기구 명부 간지	기구 명부 간지	기구 명부 간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506	300	516	80	80	90	90	29	20	20	7	2	120	14	10	11	3	3
인천광역시	남동구	844	483	844	120	120	130	130	43	29	29	11	4	180	22	87	15	5	4
인천광역시	부평구	1,199	697	1,199	160	160	190	190	60	39	39	16	5	270	31	43	23	6	5
인천광역시	계양구	655	377	665	100	100	110	110	36	25	25	9	3	160	19	18	13	3	4
인천광역시	서구	794	460	794	110	110	130	130	40	27	27	11	3	180	19	68	15	5	4
인천광역시	강화군	215	143	215	40	40	30	30	16	12	12	3	2	30	8	10	5	4	3
인천광역시	옹진군	82	59	82	20	20	20	20	9	8	8	1	1	10	3	10	3	2	2
인천광역시	동구	339	205	339	60	60	50	50	25	19	19	4	3	60	13	10	7	4	3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627	367	627	90	90	110	110	34	23	23	9	3	150	17	10	13	5	4
광주광역시	남구	496	303	506	80	80	80	80	30	22	22	7	3	110	14	10	11	5	4
광주광역시	북구	972	580	972	140	140	160	160	55	38	38	14	6	220	32	18	19	8	5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619	371	619	90	90	100	100	36	26	26	9	4	140	21	28	13	6	4
대전광역시	동구	626	373	626	90	90	90	90	36	25	25	8	4	120	18	27	11	6	4
대전광역시	중구	590	355	600	90	90	90	90	33	22	22	8	3	130	15	12	11	5	4
대전광역시	서구	1,076	620	1,076	150	150	170	170	54	36	36	15	5	250	29	23	21	7	5
대전광역시	유성구	481	279	481	80	80	80	80	35	27	27	6	3	110	17	13	11	2	3
대전광역시	대덕구	493	285	503	80	80	80	80	29	21	21	7	3	110	14	12	11	4	3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549	322	549	80	80	80	80	29	20	20	7	3	110	12	10	11	4	4
울산광역시	남구	733	424	743	110	110	120	120	39	26	26	10	3	170	18	20	15	4	4
울산광역시	동구	383	234	383	60	60	70	70	25	19	19	5	2	90	11	13	9	3	3
울산광역시	북구	284	167	284	50	50	50	50	19	14	14	4	2	70	7	10	7	2	3
울산광역시	울주군	381	234	381	60	60	70	70	24	18	18	5	2	80	12	15	9	4	3
경기도	수원시	5	5	5	5	5	5	5	5	5	5	-	-	-	-	10	3	-	2
경기도	장안구	602	349	602	90	90	100	100	35	24	24	8	3	130	19	15	13	3	4
경기도	관산구	619	359	619	90	90	100	100	32	22	22	8	3	140	14	15	13	3	4
경기도	팔당구	560	321	560	80	80	80	80	33	23	23	7	3	110	17	18	11	4	4
경기도	영동구	468	269	478	80	80	80	80	31	23	23	7	3	110	16	23	11	3	3
경기도	성남시	10	10	10	5	5	5	5	5	5	5	-	-	-	-	10	3	-	2
경기도	수정구	707	414	707	100	100	100	100	37	25	25	9	3	130	17	22	13	5	4
경기도	홍원구	634	364	634	90	90	90	90	35	24	24	7	3	130	17	17	11	3	4
경기도	분당구	760	437	760	110	110	130	130	40	27	27	11	4	180	21	35	15	6	4
경기도	외정부시	795	461	795	110	110	130	130	41	28	28	11	4	190	21	25	15	5	4
경기도	안양시	5	5	5	5	5	5	5	5	5	5	-	-	-	-	10	3	-	2
경기도	만안구	605	356	605	90	90	90	90	35	24	24	8	3	130	18	18	11	4	4
경기도	동안구	653	383	663	100	100	110	110	36	25	25	10	4	160	20	18	13	5	4
경기도	부천시	5	5	5	5	5	5	5	5	5	5	-	-	-	-	10	3	-	2
경기도	원미구	931	538	931	130	130	150	150	46	30	30	12	4	210	22	38	17	6	5
경기도	소사구	482	280	482	70	70	80	80	27	18	18	6	2	100	12	13	9	3	3
경기도	오정구	436	251	436	70	70	70	70	24	17	17	5	2	90	10	10	9	2	3
경기도	광명시	689	406	689	100	100	110	110	36	25	25	9	4	150	17	17	13	5	4
경기도	평택시	850	502	860	130	130	130	130	51	36	36	11	6	180	30	65	17	7	4
경기도	동두천시	219	138	219	40	40	40	40	16	12	12	3	1	50	6	13	5	2	3
경기도	안산시	5	5	5	5	5	5	5	5	5	5	-	-	-	-	10	3	-	2
경기도	상록구	813	468	823	120	120	130	130	43	29	29	10	3	180	19	22	15	4	4
경기도	단원구	749	435	749	110	110	120	120	44	31	31	9	4	170	26	148	15	4	4
경기도	고양시	5	5	5	5	5	5	5	5	5	5	-	-	-	-	10	3	-	2
경기도	덕양구	807	474	817	120	120	130	130	44	30	30	11	5	180	24	25	15	6	4
경기도	임산동구	463	270	463	70	70	80	80	27	19	19	6	2	100	12	18	9	3	3
경기도	임산서구	464	268	464	70	70	80	80	27	19	19	6	2	120	14	25	11	3	3
경기도	파천시	151	98	151	30	30	30	30	12	10	10	2	1	30	4	10	5	2	2
경기도	구리시	384	223	384	60	60	70	70	23	17	17	5	2	90	10	10	9	2	3
경기도	남양주시	780	455	780	110	110	130	130	41	27	27	11	4	190	21	42	17	5	4

시도	시군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조사표 (진수)	조사표 (표본)	조사표 기입요령 (진수)	조사표 기입요령 (표본)	가구 총보용 전단	관리자 수집	조사 지침서 (진수)	조사 지침서 (표본)	부호집	외국 인조 시표	빈집 조사표	가구 명부	연령 조건표 (안진수치)	조사 원연 락진	비밀 보호용 용부	기구일련 번호표 (스티커)	조사 참여자 담배풀
경기도	오산시	6,500	1,000	900	50	2,200	23	210	90	140	900	140	413	15	30	550	70	30
경기도	시흥시	19,200	1,600	2,500	120	6,400	47	610	250	390	6,500	400	1,198	28	80	1,630	200	50
경기도	군포시	13,100	1,200	1,800	90	4,400	38	410	170	270	2,200	280	838	21	60	1,140	140	40
경기도	의왕시	7,000	1,000	900	50	2,400	23	230	90	150	800	150	432	14	40	590	80	30
경기도	하남시	5,900	700	700	50	2,000	35	230	100	150	1,100	130	373	13	30	480	70	30
경기도	용인시	33,900	7,000	4,700	200	11,200	65	1,020	400	650	5,300	720	2,158	56	150	2,940	360	100
경기도	파주시	12,300	1,300	1,400	80	4,100	44	430	180	270	3,500	260	796	22	60	1,010	130	40
경기도	이천시	9,300	2,800	1,100	70	3,100	47	360	160	240	1,300	210	631	25	50	750	100	40
경기도	안성시	8,600	2,000	1,000	70	2,900	50	340	160	230	1,700	200	590	22	50	700	100	40
경기도	김포시	9,700	1,000	1,200	70	3,300	35	340	160	220	4,400	210	630	18	50	820	100	40
경기도	화성시	15,200	2,300	1,700	100	5,100	50	530	220	340	7,900	330	992	29	80	1,230	160	50
경기도	광주시	10,200	1,200	1,100	70	3,500	35	360	150	230	3,700	210	649	20	50	820	110	40
경기도	양주시	7,800	900	1,000	60	2,600	38	290	130	200	3,800	170	509	16	40	640	90	30
경기도	포천시	8,000	1,100	800	60	2,700	47	330	140	210	4,300	180	530	18	50	610	90	30
경기도	여주군	5,200	1,300	500	50	1,800	35	220	100	160	800	120	366	16	40	410	60	30
경기도	연천군	2,400	400	200	30	900	35	130	70	100	500	60	173	11	20	190	30	20
경기도	가평군	2,800	800	300	20	1,000	23	130	60	90	400	70	191	12	20	210	40	20
경기도	양평군	4,400	900	400	40	1,500	41	210	100	150	500	110	310	14	30	330	60	30
강원도	춘천시	13,900	2,500	1,600	110	4,700	80	520	240	360	1,600	300	916	29	70	1,140	150	50
강원도	원주시	15,500	2,400	1,900	110	5,200	80	550	250	380	1,300	340	1,031	29	80	1,310	170	50
강원도	강릉시	12,600	2,100	1,400	90	4,300	68	470	210	320	1,200	270	833	26	70	1,020	140	50
강원도	동해시	5,400	700	700	40	1,800	35	210	100	150	500	120	366	14	30	450	60	30
강원도	태백시	3,300	400	400	30	1,100	29	140	70	100	200	80	217	10	20	270	40	20
강원도	속초시	5,000	600	700	40	1,700	29	190	90	130	400	110	328	12	30	430	60	20
강원도	삼척시	4,400	600	500	40	1,500	41	200	100	140	700	100	288	12	30	350	50	20
강원도	홍천군	3,700	600	400	40	1,300	35	170	80	120	1,200	80	247	11	30	290	40	20
강원도	횡성군	2,100	500	200	30	800	32	110	70	90	300	50	150	9	20	170	30	20
강원도	영월군	2,100	400	200	30	800	32	110	70	100	800	50	152	10	20	170	30	20
강원도	평창군	2,300	500	200	30	800	29	120	60	90	200	60	160	10	20	180	30	20
강원도	정선군	2,400	800	300	30	900	32	130	70	100	800	60	178	11	20	200	30	20
강원도	철원군	2,500	400	300	20	900	26	120	60	90	300	60	162	10	20	190	30	20
강원도	화천군	1,200	200	200	20	500	20	70	40	50	100	30	86	8	10	100	20	10
강원도	양구군	1,100	200	100	20	400	20	60	40	50	700	30	76	8	10	90	20	10
강원도	인제군	1,800	300	200	20	700	23	90	50	70	700	40	124	9	20	140	20	20
강원도	고성군	1,900	400	200	20	700	20	90	40	60	200	40	124	9	20	140	20	20
강원도	강양군	1,600	500	200	20	600	23	90	50	70	200	40	120	10	20	130	20	20
충청북도	청주시	-	-	-	-	-	5	5	5	5	-	-	-	5	-	-	-	5
충청북도	상주시	13,300	1,500	1,600	80	4,400	44	450	190	290	900	280	853	22	60	1,110	140	40
충청북도	홍덕구	20,500	2,800	2,500	130	6,800	53	670	270	430	1,500	430	1,308	33	90	1,710	220	60
충청북도	충주시	11,300	1,800	1,300	90	3,900	80	450	220	310	1,000	250	763	23	60	930	130	40
충청북도	제천시	7,200	1,300	900	60	2,500	56	290	140	210	600	160	489	17	40	600	80	30
충청북도	청원군	6,300	1,500	700	50	2,200	47	260	120	190	1,000	140	424	18	40	500	70	30
충청북도	보은군	1,700	400	200	30	700	38	120	70	100	300	50	148	10	20	140	30	20
충청북도	영동군	2,900	600	300	30	1,100	32	140	70	110	500	70	206	11	20	230	40	20
충청북도	영결군	2,900	400	300	30	1,100	38	150	80	120	300	70	201	11	20	230	40	20
충청북도	진천군	3,200	400	400	30	1,100	26	140	70	100	1,000	70	214	10	20	260	40	20
충청북도	괴산군	1,900	400	200	30	800	38	120	70	100	300	50	152	10	20	150	30	20
충청북도	음성군	4,300	1,400	500	40	1,500	32	180	80	130	1,400	100	307	16	30	340	50	30
충청북도	단양군	1,700	400	200	30	700	29	100	60	80	300	50	130	10	20	140	30	20
충청북도	증평군	1,700	300	200	20	600	11	70	30	50	200	40	109	8	10	140	20	10
충청남도	천안시	26,800	3,900	3,400	170	8,900	83	890	370	580	4,000	580	1,749	44	130	2,250	290	80
충청남도	공주시	6,800	1,900	700	60	2,300	56	300	140	210	800	160	471	20	50	530	80	30

시도	시군구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임명장	조사 요원중 케이스	조사 요원중 목원(인)	조사요 원취장 (마크)	문구용품	포스 트잇	조사원 기방	조사표 발침대	조사요원 안전수칙	일반조사표 회수용상자 (진수)	일반조사표 회수용상자 (표본)	일반조사표 표지(진수)	일반 조사표 표지(표본)	일반 조사표 표지(외국인,비진)	가구 명부 표지	가구 명부 표지	가구 명부 간지	가구 명부 간지	가구 명부 간지
경기도	오산시	269	158	269	50	50	50	50	19	15	15	4	2	60	8	10	7	2	3
경기도	시흥시	763	434	763	110	110	130	130	41	28	28	11	4	180	22	102	15	4	4
경기도	군포시	510	304	520	80	80	90	90	30	21	21	7	3	120	17	30	11	3	3
경기도	의왕시	285	165	285	50	50	60	60	19	14	14	4	2	70	8	10	7	2	3
경기도	하남시	284	168	284	50	50	50	50	18	13	13	4	2	60	7	12	7	3	3
경기도	용인시	1,281	743	1,281	190	190	220	220	78	56	56	18	6	320	42	82	25	6	5
경기도	파주시	533	312	533	80	80	90	90	31	22	22	7	3	120	16	52	11	4	4
경기도	이천시	444	274	444	70	70	70	70	33	25	25	6	3	90	17	15	9	4	3
경기도	안성시	423	253	423	70	70	70	70	29	22	22	6	3	90	16	22	9	5	3
경기도	김포시	412	248	412	60	60	70	70	25	18	18	6	2	100	12	67	9	3	3
경기도	화성시	664	391	664	100	100	100	100	40	29	29	6	4	140	21	125	13	5	4
경기도	광주시	455	264	455	70	70	70	70	27	20	20	6	3	100	13	55	9	3	3
경기도	양주시	362	214	362	60	60	60	60	22	16	16	5	2	80	10	57	7	3	3
경기도	포천시	400	246	400	60	60	60	60	25	18	18	5	3	80	12	65	7	4	3
경기도	여주군	281	178	281	50	50	50	50	21	16	16	4	2	50	11	10	5	3	3
경기도	연천군	159	108	159	30	30	30	30	13	11	11	2	2	30	5	10	3	2	2
경기도	가평군	156	100	156	30	30	30	30	14	12	12	2	2	30	6	10	5	2	2
경기도	양평군	255	162	255	40	40	40	40	19	14	14	3	2	50	10	10	5	4	3
강원도	강릉시	658	398	658	100	100	100	100	41	29	29	9	5	130	22	20	13	8	4
강원도	원주시	694	418	694	100	100	110	110	41	29	29	10	5	150	23	15	13	8	4
강원도	강릉시	590	355	590	90	90	90	90	36	26	26	8	4	120	19	13	11	6	4
강원도	동해시	258	162	258	40	40	40	40	18	14	14	4	2	60	7	10	5	3	3
강원도	강릉시	170	110	170	30	30	30	30	13	10	10	2	1	40	5	10	5	2	3
강원도	속초시	232	146	232	40	40	40	40	16	12	12	3	2	50	7	10	5	2	3
강원도	삼척시	240	154	240	40	40	40	40	16	12	12	3	2	50	7	10	5	2	3
강원도	홍천군	214	140	214	40	40	40	40	15	11	11	3	2	40	6	10	5	4	3
강원도	횡성군	145	99	145	30	30	20	20	12	9	9	2	2	20	5	10	3	2	2
강원도	영월군	147	99	147	30	30	20	20	12	9	9	2	2	20	5	10	3	2	2
강원도	평창군	149	99	149	30	30	30	30	12	10	10	2	1	20	4	10	3	2	2
강원도	정선군	157	104	157	30	30	30	30	13	11	11	2	2	30	5	10	3	2	2
강원도	철원군	151	100	151	30	30	30	30	12	10	10	2	1	30	3	10	3	2	2
강원도	화천군	84	58	84	20	20	20	20	9	8	8	1	1	20	3	10	3	2	2
강원도	양구군	80	56	80	20	20	20	20	9	8	8	1	1	20	3	10	3	2	2
강원도	인제군	110	72	110	20	20	20	20	11	9	9	1	1	20	2	10	3	2	2
강원도	고성군	109	70	109	20	20	20	20	10	9	9	1	1	20	3	10	3	2	2
강원도	양양군	104	69	104	20	20	20	20	11	10	10	1	1	20	4	10	3	2	2
충청북도	청주시	5	5	5	5	5	5	5	5	5	5	-	-	-	-	10	3	-	2
충청북도	상당구	556	326	556	80	80	90	90	32	22	22	8	3	130	16	10	11	4	4
충청북도	충덕구	838	490	838	120	120	140	140	47	33	33	11	4	190	24	18	17	5	4
충청북도	충주시	569	350	569	90	90	80	80	33	23	23	8	5	110	18	10	11	8	4
충청북도	제천시	368	235	368	60	60	60	60	23	17	17	5	3	70	12	10	7	5	3
충청북도	청원군	331	202	331	60	60	50	50	24	18	18	5	3	60	11	10	7	4	3
충청북도	보은군	153	106	153	30	30	20	20	12	10	10	2	2	20	5	10	3	2	2
충청북도	옥천군	178	114	178	30	30	30	30	14	11	11	2	1	30	6	10	5	3	2
충청북도	영동군	186	121	186	30	30	30	30	14	11	11	3	1	30	5	10	5	3	2
충청북도	진천군	170	109	170	30	30	30	30	13	10	10	2	1	40	4	10	5	2	2
충청북도	괴산군	158	109	158	30	30	20	20	12	10	10	2	2	20	5	10	3	3	2
충청북도	음성군	225	144	225	40	40	40	40	19	16	16	3	2	50	9	17	5	3	3
충청북도	충청북도 단양군	128	90	128	30	30	20	20	12	10	10	2	1	20	5	10	3	2	2
충청북도	증평군	84	55	84	20	20	20	20	9	8	8	1	-	20	2	10	3	1	2
충청북도	충청북도 진천시	1,117	650	1,117	160	160	180	180	63	44	44	15	6	260	34	60	21	8	5
충청남도	공주시	370	235	370	60	60	60	60	27	20	20	5	3	70	14	10	7	5	3

시도	시군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조사표 (전수)	조사표 (표본)	조사표 기밀요령 (전수)	조사표 기밀요령 (표본)	기구 홍보용 전단	관리자 수첩	조사 지침서 (전수)	조사 지침서 (표본)	부호집	외국 인조 시표	빈집 조사표	가구 명부	연령 조진표 (인전수척)	조사 원인 락진	비밀 보호용 봉투	가구일련 번호표 (스티커)	조사 참여자 답례품
충청남도	보령시	5,400	800	600	50	1,900	53	250	120	180	500	120	365	15	40	430	60	30
충청남도	아산시	10,900	4,600	1,300	80	3,700	56	400	180	280	2,400	250	756	32	60	910	120	50
충청남도	서산시	8,100	900	900	60	2,700	50	330	140	210	700	180	526	17	50	640	90	30
충청남도	논산시	7,200	1,600	700	60	2,500	50	310	140	210	1,600	170	493	19	50	550	90	30
충청남도	계룡시	1,600	200	300	20	600	14	60	30	50	100	40	97	7	10	140	20	10
충청남도	금산군	3,300	700	300	40	1,200	35	160	80	120	500	80	229	12	30	280	40	20
충청남도	연기군	4,800	1,300	500	40	1,600	29	190	80	130	1,100	110	319	15	30	370	60	30
충청남도	부여군	4,300	900	400	60	1,600	53	220	120	170	1,000	100	305	14	30	340	50	30
충청남도	서천군	3,600	500	300	40	1,300	44	190	100	140	400	90	255	12	30	280	50	20
충청남도	청양군	1,900	400	200	30	700	35	110	70	90	400	50	137	9	20	150	30	20
충청남도	홍성군	4,900	800	500	50	1,700	38	220	100	150	500	110	325	14	30	380	60	30
충청남도	예산군	4,700	700	400	50	1,600	41	210	100	150	800	110	320	14	30	360	60	30
충청남도	충청남도	3,500	500	300	30	1,200	29	160	70	110	2,000	80	233	11	20	270	40	20
충청남도	태안군	6,200	700	600	50	2,100	41	260	110	170	800	140	406	15	40	480	70	30
전라북도	전주시	-	-	-	-	-	5	5	5	5	-	-	-	5	-	-	-	5
전라북도	완산구	16,800	2,400	2,300	120	5,700	74	570	250	390	1,100	370	1,109	29	80	1,460	180	50
전라북도	덕진구	13,900	1,600	1,700	90	4,700	56	490	210	320	1,000	290	893	24	70	1,160	150	50
전라북도	고산시	13,700	2,500	1,700	110	4,700	95	530	260	380	1,300	300	928	28	70	1,170	150	50
전라북도	익산시	17,400	2,700	2,100	130	5,900	92	640	300	440	1,700	380	1,162	32	90	1,460	190	60
전라북도	정읍시	7,000	1,100	700	70	2,500	74	330	170	240	800	170	500	18	50	570	90	30
전라북도	남원시	4,700	1,100	500	70	1,700	74	250	150	210	500	120	350	15	40	400	60	30
전라북도	김제시	5,400	1,000	500	60	1,900	62	260	140	200	700	130	387	15	40	430	70	30
전라북도	완주군	4,200	1,200	400	40	1,500	44	200	100	150	800	100	305	15	30	330	50	30
전라북도	진안군	1,400	400	100	30	600	38	100	70	80	200	40	111	9	20	120	20	20
전라북도	무주군	1,500	300	100	20	600	23	80	50	70	200	30	103	8	10	110	20	20
전라북도	장수군	1,200	400	100	20	500	26	80	50	70	200	30	93	8	10	100	20	20
전라북도	임실군	1,500	400	100	40	600	41	110	80	100	300	40	125	9	20	130	20	20
전라북도	순창군	1,500	400	100	30	600	38	110	70	100	200	40	122	9	20	130	20	20
전라북도	고창군	3,500	800	300	50	1,300	47	190	100	140	400	90	257	14	30	270	50	30
전라북도	부안군	3,500	500	300	40	1,300	44	180	100	140	400	90	252	12	30	280	50	20
전라북도	목포시	13,600	1,700	1,600	100	4,600	83	510	230	340	1,400	290	887	24	70	1,130	150	50
전라북도	여주시	14,800	1,400	1,700	100	5,000	86	550	250	370	1,600	310	954	25	70	1,220	160	50
전라북도	순천시	14,000	1,800	1,700	100	4,800	77	520	240	360	1,100	310	930	26	70	1,180	150	50
전라북도	나주시	5,500	1,300	500	60	1,900	62	270	130	190	800	130	387	17	40	430	70	30
전라북도	광양시	6,800	1,000	900	60	2,400	41	250	120	180	600	150	452	15	40	600	80	30
전라북도	담양군	2,400	800	200	40	900	41	140	80	110	1,000	60	179	11	20	190	30	20
전라북도	곡성군	1,700	500	200	30	700	38	110	70	100	300	50	135	10	20	140	30	20
전라북도	구례군	1,500	300	200	30	600	29	90	60	80	200	40	106	9	20	120	20	20
전라북도	고흥군	5,000	600	400	50	1,800	53	250	120	180	400	110	334	14	40	370	60	30
전라북도	보성군	3,100	500	300	40	1,100	41	160	90	120	300	70	212	11	20	240	40	20
전라북도	회성군	3,900	700	500	50	1,400	44	180	100	140	900	90	272	12	30	330	50	20
전라북도	장흥군	2,600	400	200	30	1,000	35	140	70	110	300	60	185	10	20	200	30	20
전라북도	강진군	2,400	500	200	40	900	38	130	80	110	200	60	169	10	20	190	30	20
전라북도	해남군	4,600	800	400	50	1,600	47	220	110	160	400	110	312	14	30	350	60	30
전라북도	영암군	3,400	800	400	40	1,200	38	160	80	120	900	80	233	12	30	270	40	20
전라북도	무안군	3,400	1,000	300	30	1,200	32	160	80	120	400	80	230	13	30	250	40	20
전라북도	함평군	2,300	500	200	30	800	32	120	70	90	300	60	163	11	20	170	30	20
전라북도	영광군	3,500	600	300	40	1,200	38	160	90	120	300	80	232	11	20	270	40	20
전라북도	정성군	2,500	700	200	30	900	38	130	80	110	1,000	60	181	11	20	200	30	20
전라북도	완도군	3,400	500	300	40	1,200	41	170	90	130	400	80	228	11	30	260	40	20
전라북도	진도군	2,200	300	200	20	800	26	110	50	80	200	50	148	9	20	160	30	20
전라북도	신안군	2,600	500	200	40	1,000	47	160	90	130	200	70	191	11	20	210	30	20

시도	시군구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입법청장	조사 요원총 케이스	조사 요원총 목걸이(만)	조사요 원회장 마크)	문구용품	포스 트잇	조사원 가방	조사표 발행대	조사요원 안전수칙	일반조사표 회수용상자 (진수)	일반조사표 회수용상자 (표본)	일반조사표 표지(진수)	일반 조사표 표지(표본)	일반조사표 표지(표본) (외국인·비접)	기부 명부 표지	기부 명부 표지	기부 명부 간지	기부 명부 간지	기부 명부 간지
충청남도	보령시	306	198	306	50	50	50	50	20	15	15	4	3	60	8	10	5	5	3
충청남도	아산시	504	313	514	90	90	80	80	40	32	32	7	4	100	22	33	11	5	4
충청남도	서산시	396	246	396	60	60	60	60	24	17	17	5	3	80	10	10	7	5	3
충청남도	논산시	385	240	385	60	60	60	60	25	19	19	5	3	70	12	20	7	5	3
충청남도	계룡시	74	51	74	20	20	20	20	8	7	7	1	-	20	2	10	3	1	2
충청남도	금산군	203	122	203	40	40	30	30	15	12	12	3	2	30	7	10	5	3	3
충청남도	영기군	236	147	236	40	40	40	40	19	15	15	3	2	50	8	12	5	2	3
충청남도	부여군	284	186	284	50	50	40	40	19	14	14	4	2	40	9	10	5	5	3
충청남도	서천군	237	154	237	40	40	40	40	16	12	12	3	2	40	7	10	5	4	3
충청남도	청양군	145	100	145	30	30	20	20	12	9	9	2	1	20	5	10	3	3	2
충청남도	홍성군	275	165	275	50	50	40	40	18	14	14	3	2	50	7	10	5	3	3
충청남도	예산군	261	164	261	40	40	40	40	18	14	14	4	2	50	8	10	5	4	3
충청남도	태안군	191	120	191	30	30	30	30	14	11	11	3	1	40	5	27	5	2	3
충청남도	당진군	315	197	315	50	50	50	50	20	15	15	4	2	60	9	10	7	4	3
전라북도	전주시	5	5	5	5	5	5	5	5	5	5	-	-	-	-	10	3	-	2
전라북도	완산구	711	435	721	110	110	120	120	42	29	29	11	5	160	23	12	15	7	4
전라북도	덕진구	602	357	602	90	90	100	100	35	24	24	8	4	130	17	10	11	5	4
전라북도	군산시	669	414	669	100	100	100	100	39	28	28	10	5	130	22	15	13	9	4
전라북도	익산시	816	494	816	120	120	120	120	46	32	32	11	6	170	26	22	15	9	4
전라북도	정읍시	411	262	411	60	60	60	60	25	18	18	6	4	70	13	10	7	7	3
전라북도	남원시	323	215	323	50	50	40	40	21	15	15	5	3	50	12	10	5	7	3
전라북도	김제시	330	211	330	50	50	50	50	21	15	15	5	3	60	10	10	7	6	3
전라북도	완주군	246	158	246	40	40	40	40	19	15	15	3	2	40	10	10	5	4	3
전라북도	진안군	135	96	135	30	30	20	20	11	9	9	2	2	20	5	10	3	2	2
전라북도	무주군	103	68	103	20	20	20	20	10	8	8	1	1	20	4	10	3	2	2
전라북도	장수군	99	68	99	20	20	20	20	10	8	8	1	1	20	4	10	3	2	2
전라북도	임실군	146	102	146	30	30	20	20	12	9	9	2	2	20	5	10	3	2	2
전라북도	순창군	142	100	142	30	30	20	20	12	9	9	2	1	20	5	10	3	2	2
전라북도	고창군	236	154	236	40	40	40	40	18	14	14	3	2	40	9	10	5	4	3
전라북도	부안군	232	151	232	40	40	40	40	16	12	12	3	2	40	7	10	5	4	3
전라북도	목포시	634	384	634	90	90	100	100	35	24	24	9	4	130	17	17	11	8	4
전라북도	여주시	688	417	688	100	100	100	100	36	25	25	10	4	140	18	20	13	8	4
전라북도	순천시	649	399	649	100	100	100	100	37	26	26	9	4	130	19	12	13	7	4
전라북도	나주시	337	212	337	60	60	50	50	23	17	17	5	3	60	11	10	7	6	3
전라북도	광양시	315	198	315	50	50	60	60	20	15	15	4	2	70	10	10	7	4	3
전라북도	담양군	174	117	174	30	30	30	30	14	11	11	2	2	30	7	10	3	4	2
전라북도	무성군	147	103	147	30	30	20	20	12	10	10	2	2	20	5	10	3	2	2
전라북도	구례군	111	75	111	20	20	20	20	11	9	9	2	1	20	4	10	3	2	2
전라북도	고흥군	311	200	311	50	50	40	40	19	14	14	4	2	50	8	10	5	5	3
전라북도	보성군	208	139	208	40	40	30	30	14	11	11	3	2	30	6	10	5	4	3
전라북도	해운군	228	149	228	40	40	40	40	15	12	12	3	2	40	8	10	5	4	3
전라북도	진흥군	173	115	173	30	30	30	30	13	10	10	2	1	30	5	10	3	3	2
전라북도	강진군	169	113	169	30	30	30	30	13	10	10	2	1	30	5	10	3	2	2
전라북도	해남군	282	173	282	50	50	40	40	19	14	14	4	2	50	8	10	5	4	3
전라북도	영암군	204	135	204	40	40	30	30	15	12	12	3	2	40	7	10	5	3	3
전라북도	무안군	205	133	205	40	40	30	30	16	13	13	3	2	40	6	10	5	3	3
전라북도	함평군	154	102	154	30	30	30	30	13	11	11	2	1	30	5	10	3	2	2
전라북도	영광군	208	138	208	40	40	30	30	14	11	11	3	2	40	7	10	5	3	3
전라북도	영顺군	168	113	168	30	30	30	30	14	11	11	3	2	40	6	10	3	3	2
전라북도	장성군	219	145	219	40	40	30	30	15	11	11	2	2	40	6	10	5	4	3
전라북도	완도군	142	94	142	30	30	20	20	12	9	9	2	1	30	4	10	3	2	2
전라북도	진도군	207	141	207	40	40	30	30	14	11	11	3	2	30	6	10	5	4	3

시도	시군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조사표 (전수)	조사표 (표본)	조사표 기밀요령 (전수)	조사표 기밀요령 (표본)	가구 총모용 진단	판리자 수협	조사 지침서 (전수)	조사 지침서 (표본)	부호집	외국 인조 시표	빈집 조사표	가구 명부	연령 조표 (인전수치)	조사 원인 확인	비밀 보호용 봉투	가구일련 번호표 (스티커)	조사 참여자 답례물
경상북도	포항시	-	-	-	-	-	5	5	5	5	-	-	-	5	-	-	-	5
경상북도	남구	13,500	1,600	1,400	90	4,500	53	490	200	310	1,100	290	871	24	70	1,080	140	40
경상북도	북구	12,800	2,000	1,600	90	4,300	56	450	200	300	1,000	280	838	24	60	1,080	140	40
경상북도	경주시	15,000	2,500	1,500	110	5,100	80	600	280	390	1,700	330	997	30	80	1,180	160	60
경상북도	김천시	7,000	1,400	700	70	2,400	71	350	180	250	1,600	180	547	20	50	560	90	40
경상북도	안동시	9,800	2,400	1,000	80	3,400	77	410	200	300	800	220	679	25	60	790	110	40
경상북도	구미시	19,400	5,300	2,300	140	6,600	86	680	300	470	2,500	440	1,333	44	110	1,620	220	70
경상북도	영주시	6,400	1,500	700	60	2,200	62	290	150	220	600	150	441	18	40	510	80	30
경상북도	영천시	6,100	1,100	600	60	2,100	53	270	130	190	1,000	140	410	15	40	490	70	30
경상북도	상주시	6,000	1,200	600	70	2,200	77	310	170	230	700	140	430	17	40	480	70	30
경상북도	문경시	4,400	800	400	40	1,500	47	220	110	150	400	100	305	14	30	330	50	30
경상북도	경산시	14,000	3,300	1,600	90	4,700	50	500	210	330	2,500	310	934	30	70	1,140	150	50
경상북도	군위군	1,500	300	100	30	600	29	100	60	80	300	40	116	9	20	120	20	20
경상북도	의성군	3,700	700	300	50	1,400	59	210	120	170	600	90	278	13	30	290	50	30
경상북도	칠송면	1,700	300	200	30	700	29	100	60	80	200	40	125	9	20	140	20	20
경상북도	영양군	1,100	300	100	20	400	23	70	40	60	100	30	80	8	10	90	20	20
경상북도	영덕군	2,800	400	200	30	1,000	32	150	70	100	300	70	191	10	20	210	40	20
경상북도	청도군	2,500	600	200	30	900	32	140	70	100	400	60	180	11	20	190	30	20
경상북도	고령군	1,800	400	200	30	700	29	100	60	80	500	50	131	9	20	140	30	20
경상북도	상주군	2,400	500	200	30	900	35	130	70	100	500	60	173	11	20	180	30	20
경상북도	칠곡군	5,900	1,500	700	50	2,000	29	220	100	150	2,600	140	404	17	40	480	70	30
경상북도	예천군	2,800	500	200	40	1,000	41	150	90	120	300	70	199	11	20	220	40	20
경상북도	봉화군	2,100	400	200	30	800	35	120	70	100	200	50	153	10	20	170	30	20
경상북도	울진군	3,400	500	300	40	1,200	35	170	80	120	400	80	235	11	30	260	40	20
경상북도	울릉군	600	100	100	10	200	14	40	20	30	100	20	37	6	10	40	10	10
경상남도	창원시	25,700	3,200	3,100	160	8,500	50	820	320	510	2,800	540	1,621	38	120	2,130	270	70
경상남도	마산시	22,500	2,400	2,400	150	7,500	101	840	360	530	1,800	480	1,455	36	110	1,790	240	70
경상남도	진주시	17,700	2,600	1,800	140	6,000	116	710	330	480	1,400	390	1,179	33	90	1,420	190	60
경상남도	진해시	8,100	700	900	60	2,700	50	310	140	210	1,200	170	515	16	40	650	90	30
경상남도	통영시	7,000	700	800	50	2,400	59	300	140	210	700	160	468	15	40	560	80	30
경상남도	사천시	6,100	900	700	50	2,100	47	260	120	180	900	140	403	15	40	490	70	30
경상남도	김해시	22,100	2,000	2,800	130	7,300	56	730	290	450	3,900	470	1,416	31	100	1,850	230	60
경상남도	밀양시	6,400	1,000	600	50	2,200	53	290	130	200	800	150	436	17	40	490	80	30
경상남도	거제시	10,100	2,000	1,200	70	3,400	53	380	170	260	2,000	230	698	23	50	840	120	40
경상남도	양산시	11,400	1,600	1,600	70	3,800	32	370	150	240	1,400	250	760	22	50	990	130	40
경상남도	의령군	1,600	500	200	40	700	44	120	80	110	300	50	137	10	20	140	30	20
경상남도	함안군	3,400	400	400	30	1,200	35	160	80	110	600	80	233	11	20	270	40	20
경상남도	창녕군	3,700	800	300	50	1,400	47	190	100	150	400	90	269	13	30	290	50	30
경상남도	고성군	2,900	600	300	50	1,100	47	170	100	140	400	80	224	11	30	240	40	20
경상남도	남해군	3,000	500	300	30	1,100	35	160	80	110	1,200	70	212	11	20	230	40	20
경상남도	하동군	2,800	400	300	40	1,100	44	160	90	120	300	70	199	11	20	220	40	20
경상남도	산청군	2,100	400	200	30	800	38	130	80	100	200	50	157	10	20	170	30	20
경상남도	함양군	2,300	500	200	40	900	41	130	80	110	300	60	174	10	20	180	30	20
경상남도	거창군	3,500	700	300	40	1,300	38	180	100	140	300	90	255	12	30	280	50	20
경상남도	합천군	3,000	700	300	50	1,200	56	180	110	150	400	80	223	13	30	240	40	20
제주도	제주시	16,200	1,700	1,500	100	5,400	62	620	250	370	1,100	340	1,039	28	80	1,240	170	50
제주도	서귀포시	4,100	1,000	400	40	1,500	41	200	100	140	800	100	286	14	30	320	50	30
제주도	북제주군	4,900	600	400	40	1,700	26	210	90	130	500	110	311	13	30	340	60	30
제주도	남제주군	3,500	300	300	30	1,200	20	160	70	100	300	80	226	11	20	250	40	20
		2,510,600	326,700	281,800	18,490	850,600	11,983	94,045	41,145	62,055	347,500	54,730	164,352	5,036	13,440	203,590	27,610	9,565

시도	시군구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일반장	조사 요원증 케이스	조사 요원증 목걸이(반)	조사 요원증 원위장 (마크)	문구용품	포스 트잇	조사원 가방	조사표 발행대	조사요원 안전수회	일반조사표 회수용상자 (전수)	일반조사표 회수용상자 (표본)	일반조사표 표지(전수)	일반조사표 표지(표본)	일반조사표 표지(표본) (외국인,빈집)	가구 명부 표지	가구 명부 표지	가구 명부 표지	가구 명부 표지	가구 명부 표지
경상북도	포항시	5	5	5	5	5	5	5	5	5	5	-	-	-	-	10	3	-	2
경상북도	남구	610	360	610	90	90	90	90	34	24	24	8	3	130	15	12	11	5	4
경상북도	북구	565	342	575	90	90	90	90	33	24	24	8	3	120	17	10	11	5	4
경상북도	경주시	742	449	742	110	110	110	110	43	30	30	10	5	140	22	22	13	8	4
경상북도	김천시	439	273	439	70	70	60	60	27	20	20	6	4	80	15	20	7	7	3
경상북도	안동시	521	330	521	80	80	70	70	34	25	25	7	4	100	17	10	9	7	4
경상북도	구미시	867	521	877	140	140	140	140	59	44	44	12	7	180	38	35	17	8	4
경상북도	영주시	366	235	366	60	60	60	60	24	18	18	5	3	60	11	10	7	6	3
경상북도	영천시	330	210	330	50	50	50	50	21	15	15	4	2	60	10	10	7	5	3
경상북도	상주시	390	255	390	60	60	60	60	24	17	17	5	3	60	11	10	7	7	3
경상북도	문경시	263	169	263	40	40	40	40	18	14	14	4	3	50	8	10	5	4	3
경상북도	경산시	623	375	633	100	100	100	100	41	30	30	8	4	130	21	35	13	5	4
경상북도	경주시	116	88	116	20	20	20	20	11	9	9	2	1	20	4	10	3	2	2
경상북도	의성군	267	177	267	40	40	40	40	17	13	13	4	2	40	9	10	5	5	3
경상북도	청송군	129	91	129	30	30	20	20	11	9	9	2	1	20	4	10	3	2	2
경상북도	영양군	90	63	90	20	20	20	20	10	8	8	1	1	10	3	10	3	2	2
경상북도	영덕군	176	114	176	30	30	30	30	13	10	10	2	1	30	5	10	5	3	3
경상북도	청도군	168	110	168	30	30	30	30	14	11	11	2	2	30	6	10	3	3	3
경상북도	고령군	132	91	132	30	30	20	20	11	9	9	2	1	20	4	10	3	2	2
경상북도	상주군	165	109	165	30	30	30	30	14	11	11	2	2	30	6	10	3	2	2
경상북도	칠곡군	280	174	280	50	50	50	50	22	17	17	4	2	60	12	37	7	2	3
경상북도	예천군	189	125	189	30	30	30	30	14	11	11	3	2	30	6	10	5	4	3
경상북도	봉화군	155	105	155	30	30	20	20	12	10	10	2	1	20	5	10	3	2	2
경상북도	울진군	213	139	213	40	40	30	30	15	11	11	3	2	40	6	10	5	3	3
경상북도	울릉군	43	30	43	10	10	10	10	7	6	6	1	-	10	1	10	3	1	2
경상남도	창원시	1,014	585	1,024	150	150	170	170	56	38	38	14	5	240	28	40	19	5	5
경상남도	마산시	1,030	614	1,040	150	150	150	150	54	36	36	14	6	210	26	23	17	10	5
경상남도	진주시	882	549	892	130	130	130	130	48	33	33	12	6	170	24	17	15	11	5
경상남도	진해시	384	240	384	60	60	60	60	22	16	16	5	2	80	9	13	7	5	3
경상남도	통영시	373	238	373	60	60	60	60	22	15	15	5	3	70	9	10	7	5	3
경상남도	사천시	321	202	321	50	50	50	50	21	15	15	4	2	60	8	10	7	4	3
경상남도	김해시	894	517	904	130	130	150	150	47	31	31	12	4	210	22	58	17	5	4
경상남도	밀양시	356	218	356	60	60	50	50	23	17	17	5	3	70	11	10	7	5	3
경상남도	거제시	473	292	483	80	80	70	70	31	23	23	7	3	100	15	27	9	5	3
경상남도	양산시	462	269	462	70	70	80	80	30	22	22	7	3	110	15	17	11	3	3
경상남도	의령군	158	111	158	30	30	20	20	12	10	10	2	2	20	6	10	3	4	2
경상남도	함안군	205	124	205	40	40	30	30	14	11	11	3	2	40	6	10	5	3	3
경상남도	창녕군	240	157	240	40	40	40	40	17	13	13	3	2	40	8	10	5	4	3
경상남도	고성군	219	147	219	40	40	30	30	15	11	11	3	2	30	7	10	5	4	3
경상남도	남해군	204	124	204	40	40	30	30	14	11	11	2	1	30	5	13	5	3	3
경상남도	하동군	193	138	193	30	30	30	30	14	11	11	3	2	30	6	10	5	4	3
경상남도	산청군	161	108	161	30	30	20	20	13	10	10	2	1	20	5	10	3	3	2
경상남도	함양군	170	112	170	30	30	30	30	13	10	10	2	2	30	6	10	3	3	2
경상남도	거창군	229	149	229	40	40	40	40	15	12	12	3	2	40	7	10	5	4	3
경상남도	합천군	229	157	229	40	40	30	30	16	13	13	3	2	30	8	10	5	5	3
제주도	제주시	761	451	761	110	110	110	110	41	28	28	9	4	150	19	12	13	6	4
제주도	서귀포시	242	155	242	40	40	40	40	18	14	14	3	2	40	8	10	5	4	3
제주도	북제주군	255	157	255	40	40	40	40	18	13	13	3	1	50	7	10	5	2	3
제주도	남제주군	190	116	190	30	30	30	30	14	11	11	2	1	40	4	10	5	2	3
		116,948	70,329	117,318	18,005	18,005	18,545	18,545	7,021	5,036	5,036	1,557	712	24,360	3,406	5,222	771	1,084	849

※ 읍면동별 배부수량은 지면관계상 제외하였음

3. 조사표류 배부 산출근거

1) 행정구역 및 조사요원 수

시도	시군구	읍면동	총관리자	조사 관리자	전수	표본	시설 담당	예비 조사원	입력 및내검
전국	257(234)	3,566	3,566	7,603	67,704	13,303	765	8,377	12,735
서울	25	520	520	1,708	14,273	2,549	142	1,716	2,642
부산	16	226	226	613	5,137	933	38	621	947
대구	8	143	143	409	3,420	630	17	411	650
인천	10	139	139	411	3,524	678	19	429	655
광주	5	90	90	211	1,767	355	25	219	360
대전	5	80	80	229	1,955	372	22	233	381
울산	5	58	58	169	1,383	254	12	172	270
경기	48(31)	515	515	1,592	13,505	2,545	147	1,630	2,653
강원	18	188	188	230	2,266	502	37	292	424
충북	14(12)	153	153	218	2,153	464	35	281	407
충남	16	209	209	299	2,909	604	55	371	537
전북	16(14)	251	251	251	2,717	660	41	363	508
전남	22	299	299	276	3,037	723	39	402	548
경북	25(23)	338	338	413	4,229	933	78	551	763
경남	20	314	314	478	4,574	953	49	582	845
제주	4	43	43	96	855	148	9	104	145

주) 시군구의 ()는 일반구를 제외한 자치 시군구 수입

※ 본 자료는 표류 수량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 자료(2005. 7월 현재 기준)이므로 최종적으로 변동될 수 있음

2) 가구 및 특성별 조사구수

시도	가구	총조사구수	전수	표본	A	1	2	3	4	5
전국	16,774,055	270,349	236,503	33,846	103,900	158,096	1,112	4,673	1,984	584
서울	3,486,990	55,978	49,109	6,869	18,776	35,431		1,446	184	141
부산	1,252,594	20,264	18,108	2,156	8,000	11,956	18	131	108	51
대구	861,827	13,592	12,161	1,431	5,569	7,852		72	67	32
인천	872,691	14,145	12,619	1,526	6,022	7,815	138	65	67	38
광주	472,945	7,709	6,744	965	4,176	3,278		175	58	22
대전	498,894	8,072	7,155	917	3,782	4,117		102	52	19
울산	356,478	5,618	5,021	597	2,571	2,958		61	16	12
경기	3,497,439	55,700	49,130	6,570	25,310	28,908	2	919	503	58
강원	557,831	9,066	7,762	1,304	3,276	5,489		152	127	22
충북	531,338	8,687	7,465	1,222	3,314	5,079		169	105	20
충남	699,213	11,434	9,777	1,657	3,641	7,319	25	305	127	17
전북	666,159	10,912	9,221	1,691	4,108	6,403	30	193	166	12
전남	721,573	11,565	9,807	1,758	3,179	7,297	777	176	118	18
경북	994,555	16,472	13,951	2,521	4,900	10,917		478	127	50
경남	1,112,521	18,075	15,782	2,293	6,750	10,848	90	209	125	53
제주	191,007	3,060	2,691	369	526	2,429	32	20	34	19

○ 일반가구 및 아파트가구수

	가구수	가구수	
		일반가구	아파트가구
○ 가구 수	16,774,055	10,185,623	6,588,432
- 전 수	15,078,840	9,120,989	5,957,851
- 표 본	1,695,215	1,064,634	630,581